

부산경남사학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부산경남사학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 일시 : 2021년 12월 17일(금) 13:30~17:30
- 장소 : 부산대학교 인문관 412호 강의실(ZOOM 병행)
- 주최 : 부산경남사학회
- 주관 : 부산경남사학회, 부산대학교 사학과



일 정

▶대회등록 및 인사말 (13:30~14:00)

- 개회사 : 이종봉(부산경남사학회장)
- 환영사 : 이수훈(부산대 사학과장)

<제1부 학술발표>(14:00~16:00)

사회 : 배혜정(부산대)

1. 부산 동래에서 출토된 새로운 고려 기와 명문 (14:00~14:40)

📖 발표 : 구산우(창원대) / 토론 : 정은정(부경대)

2. 漢代 吏의 자산 검증과 그 의미

-출토 사료에 보이는 基層 吏의 樣態를 중심으로- (14:40~15:20)

📖 발표 : 이주현(동아대) / 토론 : 김지은(서울대)

3. '자본주의로의 이행' 문제

-세계체제시각과 월러스틴의 '자본주의적 근대'- (15:20~16:00)

📖 발표 : 우인희(부산대) / 토론 : 현재열(한국해양대)

휴 식 (16:00~16:20)

<제2부 총회>(16:20~17:20)

▶윤리교육(17:20~17:30)

▶폐회사

ZOOM 회의 주소 : <https://bit.ly/3pHiuXW>

회의 ID : 827 6525 5022 / 암호 : 813809



목 차

1. 부산 동래에서 출토된 새로운 고려 기와 명문	구 산 우 · 1
1-1. 「부산 동래에서 출토된 새로운 고려 기와 명문」 토론문	정 은 정 · 25
2. 漢代 吏의 자산 검증과 그 의미 -출토 사료에 보이는 基層 吏의 樣態를 중심으로-	이 주 현 · 27
2-1. 「漢代 吏의 자산 검증과 그 의미」 토론문	김 지 은 · 41
3. ‘자본주의로의 이행’ 문제 -세계체제시각과 월러스틴의 ‘자본주의적 근대’-	우 인 희 · 43
3-1. 「‘자본주의로의 이행’ 문제」 토론문	현 재 열 · 56

부산 동래에서 출토된 새로운 고려 기와 명문

구 산 우 (창원대학교)

목 차

- I. 머리말
- II. 유적의 위치와 성격, 출토 유물
- III. 기와 명문의 판독과 분석
- IV. 이 유적과 禡王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의 관련성
- V. 맺음말

I. 머리말

최근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30번지 일원에서 고려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서 다수의 유물들과 함께 명문을 새긴 고려 기와가 여러 점 출토되었다. 이 글은 여기서 출토된 기와 명문을 새로이 판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려시기 동래군 치소성의 건설과 온천동 330번지 유적의 성격을 새롭게 검토하려고 작성하였다.

온천동 330번지의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을 분석하면, 이 유적을 조성할 때 사용한 기와와 동일한 것이 禡王 13년 이전에 건설된 동래군 치소성에서도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이 두 유적은 후술하듯이 직선거리로 5.8km의 먼 거리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유적에서 사용한 기와가 동일한 것이라면, 이 두 유적은 동시에 조성되었고, 동일한 가마에서 만든 기와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려시기 동래군 지방사회 운영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이 점은 온천동 330번지의 고려 유적과 禡王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 건설에 내포된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첫째, 발굴단은 온천동 330번지 유적이 亭子를 포함한 공공건물이 조성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는데, 고려시기에 동래군 치소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조성된 정자를 포함한 공공건물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세고고학의 발굴 결과를 토대로 고려시기 향촌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건물의 한 사례를 분석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고려시기에 과거에 새로 급제한 사람이 고향에 돌아올 때, 급제자의 출신지 고을에서 행해지는 환영 행사인 榮親儀를 거행하는 공공 건물로 五里亭이 있다. 五里亭이란 명칭은 守令의 치소로부터 五里의 거리에 있는 亭子라는 뜻을 갖고 있다. 온천동 330번지의 유적은 오리정의 실제 운영 사례와 관련시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멀리 떨어진 곳에 각각 조성된 두 곳의 공공건물에 동일하게 사용된 기와의 제작과 운반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여 이루어낸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고려시기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진 치소성의 건설에 사용된 기와 명문의 많은 사례에서 달리 찾을 수 없는 이곳만의 유일한 경우이다. 이를 통해 고려시기에 지역을 달리하면서 동시에 추진된 복수의 공공건물의

건설에 필요한 기와가 한 곳에서 만들어져서 다른 곳으로 공급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동래군 치소성을 건립하면서 제작한 기와를 이와 지역을 달리하면서도 동래군 치소성과 동시에 건설한 온천동 330번지의 공공건물의 건립에 공급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지금까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동래군 치소성이 우왕 13년 이전에 조성된 것은 분명하나 자료의 부족으로 그 구체적 연도를 특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그 건립 연도를 기와 명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온천동 330번지의 고려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의 분석을 통하여 이상과 같은 점을 검토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고려시기의 치소성의 건설과 그에 필요한 기와의 생산과 수급, 오리정을 비롯한 지방 관청에서 운영하는 공공건물에 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II. 유적의 위치와 성격, 출토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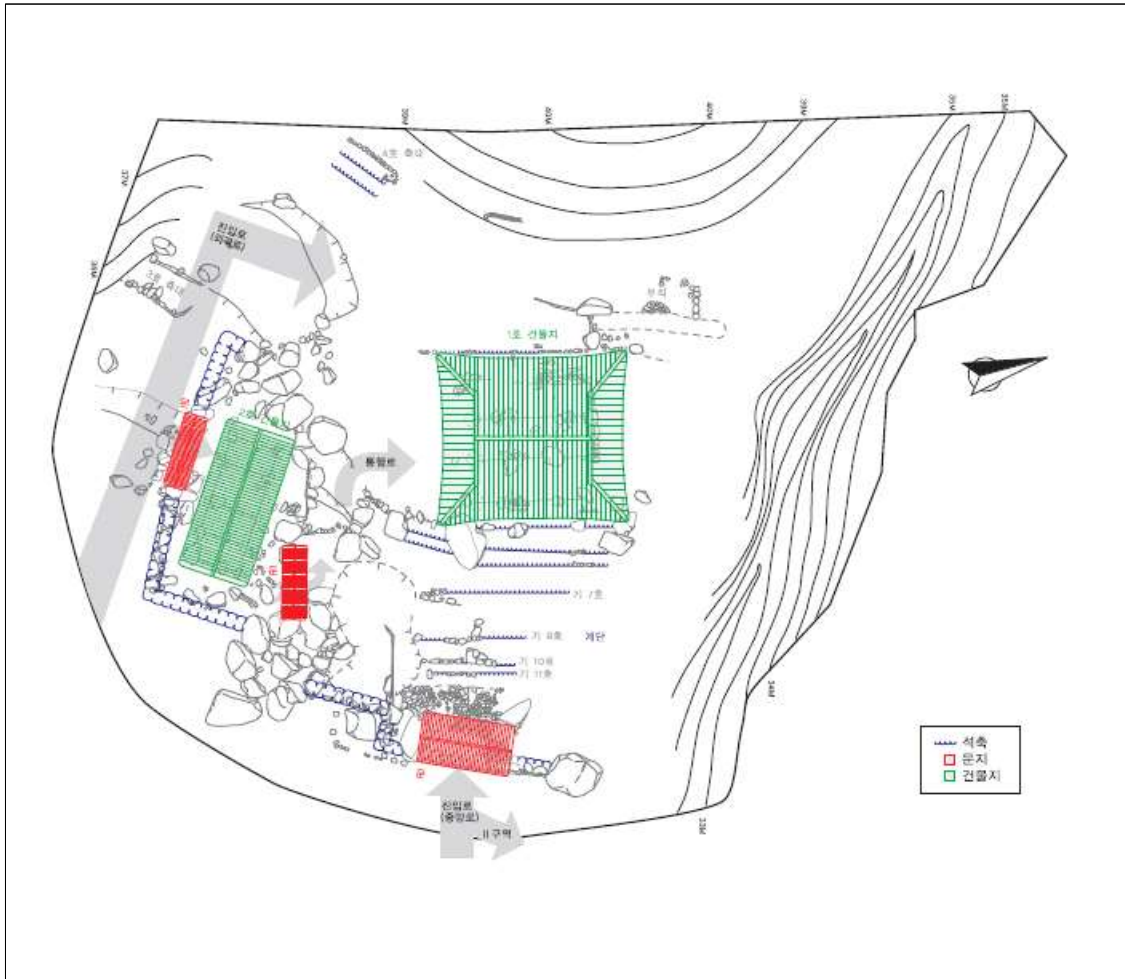
최근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30번지 일원에서 고려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서 다수의 유물들과 함께 명문을 새긴 고려 기와가 여러 점 출토되었다. 발굴 기간은 2013년 10월에서 2014년 6월까지이며, 발굴 보고서는 2016년에 간행되었다. 다음은 그 보고서의 서지 사항이다.

최종혁 외, 『(부산 온천동 소방안전체험관 건립공사부지 내) 釜山 溫泉洞 차밭골 遺蹟』,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재단법인 부경문화연구원, 2016, 총 377쪽.

이 유적은 출토된 유물이나 유구의 형태로 보아서 전체적으로 건물지가 그 중심이 된다. 발굴단은 유적을 I 구역과 II 구역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했는데, 이는 두 구역이 갖는 유적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었다.

I 구역에서는 소토층을 경계로 상층에서 2동의 건물지와 축대, 기단석렬 등의 부속 시설이, 하층에서는 3동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II 구역에서는 하층과 상층에 각각 조성된 1동과 2동의 건물지를 합한 총 3동의 건물지가 있었으며, 아울러 건물지와 출입구 주변에 설치된 축대와 담장, 기단석렬 등이 확인되었다.

다음은 I 구역 복원도이다.



<그림-1> 온천동 330번지 유적의 1 구역 복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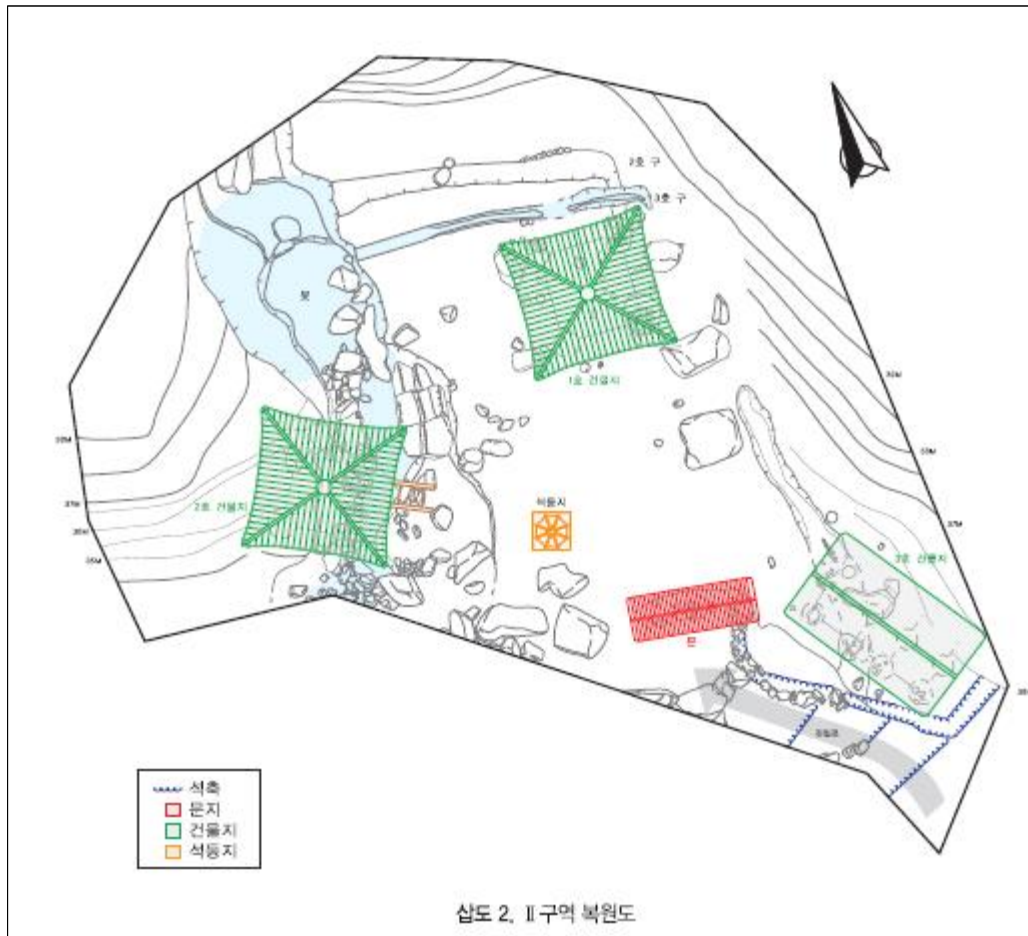
1 구역 하층에 조성된 3동의 건물지는 단칸 구조의 방형 건물지 2동(3·4호), 2×1칸 구조의 장방형 건물지 1동(5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건물지는 서로 다른 중심축으로 조성되었는데, 이 중 4호·5호 건물지는 중복된 상태를 보인다. 주변부의 기단석렬과 축대의 배치 형태로 보아 3·5호 건물이 먼저 조성된 뒤 5호의 대체 혹은 별도의 목적으로 4호 건물지를 추가하여 만든 것으로 본다. 1 구역 하층에 조성된 3동의 건물지는 모두 문을 세운 건물로 추정하고 있다.

1 구역 상층에 2동의 건물지 중 1호는 이 유적 전체에서 가장 큰 건물지이다. 1호 건물지는 조사 구역 중앙부 상단 대지에서 발견되었는데, 평면 형태는 방형이고, 도리칸과 보칸이 각 3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모는 정면 860cm, 측면 930cm이다. 주심 간격은 정칸 340cm, 협칸 260cm이며, 측면(보칸)은 3칸 모두 약 300cm이다. 1호 건물지 앞에 조성된 기단석렬, 축대 등을 비롯한 1 구역에 있는 유구 대부분의 중심축이 1호 건물지와 일치한다. 그리고 조사구역 내외부에 설치된 모든 출입로는 모두 1호 건물지로 집결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런 점을 근거로, 발굴단은 1호 건물지가 1 구역 상층 유구의 중심 건물이면서 전체 유적에서 가장 권위성을 갖는 건물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호 건물지는 조사구역 남단의 진입로 변에 있으며, 그 형태는 도리칸 4칸, 보칸 2칸 형태의 장방형이다. 규모는 정면 930cm, 측면 370cm이다. 주심 간격은 정칸 260cm, 협칸 230cm, 측면 퇴칸은 180cm, 배후 퇴칸은 140cm 내외이다.

3호 건물지는 단칸 구조로 만들어졌으며, 규모는 정면 550cm, 측면 450cm이다. 4호 건물지도 단칸 구조이며, 규모는 정면 300cm, 측면 300cm이다. 5호 건물지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형태이며, 규모는 정면 300cm, 측면 350cm이다.

다음은 II구역 복원도이다.



<그림-2> 온천동 330번지 유적의 II구역 복원도

II구역에서 확인된 3동의 건물지는 부지의 최상단 평탄지에 있는 1호, 小谷부의 서단부 경계지에 있는 2호, 진입로와 연결된 입구부 측면에 있는 3호 등인데, 조사구역 북·서·동단에 각각 조성되었다. 3동의 건물 사이에 형성된 마당 서쪽에는 石燈의 기초로 추정되는 원형 적심석이 1기 조성되었다.

1호 건물지의 평면 형태는 정방형에 가깝고, 주심 간격은 정면 460cm, 측면 490cm 내외의 단칸 구조로 만들어졌다. 2호 건물지의 규모는 정면과 측면 모두 490cm 내외의 단칸 구조였다. 3호 건물지는 발굴 당시에 모두 삭평되고 초심적심석 5기만 잔존하였는데,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었다. 잔존한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고, 그 규모는 주칸 거리가 정면 240cm, 측면 202cm이다.

발굴단은 이 중에서 1호 건물지가 부지 내 최상지에서 유일하게 확인되는 건물지로서, 배치 상태만으로 볼 때 II구역의 중심 건물로 판단하고 있다.

1호 건물지가 단칸 구조이고 주심 간격이 일반 건축물에 비해 넓으며, 이 건물 외곽에 인접하여 길이 1m 내외의 암석이 초석적심석보다 훨씬 노두된 점을 근거로 일반 건축물보다 마루를 높게 설치한 亭子형 건물로 추정한다.

한편 1호 건물지 배후에는 건물과 동시에 사용된 배수로(3호 溝)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보다 앞서 사용된 배수로(2호 溝)가 하부에서 추가로 발견되었다.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2호 구는 바닥면에 피열과 소결흔이 넓게 형성되어 있고, 내부의 퇴적토 전체에 다량의 목탄과 재가 혼입된 특징을 보이고 있으므로, I 구역 소토층 하부의 유구와 같은 시기에 폐기된 시설로 추정하였다. 이 점을 근거로 발굴단은 1호 건물지가 2호 건물지 및 선대 배수로인 2호 구의 주체 건물이 화재로 소실, 또는 폐기된 후에 건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1·2호 건물지가 거의 동일한 구조와 규모를 갖는 건물이라는 점과 2호 건물지가 화재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연유로 내에 조성된 점을 고려하여, 대규모 화재가 일어난 후에 계곡부 내부에 있던 2호 건물지를 옮겨 1호 자리에 재건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1호 건물지가 조성된 이후에는 II구역의 중심 건물은 1호가 되고, 더 이상의 건물 재건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호 건물지의 형태는 그 동쪽 두 기둥은 자연유로 내부에 위치하고, 서쪽 기둥은 유로 밖 경사면에 설치하였다.

이 유적의 경관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실은 2호 건물지의 북쪽 구간에 작은 못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 작은 못은 대소의 석재를 이용하여 자연유로를 가로지르듯 채워서 물막이를 하였으며, 물막이 북쪽의 유로는 폭이 약간 넓고, 바닥이 낮고 오목하게 노출된 형태로 만들어졌다.

II구역 내부로 진입하면 세 동의 건물 사이에 넓고 평탄하게 조성된 빈터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구역은 중심 건물 전면에 있는 마당으로 판단된다. 이 마당 서쪽에는 石燈의 기초로 추정되는 원형 적심석 1기가 조성되어 있다. 그 규모는 직경 약 3m 범위인데, 대소의 할석을 채워 이를 만들었으며, 내부에는 한 변의 길이가 1.3m 내외의 방형 지대석의 하부 흔적으로 보이는 U자형 석렬(압흔)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8개의 축대와 19개의 기단석렬이 발견되었다. 이밖에도 I 구역에서는 초석적심석 1기, 구들 1기, 석곽 1기, 가마로 추정되는 시설 1기, 수혈 1기, 주혈군 등의 기타 시설이 발견되었다. II구역에서는 추정 석등지 1기, 배수로[溝] 4기, 수혈 7기, 주혈군 등의 기타 시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유적의 지표에서도 다수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I, II구역이 지닌 공간의 성격에 대해서 발굴단은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I 구역에는 권위성을 갖는 대형 건물지가 중심 건물로서 조영되어 있고, II구역은 중심 건물의 위치에 정자나 그에 준하는 소규모 단칸 건물만 조성된 점을 근거로 I 구역에 연계된 부속 공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상으로 이 유적의 성격을 정리하였다. 이를 이 유적의 성격을 유추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景觀의 관점에서 그 특징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 구역에서 권위성을 갖는 대형 건물이 만들어졌고, II구역은 I 구역의 부속 공간으로서 여기에는 정자, 마당, 석등 등의 유희 시설이 조성되었다. I 구역에 있는 권위성을 지닌 대형 건물은 공공건물이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둘째, II구역에 있는 정자형 건물의 북쪽에는 작은 못이 조성되었다. 셋째, II구역에 있는 3동의 중심 건물들 사이에 넓은 마당이 만들어졌다. 넷째, II구역의 마당에는 1기의 석등이 조성되었다. 이상의 네 요소들이 이 유적이 갖는 경관의 기본 성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온천동 330번지의 고려 유적에서 발견된 건물지 규모와 속성

구역	위치	건물 명칭	형태와 규모	비고
I 구역	상층	1호 건물지	방형, 도리칸 3칸, 보칸 3칸, 정면 860cm, 측면 930cm, 정칸 주심간격 340cm, 협칸 주심간격 260cm, 측면(보칸) 3칸이 모두 약 300cm	유적 전체에서 가장 권위성을 지닌 건물
		2호 건물지	장방형, 도리칸 4칸, 보칸 2칸, 정면 930cm, 측면 370cm, 정칸 주심간격 260cm, 협칸 주심간격 230cm, 측면 퇴칸 180cm, 배후 퇴칸 130cm 내외	
	하층	3호 건물지	단칸 구조, 정면 550cm, 측면 450cm	문으로 추정
		4호 건물지	단칸 구조, 정면 300cm, 측면 300cm	"
		5호 건물지	정면 2칸, 측면 1칸, 정면 300cm, 측면 350cm	"
II 구역	상층	1호 건물지	정방형, 단칸 구조, 정면 주심간격 460cm, 측면 490cm 내외	정자로 추정
		3호 건물지	장방형, 잔존 규모=정면 3칸, 측면 1칸, 정면 주심간격 240cm, 측면 주심간격 202cm	삭평된 형태로 잔존
	하층	2호 건물지	정방형, 단칸 구조, 정면 주심간격 490cm, 측면 주심간격 490cm 내외	정자로 추정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크게 자기류와 기와류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온천동 330번지의 고려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

종류	유물과 수량
자기류 (총 58점)	청자 52점(접시 14, 발 4, 완 4, 잔 4, 개 4, 병(주자) 1, 호 1, 불분명 20)
	분청사기 4점
	백자 2점
기와류 (총 176점)	암키와 89(24)점, *()의 숫자는 명문 기와임.
	수키와 19점
	암막새 18점
	수막새 19점
	적새 29점
	귀면와 2점

자기류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자 가운데는 선해무리굽, 중국식 해무리굽, 해무리굽 청자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청자양각죽절문병(주자)은 대나무 마디 사이에 음각으로 덧잎까지 묘사되었다. 이 유물은 동체부 파편만 출토된 것이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소장한 청자양각죽절문병(국보 제169호)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한 청자양각죽절문주자와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최고급 제품으로 평가되었다. 이밖에도 여기서 출토된 청자 중에는 우수한 것들과 함께 조질의 청자도 있다.

기와류는 총 176점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서 암키와가 89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암키와의 수량 중에서 () 속에 있는 것은 명문 기와의 수이다. 암키와 89점 중에는 24점의 명문 기와가 있는데, 이들 기와 명문이 이 글의 분석 대상이 된다.

Ⅲ. 기와 명문의 판독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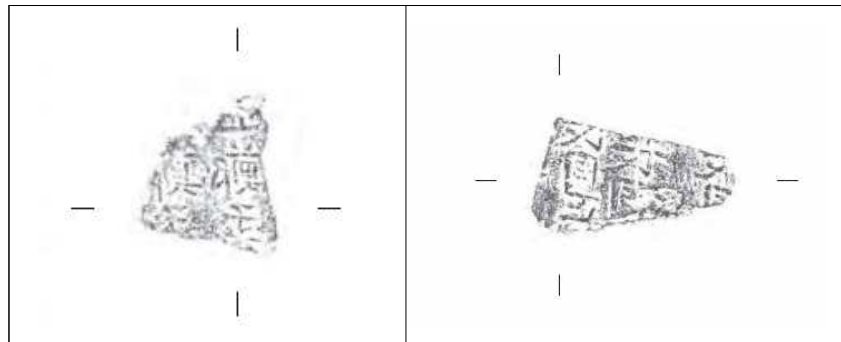
1. I 구역의 기와 명문

I 구역에서 출토된 명문 기와는 모두 10점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I 구역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¹⁾

번호	출토 유구	명문	외면·바탕 문양	보고서 쪽수
1	1호 건물지	△鄭子/鄭子	포목흔	53, 250
2	2호 건물지	△同(?)/△同(?)/△同正	〃	60, 253
3	〃	△/△/△	〃	63, 254
4	1호 축대	鄭子赫/鄭子赫/鄭子	〃	74, 266
5	〃	△/△	〃	74, 266
6	〃	田/田/田	사격자문	76, 267
7	〃	戶長同正鄭/戶長同正鄭/戶長同/△△	어골문	76, 267
8	〃	田	사격자문	77, 267
9	4·5호 축대	田	포목흔 연철흔	83, 271
10	〃	△/△/△/△	〃	84, 272

1번과 2번 자료의 탁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3> 1번(좌), 2번(우) 자료의 탁본

1번 자료의 탁본을 보면, 1행의 글자가 △鄭子임이 확인된다. 鄭자 앞에 첫째 글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히 판독되지 않는다. 2행의 글자도 1행과 같은 鄭子로 판독된다. 후술하듯이 1번 자료의 鄭子是 4번 자료의 鄭子赫의 세 글자 가운데 셋째 글자인 赫자가 떨어져져나간 것이다. 그리고 1행의 鄭子 앞의 판독되지 않은 글자는 7번 자료의 1행의 넷째 글자인 長자일 가능성이 크다. 2번 자료의 3행을 보면, 둘째와 셋째 글자가 同正임이 확인된다. 2번 자료 3행의 첫째 글자는, 후술할 <그림-5>의 7번 자료, <그림-11>의 10번 자료를 참조하면, 長(?)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같은 타날판으로 찍은 같은 글씨라는 점에 대해서는

1) 본고에서 만든 <표>의 번호는 필자가 분류한 것이다. <표> 속의 명문은 다음 기준으로 판독하였다. 명문 항목의 /는 행이 구분되는 것을 뜻한다. 행의 판독 순서는 오른쪽부터, 그리고 위에서부터 시작한다. △는 판독되지 않은 글자, (?)는 (?)의 글자가 판독상의 의문이 있는 글자, …부분은 이곳에 글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글자가 명확히 판독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후술할 것이다.

4번 자료의 탁본과 사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4> 4번 자료의 탁본(좌), 사진(중), 東萊郡 治所城 출토의 동일 자료 탁본(우)

4번 자료의 탁본을 보면, 모두 4행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 중에서 1행의 글자가 가장 선명하다. 탁본과 사진을 대조하면서 1행의 글자를 판독하면 鄭子赫임을 알 수 있다. 4번 자료의 사진에서 1행의 셋째 글자가 赫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1행~3행의 첫째와 둘째 글자가 鄭子라는 것은 앞서 <그림-3>에서 제시한 1번 자료의 탁본을 대조해보면 더 분명해진다. 1번 자료와 2번 자료는 같은 글자 타날판을 사용하여 찍은 글씨이므로, 글자의 모양이 똑 같다. 그런데 4번 자료의 鄭子赫이라는 세 글자는 <그림-4>의 오른쪽에 제시한 글자와 같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4>의 오른쪽에 제시한 명문의 탁본은 현재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640-1번지 일대에 있었던 고려시기의 東萊郡 治所城에서 출토된 기와에 새겨진 글자이다.²⁾ 후술하듯이 동래군 치소성은 禡王 13년 이전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640-1번지 일대에 있었으며, 禡王 13년 이후에는 현재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이 있는 동래구 복천동, 수안동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런 점에서 4번 자료의 기와 명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준다. 온천동 330번지의 유적은 망미동 일대에 있었던 禡王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의 건설과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온천동 330번지 유적에서 사용된 기와는 禡王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에서 사용된 기와와 같은 공방에서 운영하는 가마에서 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본고의 논지 전개에서 여러 번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온천동 330번지 유적과 禡王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에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

7번 자료의 탁본과 사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구산우, 「고려시기 面에 관한 새로운 자료의 소개와 분석」 『한국중세사연구』 30, 2011a, 538쪽.



<그림-5> 7번 자료의 탁본(좌), 사진(중), 동래군 치소성 출토의 동일 자료 탁본(우)

7번 자료의 탁본과 사진을 대조하면서 글자를 판독하면, 1행과 2행의 글자가 戶長同正鄭의 다섯 글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7번 자료 1행의 첫째와 둘째 글자인 戶長과 똑같은 글씨의 기와 명문이 <그림-5>의 오른쪽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우왕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이다.³⁾ 이는 앞서 소개한 4번 자료와 같은 경우로써, 두 자료가 같은 타날판으로 찍은 것임이 눈으로 보아도 분명히 확인된다.

4번 자료와 7번 자료는 원래 동일한 기와 명문인데, 출토될 당시에 잔존한 명문의 글자가 각기 다르게 나온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같은 글씨를 새긴 동일한 타날판으로 찍은 글씨라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원래 새겨진 완전의 형식의 글자를 복원하면, 戶長同正鄭子赫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6번, 8번, 9번 자료는 田이라는 글자 하나만을 새겼다. 3번, 5번, 10번 자료는 글자가 정확히 판독되지 않는다.

2. II구역의 기와 명문

II구역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은 모두 3점인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4> II구역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

번호	출토 유구	명문	외면·바탕 문양	보고서 쪽수
1	1호 溝	同正鄭子赫/同正鄭子赫/長同正鄭諧(?)	포목흔 연철흔	160, 323
2	"	長(?)同正鄭/△△△	"	160, 323
3	4호 구	△△	복합문	182, 340

1번 자료의 탁본과 사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구산우, 앞의 논문, 539쪽.



<그림-6> 1번 자료의 탁본(좌), 사진(중), 동래군 치소성 출토의 관련 자료 탁본(우)

1번 자료의 탁본과 사진을 대조하면서 글자를 판독하면, 1행과 2행은 同正鄭子赫의 다섯 글자임이 확인된다. 3행은 다섯 글자임은 분명한데, 1행과 1행의 글자와는 다르다. 3행의 첫째 글자는 長자이고, 둘째, 셋째, 넷째 글자는 同正鄭자임이 확인된다. 3행의 글자 중에서 1행, 2행과 다른 글자가 다섯째 글자인데, 다섯째 글자의 오른쪽의 부분 글자가 肅임은 확인되지만, 그 왼쪽 부분의 글자는 선명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보고서에서는 3행의 다섯째 글자를 諧로 판독했는데, 필자도 이 글자를 동일한 글자로 판독하고자 한다. 필자가 이 글자를 諧로 판독한 이유는 이것이 <그림-6>의 오른쪽에 제시한 기와 명문과 동일한 글자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림-6>의 오른쪽에 제시한 명문은 앞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우왕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에서 출토된 기와에 있는 것이다.⁴⁾ 우왕 13년 이전 동래군 치소성에서 나온 기와 명문 중에서 鄭諧를 새긴 기와가 3점이 나왔는데, <그림-4>의 오른쪽에 제시한 기와 명문은 그 중의 하나이다.

2번 자료의 탁본과 사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7> 2번 자료의 탁본(좌), 사진(우)

4) 구산우, 앞의 논문, 536~539쪽.

탁본과 사진을 대조하면서 2번 자료의 글자를 판독하면, 1행의 첫째 글자가 長(?)이고 둘째~넷째 글자가 同正鄭임을 알 수 있다.

3번 자료는 글자가 정확히 판독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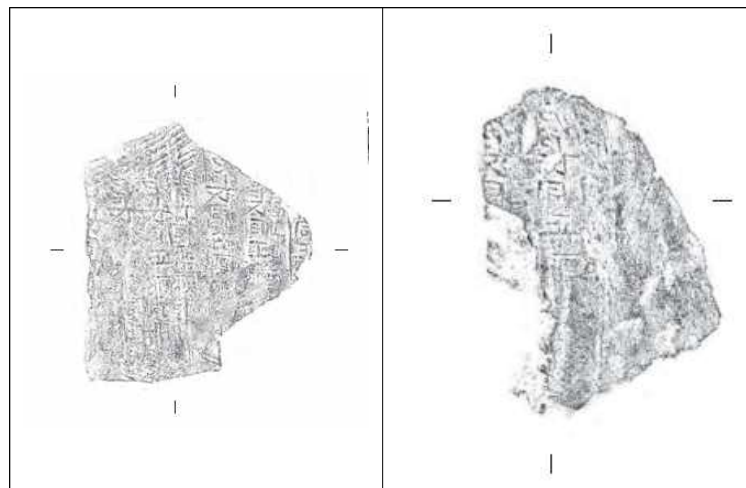
3. I · II구역 표토 및 지표에서 수습된 기와 명문

I · II구역 표토 및 지표에서는 11점의 명문 기와가 수습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 I · II구역 표토 및 지표에서 수습된 기와 명문

번호	명문	외면·바탕 문양	보고서 쪽수
1	同正/長同正/戶長同正鄭/戶長同正鄭/戶長同正鄭子赫/戶長...	포목흔	209, 361
2	戶長同正鄭/長同	"	209, 361
3	戶長/戶(?)長	"	209, 362
4	△鄭子赫/正(?)鄭(?)諧(?) / 正鄭子赫 / △鄭諧(?) / 鄭子赫	포목흔 연철흔	210, 362
5	長同正/長同	포목흔	210, 363
6	△△△/鄭子赫	"	210, 363
7	救(?)△△/△△	포목흔 사절흔	211, 363
8	救(?)△/救(?)△	사절흔	211, 363
9	東/東(?)	포목흔	211, 364
10	長(?) / 戶長同(?) / △△△ / △長同	"	212, 364
11	ㄸ	어골문	212, 364

1번, 2번 자료의 탁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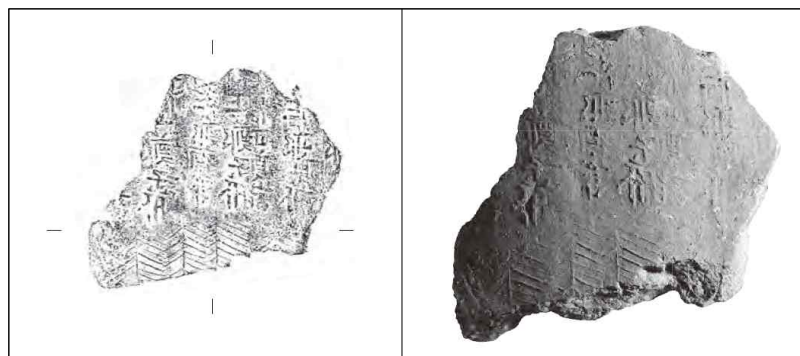


<그림-8> 1번(좌), 2번(우) 자료의 탁본

1번 자료의 기와 명문은 모두 6행인데, 이들은 원래 모두 戶長同正鄭子赫의 일곱 글자를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일곱 글자를 모두 판독할 수 있는 행은 5행뿐이다. 탁본의 상태가 선

명하지 않아서 판독에 어려움이 있지만, 앞서 제시한 <그림-4>의 4번 자료, <그림-5>의 7번 자료를 아울러 대조해서 살펴보면, 1번 자료의 5행은 戶長同正鄭子赫의 일곱 글자임을 판독할 수 있다. 6행은 처음의 두 글자인 戶長 이외의 글자는 뭉개져서 판독하기 어렵다. 5행 이외의 다른 행들의 글자는 모두 7개 글자 중에서 몇 글자가 떨어져나가거나 뭉개져서 판독되지 않는다. 2번 자료의 1행은 희미하나마 戶長同正鄭이라는 다섯 글자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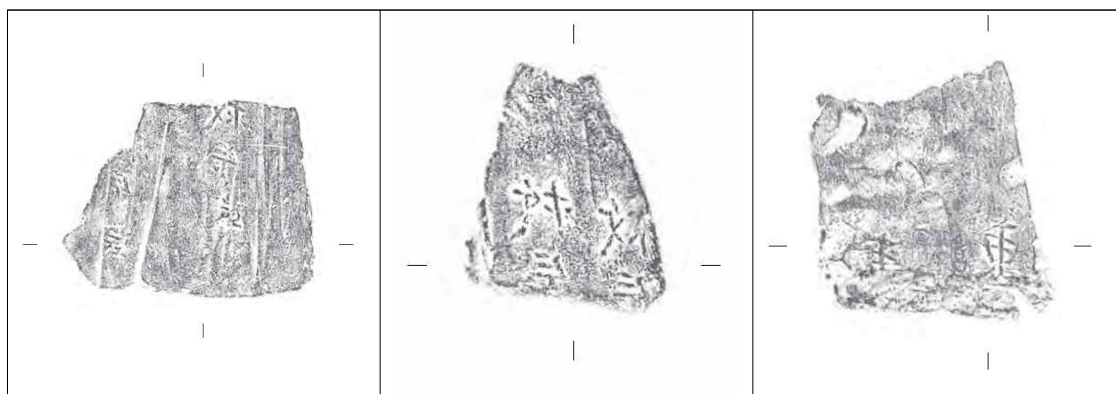
탁본이나 사진을 여기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3번 자료는 戶長임이 판독된다. 4번 자료의 탁본과 사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9> 4번 자료의 탁본(좌)과 사진(우)

4번 자료의 탁본과 사진을 대조해서 살펴보면, 2행은 正(?)鄭(?)諧(?), 3행은 正鄭子赫으로 판독된다. 탁본 상태를 보면, 4행은 판독하기 어려우나 사진을 보면 △鄭諧(?)로 판독될 수 있다. 셋째 글자인 諧자의 오른쪽 부분은 불분명하나, 사진을 보면 왼쪽 부분의 글자가 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참조하여, 조금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보고서의 견해처럼 4행의 셋째 글자를 諧로 판독하고자 한다. 탁본을 보면, 5행은 鄭子赫임이 확인된다. 탁본이나 사진을 여기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6번 자료는 鄭子赫임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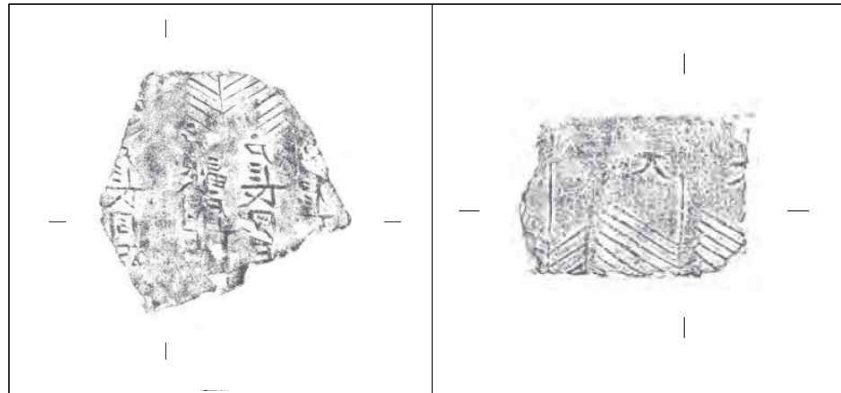
7번, 8번, 9번 자료의 탁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0> 7번(좌), 8번(중), 9번(우) 자료의 탁본

7번 자료와 8번 자료는 같은 글자를 새긴 것으로 생각되는데, 첫째 글자는 敕로 보인다. 7번 자료의 둘째와 셋째 글자는 판독되지 않는다. 9번 자료는 육안으로 보아도 東자임이 확인된다.

10번, 11번 자료의 탁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1> 10번(좌), 11번(우) 자료의 탁본

10번 자료의 2행의 글자가 戶長同(?)임을 알 수 있다. 10번 자료의 4행의 첫 글자는 알 수 없으나, 둘째와 셋째 글자가 長同임은 분명히 확인된다. 11번 자료는 丕자임이 확인된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30번지의 고려 유적에서 발견된 기와 명문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확인된 기와 명문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6> 온천동 330번지의 고려 유적에서 발견된 기와 명문

명문	출토된 유구
戶長同正鄭子赫 계열	I 구역 1호·2호 건물지, I 구역 1호 축대, II 구역 1호 구, I·II 구역 표토 및 지표
戶長同正鄭諧 계열	II 구역 1호 구, I·II 구역 표토 및 지표
田 계열	I 구역 1호 축대, I 구역 4·5호 축대
敕△△ 계열	I·II 구역 표토 및 지표
東	"
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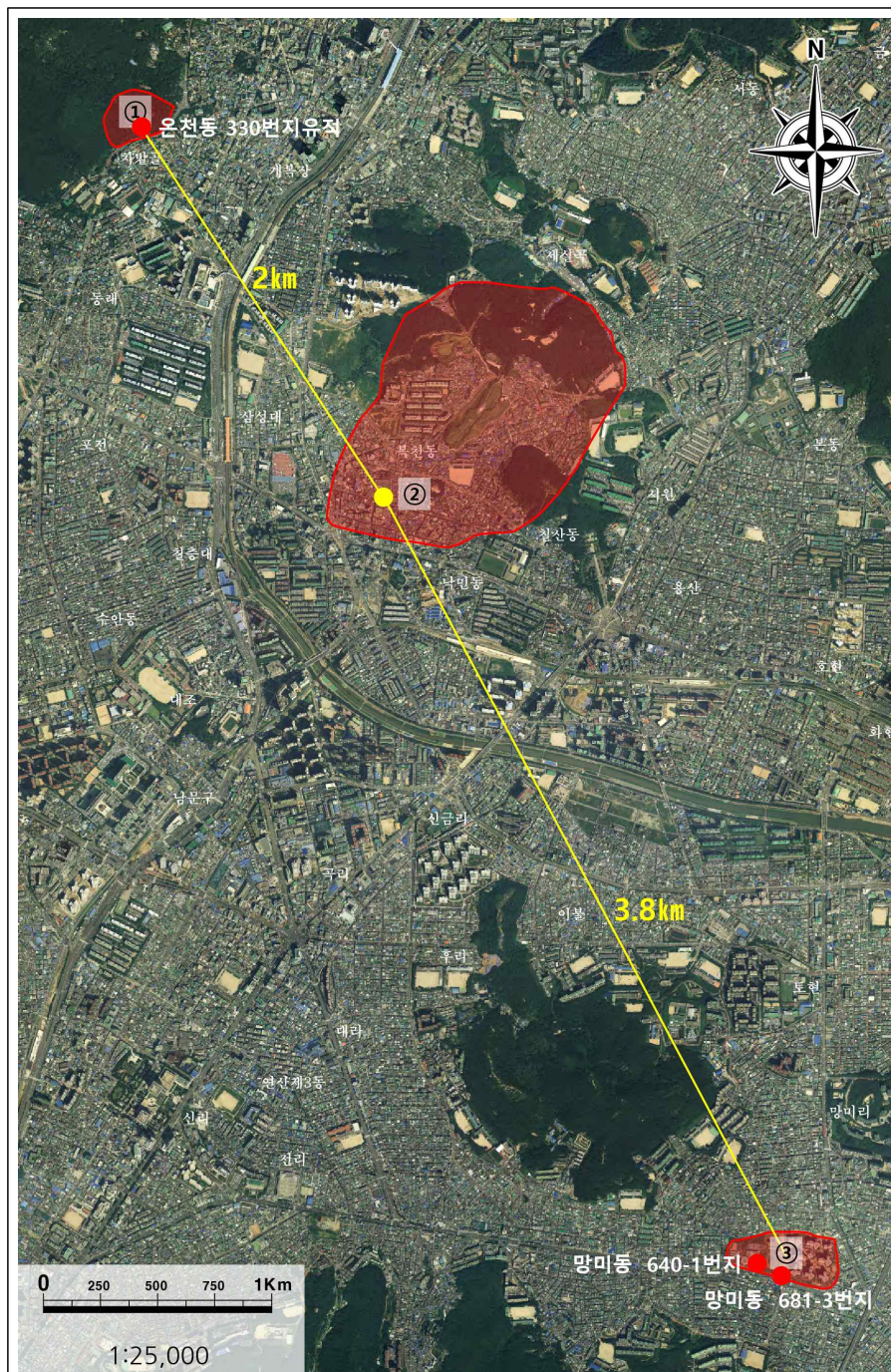
戶長同正鄭子赫 계열의 명문을 새긴 기와는 이 유적 전체에서 골고루 출토되었다. 戶長同正鄭諧 계열의 명문은 두 곳의 유구에서만 출토되었다. 나머지의 명문 기와들도 제한된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검토한 대부분의 기와 명문은 戶長同正鄭子赫 계열의 명문이라고 생각된다. 기와의 어느 부분이 떨어져나거나 뭉개져서, 戶長同正鄭子赫의 일곱 글자 가운데 몇 글자만 남긴 형태의 기와가 대부분 출토되었다고 판단된다.

戶長同正鄭子赫 계열의 명문의 글씨체를 보면, 여기서 출토된 기와 명문은 모두 같은 타날 판으로 찍어내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戶長同正鄭諧를 새긴 두 기와의 글씨도 같다. 따라서 이는 이 유적에서 사용한 기와가 같은 시기, 같은 공방의 가마에서 구워낸 것임을 말해준다. 그리고 앞서 戶長同正鄭子赫, 戶長同正鄭諧 계열의 기와 명문이 우왕 13년 이전 동래군 치소성에서 사용한 기와의 명문에 새겨진 글씨와도 같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 점은 우왕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에서 사용된 기와와 같은 시기, 같은 공방의 가마에서 만든 기와를 동래 온천동 330번지의 고려 유적에서도 같이 사용하였음을 말해준다.

IV. 본 유적과 禡王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의 관련성

앞서 온천동 330번지의 고려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의 글씨가 우왕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에서 출토된 기와의 명문 글씨가 같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두 유적이 매우 밀접한 연관 속에서 조성되었음을 말해주는데,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의 그림을 제시하기로 한다.



<그림-12> 온천동 330번지 유적(①), 禡王 13년 이후의 東萊郡 治所城(②), 우왕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③)의 위치

<그림-12>는 온천동 330번지 유적의 위치와 이와 관련되는 두 곳의 유적인 우왕 13년 이전과 이후의 東萊郡 治所城의 위치를 같은 지도에서 표기한 것이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온천동 330번지의 유적은 <그림-12>의 맨 왼쪽 상단에 ①로 표시하였고, 우왕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은 오른쪽 하단의 ③으로, 그리고 우왕 13년 이후의 東萊郡 治所城이면서 조선시기의 동래 郡城이었던 곳을 중앙의 ②로 표시하였다.

① 유적과 ② 유적의 직선거리는 <그림-12>에서도 제시되어 있듯이 2km이며, ② 유적과 ③ 유적의 직선거리는 3.8km이다. ③ 유적은 우왕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으로서 부산 해운대와 가까운 바닷가 연안에 조성되었으나, 恭愍王 이후의 고려말기에 격화되는 왜구의 침략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고려 조정은 ③보다 더 내륙에 있는 ②의 지점으로 동래군 치소성을 옮겼다.⁵⁾ 전국적으로 실시된 고려말의 성곽 축조 상황을 살펴보면, 왜구의 침략을 효율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土城에서 石城으로 성곽 축조의 재료가 바뀌었고, 지역 내에서 보면 성곽이 축조된 구체적 지점도 연안에서 더 내륙으로 이동하는 추세였다.⁶⁾ 이런 당시의 추세를 반영하여 우왕 13년에 새로 축조한 동래군의 치소성이 ②에 있는 유적이다.

『高麗史』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우왕 13년 이전에 동래군의 치소성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동래군 치소성은 顯宗 12년에 修築되었다.⁷⁾ 같은 내용의 기록이 김정호의 『大東地志』에서도 확인된다.⁸⁾ 최근에 이루어진 ③의 발굴 결과를 보면, 문헌 기록에서 현종 12년에 실시한 동래군 치소성의 수축은 初築이 아니었으며, 초축은 8~9세기의 통일신라기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⁹⁾ 따라서 ③의 위치에 동래군 치소성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통일신라기였고, 현종 12년에 수축이 한번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우왕 13년까지 존속하였던 것이다. 동래군 치소성은 왜구의 침략이 격화되는 우왕 13년에 새로 석축으로 축조되었는데, 그 당시의 규모는 둘레 3,090척, 높이 13척, 그 내부에 井이 6개 있었다.¹⁰⁾ 우왕 13년에 축조한 동래군 치소성이 ②의 위치에 있는 유적이며, 축조한 사람은 元帥 朴葦였다.

본고의 중심 대상이 되는 ①과 ③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①과 ③의 직선거리는 5.8km의 먼 거리이다. 이처럼 먼 거리에 있는 두 유적이 같은 시기에 같은 공방의 가마에서 만든 기와가 사용되었다. 이 점이 ①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첫째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둘째, 두 유적의 조성에 지방관과 屬官을 제외하면 향촌사회에서 가장 최상위의 위치에 있는 향리집단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인 戶長·同正의 직위를 지닌 두 사람인 鄭子赫과 鄭諧가 중심인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셋째, 앞서 지적했듯이 ①의 유적은 권위성을 띤 공공건물이면서 유희 시설로 건설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발굴단은 ① 유적의 중심 건물은 I 구역의 1호 건물지이며, 가장 권위를 지닌 공공 건물로 파악했다. 아울러 II 구역의 중심 건물인 1호와 2호 건물지는 정자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①과 ③에서 같은 시기, 같은 공방에서 운영한 가마에서 구워진 동일한 기와를 사용한 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①의 유적에서 고려시기에 사용된 기와 가마가 1기 발굴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발굴단은 이 기와 가마에서 만든 기와가 ① 유적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③의 유적에서는 기와 가마가 발굴되지 않았다.¹¹⁾ 따라서 현재로서는 ①의 유적에서 발견된 기와 가마에서 만들어진 기와가 ①의 유적이

5) 구산우, 「高麗時代 釜山地域의 地方行政構造」 『港都釜山』 20, 2004, 8~11쪽.

6) 구산우, 「고려말 성곽 축조와 향촌사회의 동향」 『역사와 경계』 75, 2010.

7) 『高麗史』 권82, 兵2 城堡 顯宗 12년.

8) 『大東地志』 권7, 東萊 典故.

9) 朴東百 외, 『東萊 古邑城址』 2책, 경남문화재연구원, 2007.

1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3, 東萊縣 城郭 邑城.

나 ③의 동래군 치소성에 사용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③의 건설에 사용된 기와를 구운 가마가 동래군 치소성 유적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①의 유적에서 사용된 기와가 동래군 치소성에서 공급되었다고 확인하기도 어렵다. 다만 ①의 유적에서 사용된 기와가 ③에서도 같이 사용된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①과 ③ 유적의 규모나 기본 성격을 비교했을 때, 동래군 치소성 유적인 ③이 ①보다는 더 대규모이고 공공성이 더 큰 건축물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기와의 수요도 ③이 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와의 수급 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③에서 만든 기와가 ① 유적의 건설에도 공급되어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우왕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 즉 ③ 유적을 건설하면서 만든 기와를 ①의 유적에 공급했다고 보았을 때, 이와 관련되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첫째, ①과 ③에서 사용된 기와를 만든 노동력이 어떻게 조달되었는가의 문제이다. 둘째, ③에서 만든 기와를 직선거리 5.8km의 먼 거리에 있는 ①의 유적까지 어떻게 운반하여 공급했는가의 문제이다.

성곽 건설에 사용된 기와 명문의 분석을 통해 최근 연구된 성과에 따르면, 성곽 건설에 동원된 노동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¹²⁾ 고려시기 성곽 건설에는 白丁 농민과 지방군의 군인이 동원되었다. 특히 성곽 건설에 사용된 기와 명문을 살펴보면, 백정, 木工, 州縣軍과 사원신도 등이 성곽 건설에 동원되었다. 주현군을 구성하는 부대인 保勝軍, 一品軍, 二品軍, 三品軍 등과 함께 養戶도 성곽에 사용되는 기와의 제조에 참여하는 형태로 성곽 건설에 참여하였다. 會原縣의 치소성에 일품군이 동원되었으며, 東平縣의 치소성에 삼품군이 동원되었다.¹³⁾ 그리고 固城縣의 치소성에는 보승군, 일품군, 이품군, 양호가 동원되었다.¹⁴⁾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동래군 치소성의 건설에도 동래군의 백정 농민과 주현군, 사원신도 등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우왕 13년 이전에 만들어진 동래군 치소성 유적인 ③에서 사원신도를 뜻하는 卍을 새긴 명문 기와가 많이 나왔다.¹⁵⁾ 특히 주현군의 동원은 기와의 제작과 성곽의 건설뿐만 아니라 동래군 치소성 건설에 사용한 기와를 먼 거리에 있는 ①의 지점까지 운반하는 노동력으로도 차출되었을 것이다. 주현군의 보승군과 정용군은 官船의 제조, 벌목에도 동원되었으며, 일품군은 開京과 江都 등 수도에서 일어난 성곽, 궁궐, 제방의 건설과 같은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한 토목공사에 동원되었다.¹⁶⁾ 특히 일품군의 경우에는 출신 고을을 벗어나 멀리 수도까지 동원되었던 사실을 참조하면, 비록 먼 거리이지만 동래군이라는 같은 관내의 공공시설인 ③에 사용되는 기와의 운반에 동원되었다고 보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동래군의 백정 농민과 주민, 주현군의 동원과 지휘는 ①과 ③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명의 戶長인 鄭子赫과 鄭諧가 담당했을 것이다. 향리가 향촌사회에서 노동력과 조세 수취 등 국가에서 필요한 제반 세금의 수취를 담당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호장은 향리집단 가운데 최정상에 있는 직위이다. 현종 9년에 제정된 향리 직제의 정원에 따르면, 동래군이 속한 5道の 경우에 향리 전체와 호장의 정원이 네 등급으로 나뉘는데,

11) 朴東百 외, 앞의 책.

12) 구산우, 「고려시기의 성곽 건설과 주민 동원-기와 銘文을 통한 새로운 접근」 『한국중세사연구』 60, 2020.

13) 구산우, 「고려 一品軍 三品軍에 관한 새로운 자료의 소개와 분석」 『역사와 경계』 78, 2011b.

14) 구산우, 「고려 치소성 건설에 동원된 지방군에 관한 새로운 기와 명문-固城의 保勝軍 一品軍 二品軍 養戶의 기와 명문 사례」 『木簡과 文字』 21, 2018.

15) 구산우, 앞의 논문, 2011a, 536~537쪽.

16) 구산우, 「고려전기 주현군(州縣軍)의 활동과 지휘」 『한국중세사연구』 63, 2020.

최소가 31명(호장 4명), 다음이 51명(호장 5명), 그 다음이 61명(호장 7명), 마지막으로 84명(호장 8명)이었다.¹⁷⁾ 그런데 당시에 실제로 설치된 향리직은 현종 9년의 규정보다 더 많았음이 밝혀진다.¹⁸⁾ 그렇다면, 호장의 지위는 다른 향리에 비해 더 오르기 어려운 자리라고 할 수 있다. 호장은 해당 고을의 수많은 향리들 중에서 오직 서너 가문만이 배출하였다.

정자혁과 정해는 바로 그런 지위에 있는 동래군의 최상층 향리들이었다. 한편 ③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 중에는 직책이 표기되지 않은 형태로 宋守(?)라는 또 다른 인명이 나타난다.¹⁹⁾ 鄭씨와 宋씨는 모두 동래군의 土姓이었다.²⁰⁾ 戶長과 同正의 직위를 가진 최상층의 향리인 정자혁과 정해, 동래군의 토성인 송수가 중심이 되어 동래군 치소성의 건설을 주도하였고, 이들이 지휘하는 가운데 동래군의 주민인 백정과 주현군 등이 동원되어 기와의 제작, 치소성의 건설을 완성하였다. 한편 여기에 동원된 일품군 등은 동래군 치소성에 사용한 동일한 기와를 ①의 유적까지 운반하여 ①의 유적을 건설하는 데에 사용하였을 것이다.

한편 발굴단은 ① 유적에서 공공의 권위를 지닌 건축물이 그 중심이라고 판단했는데, <그림-1>에서 보듯이 I 구역의 1호 건물지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림-2>에서 보듯이 II 구역은 정자와 석등, 연못이 있는 공공의 휴게 시설이 중심이라고 파악했다. ① 유적이 공공의 권위를 지닌 건물이라는 점은 동래군 치소성이라는 공공 건축물에 사용된 기와가 여기에도 사용되었고, 또한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의 향리인 정자혁과 정해의 인명이 새겨진 기와가 동래군 치소성과 동일하게 여기서도 발굴된 사실에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③ 유적은 어떤 성격을 지닌 공공 건물로 만들어진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먼저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발굴단이 제시한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구역의 중심 건물이자 이 유적 전체의 중심이 되는 1호 건물지는 그 구체적 용도는 밝히지 않았으나 가장 권위를 지닌 공공 건물로 파악했고, II 구역의 건물은 정자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참조하면서 여기서는 이와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우왕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인 ③ 유적에서 발견된 기와 명문 중에는 客舍와 간지를 새긴 것들이 나왔다. 다음이 그것이다.

<표-7> 동래군 치소성에서 발견된 客舍, 간지 명문

번호	명문	번호	명문
1	…癸丑…	5	客…/舍…
2	客…	6	舍…
3	客癸丑	7	△癸丑
4	客癸…/舍…	8	客癸…/舍…

<표-7>에 있는 기와 명문은 우왕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을 건설하면서 같이 건축한 객사가 癸丑년에 만들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것은 ③의 지점에 있었던 동래군 치소성이 우왕 13년 이전의 계축년에 수축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표-7>의 계축년은 우왕 13년 이전의 어느 시점에 있었던 계축년을 뜻하지만, 구체적인 연도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같이 출토된 기와 명문에 나타나는 호장 두

17) 『高麗史』 권75, 選舉3 銓注 鄉職 顯宗 9년.

18) 具山祐, 『高麗前期 鄉村支配體制 研究』, 해안, 2003, 483~484쪽.

19) 구산우, 앞의 논문, 2011a, 537쪽.

20) 『世宗實錄地理誌』 東萊縣 本縣土姓.

사람의 이름이다.

최근 이루어진 고려시기 계층별 성씨 사용의 시기에 관한 연구 성과를 활용하면, 이에 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²¹⁾ 금석문을 통해 살펴보면, 11세기 이전에는 호장조차도 성씨를 기록한 경우는 찾아지지 않으나, 11세기에 이르면 戶長으로서 武散階를 지닌 사람은 모두 성과명을 동시에 기록하였음이 확인된다. 11세기 사례의 구체적 연도는 1011년부터 1085년까지이고, 여기에는 네 명의 호장들이 해당한다. 11세기의 이 사례들은 무산계를 지닌 것이 하나의 표징이 되어 성씨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다가 1183년 이후에는 호장, 부호장들은 무산계를 지니지 않았더라도 모두 성씨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다섯 사례 이상의 인명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무산계를 지니지 않은 호장, 부호장이 성씨를 표기한 첫 사례는 1183년의 것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 추세가 12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필자는 이런 연구 성과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호장의 성씨 표기에 관한 이런 연구 성과를 받아들이면, ③의 유적에서 두 명의 호장의 성씨가 정씨로 표기하면서 무산계를 표기하지 않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중시한다면, 이 기와는 12세기 이후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호장인 정자혁과 정해를 새긴 기와가 <표-7>에 제시한 명문을 새긴 기와와 동시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객사가 조성된 연도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겠다. 그것은 12세기 이후이고, 동시에 우왕 13년(1387) 이전의 癸丑年이 될 것이다. 이를 찾아보면, 1133년(仁宗 11), 1193년(明宗 23), 1253년(高宗 40), 1313년(忠肅王 즉위), 1373년(恭愍王 22)이 해당된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에서 1183년 이후부터 호장이 성씨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나오므로, 이 중에서 1133년일 가능성은 먼저 제외해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일단 1193년~1373년으로 압축된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왜구의 침략 시기 문제인데, 이는 ③의 지점에서 ②의 지점으로 동래군 치소성이 옮겨가는 시점은 왜구 침략이 본격화되어 연안 지대에 있던 치소성이 내륙으로 옮겨서 새로이 축성했던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고려에서 왜구 침략이 격화되어 치소성을 새로이 축조한 시기는 공민왕대 이후부터 공양왕대까지이다.²²⁾ 따라서 이 점을 감안한다면 <표-7>에 나타난 객사가 건립된 계축년은 1373년일 가능성이 크다. ③의 유적에서 객사와 동래군 치소성이 건립된 시기가 같다면,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 우왕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 즉 ③의 유적은 1373년(공민왕 22)에 수축되었다가, 이로부터 14년 후인 1373년(우왕 13)에 왜구의 침략이 격화되자 ②의 위치로 옮겨가게 되었다.

객사는 고려시기에 치소성의 내부 혹은 치소성과 가까운 지점에 만든 대표적인 공공건물이었다. 그런데 ① 유적은 동래군 치소성으로부터 매우 먼 거리에 조성되었으므로, ① 유적의 대표적 건물인 I 구역의 1호 건물지가 객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앞서 검토했듯이, ③ 유적에 객사가 있었던 점에서도 ① 유적의 건물이 객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객사가 아니면서 호장이 사용하거나 건설할 수 있는 공공 건물로 다른 어떤 것을 상정할 수 있을까?

발굴단은 ① 유적의 중심 건물은 I 구역의 1호 건물지이며, 이는 권위를 지닌 공공 건물로 파악했다. 아울러 II 구역의 중심 건물인 1호와 2호 건물지는 정자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발굴 결과를 토대로 한 발굴단의 이런 견해는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당시 동래군의

21) 이종서, 「고려시대 성씨 확산의 동인과 성씨의 기능」 『역사와 현실』 108, 2018, 322~326쪽.

22) 구산우, 앞의 논문, 2010, 250~251쪽.

치소성이었던 ③ 유적으로부터 5.8km나 멀리 떨어진 지점에 두 명의 호장이 역사의 중심인물로 참여했던 동래군의 공공 건물로 과연 어떤 것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록이 참조된다.

㉞ 新及第進士가 州에 들어오는 날, 州官은 먼저 將校·伶人을 경계 근처에 보낸 다음 州吏들을 거느리고 五里亭까지 나가 公服을 갖춰 입고 香卓 및 拜位를 진설한다. 新及第進士가 도착하여 말에서 내리면 州官은 문으로 나가 揖하고 亭子로 들어가는데, 新及第進士가 동북쪽 구석에 서면 州官은 問上禮를 행한다. 이를 마치면 新及第進士가 서쪽 계단으로 먼저 나가고 判官도 나간다. 副使가 동쪽 벽으로 옮겨 서면 新及第進士는 參狀을 올리고 正廳에 올라 북쪽을 향해 자리를 옮겨 再拜한다. 조금 앞으로 나아가 다시 再拜하고 다시 조금 앞으로 나아가 문안 인사를 나눈 다음, 再拜하고 잠시 엎드렸다가 곧 나간다. 副使가 몸을 숨기면 判官은 돌아와 正廳에 들어가 동쪽 벽에 서고 新及第進士는 다시 서쪽 俠門을 따라 正廳에 올라 일렬로 예를 행하기를 위의 의식과 같게 한다.

㉟ 끝나면 新及第進士가 먼저 가고 州官이 뒤를 따르는데, 本家에 이르러 술과 과일을 간단하게 차리고 新及第進士로 하여금 부모에게 祝壽의 술잔을 올리게 한 다음 나간다. 州官이 뒤를 따라가고 부모도 뒤따라 館舍의 南廳에 이르러 그 부친은 북쪽 끝에, 新及第進士는 남쪽으로 가는데, 부친이 鄉吏이면 바로 접한 방에 있다. 新及第進士는 북쪽 끝에, 副使는 동쪽 벽에, 判官은 북쪽 벽에 적당히 앉는다. 첫 순배의 술은 州官이 몸소 부어 부모에게 올리고 다음으로 술과 음식을 올리는데, 이때 음악을 연주하고 雜技를 행한다. 잔치가 끝나면 新及第進士는 사례하며 再拜하고 문안을 드린 다음 다시 再拜하고 나간다. 만약 兩親이 없으면 養父母·妻父母로 대신하고 모두 없으면 伯父나 叔父가 대신해 예를 행하는데, 위의 의식과 같다.²³⁾

위의 기록은 고려시기에 새로이 科擧에 급제한 사람인 新及第進士가 고향에 금의환향했을 때 친부모를 영접하는 의례를 기술한 것이다. 의례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㉞는 新及第進士가 고향에 거의 다 왔을 때, 출신지의 지방관과 속관, 지방군 장교, 향리 등이 치소성으로부터 5리의 거리에 있는 정자, 즉 五里亭까지 나아가서 그를 맞이하는 儀禮를 서술하고 있다. ㉟는 新及第進士가 本家와 치소성에 이르러 부모에게 올리는 예를 기술하고 있다.

위의 기록에서 州官은 지방장관(수령), 將校는 지방군의 지휘관, 伶人은 관청에서 심부름하는 사람, 副使는 지방장관 다음의 지방차관, 判官은 지방관을 돕는 속관, 州吏는 고을의 鄉吏를 말한다. 이들은 당시 향촌사회의 운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망라한 것으로서, 이는 위의 기록이 당시에 실제로 행해졌음을 잘 보여준다. ㉟에서 新及第進士의 아버지가 鄉吏일 경우의 예를 서술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당시에 실제로 향리의 자제들이 과거에 많이 급제한 사실²⁴⁾을 반영한 대목이라고 판단된다.

㉞와 ㉟에서 반영된 의례의 형식과 내용을 볼 때, 여기서의 신급제진사는 고려의 과거 종목에서 가장 영예스럽다고 생각하는 兩大業 중의 製述業 합격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위의 기록에서 지방장관 이하 향촌사회를 주도하는 여러 관직자들이 모두 깃듯이 예를 갖추어 新及第進士를 대접하는 것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進士라는 명칭이 고려시기에 정통 관료가 되는 과거 종목인 製述業의 본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표기한 것²⁵⁾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23) 『高麗史』 권68, 禮10 嘉禮 新及第進士榮親儀.

24) 許興植, 『高麗科擧制度史研究』, 일조각, 1981; 朴龍雲, 『高麗時代 蔭敍制와 科擧制 研究』, 일지사, 1990.

25) 朴龍雲, 앞의 책, 141쪽.

『世宗實錄』에도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베푸는 영친의를 서술하면서 오리정이 나타나는데, 위의 『高麗史』 기록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新及第가 還鄕하여 五里亭에 이르면, 그 고을의 人吏가 冠帶를 갖추고 나와서 맞이한다. 신급제는 公服을 입고 서울에서 遊街하는 의식과 같이 한다. 鄕校에 이르러 文廟에 참배하고 다음에 守令廳에 나아가서 頓首再拜를 행한다. 그 다음에는 부모의 집으로 가면, 수령이 그 집까지 따라가고, 신급제의 부모와 함께 客舍에 돌아와 향교의 生徒들로 하여금 慶賀하게 하고 이내 榮親宴을 베풀되, 남자와 여자는 大廳을 달리하고 그 饌具는 적당히 供辦한다.²⁶⁾

『세종실록』에서는 위의 서술에 이어서 신급제자의 부모가 없는 경우의 영친의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고려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세종실록』에서는 영친의가 행해지는 장소가 五里亭이 아닌 鄕校와 守令廳으로 되어 있고, 수령이 오리정까지 나아가지 않는 점 등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려사』에 서술된 신급제자에 대한 영친의가 조선 세종 때와는 다른 형태로 고려시기에 실제로 행해졌음을 말해준다.

『고려사』의 ㉞에서 지방관이 신급제진사를 처음 맞이하는 공간에 있는 건물이 五里亭으로 나타난다. 오리정이라는 명칭은 치소성에서 五里 정도의 거리에 있는 정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 오리정은 각급 지방관이 兵馬使를 영접하는 의례, 병마사와 각급 지방관이 국왕의 명령을 받은 宰樞와 元帥를 영접하는 의례에서도 등장한다.²⁷⁾ 牧使, 都護府使, 知州事 등의 각급 지방관은 병마사가 올 때, 오리정까지 나아가 맞이한 후 영접 의례를 거행하고, 국왕의 명령을 받은 재추와 원수가 도착하면 병마사는 別衛, 지방관과 함께 오리정까지 가서 영접하였다.

이를 동래군의 실정에 대입하여 살펴보면, 당시의 치소성이 있는 ㉜에서 ㉞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5.8km이므로 ㉞에 세워진 정자는 五里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 만들어졌다. 그런데, ㉞의 위치는 당시 동래에서 개경으로 연결되는 驛路선상에서 보면, 梁州(지금의 양산시)를 거쳐 密城(지금의 밀양시)으로 연결되는 지점과 가까운 곳에 있다.²⁸⁾ ㉞의 지점은 지금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북구로 넘어가는 최단거리에 있는 곳에 있다. 이는 개경에서 출발한 新及第進士가 양주에서 낙동강 하구 쪽으로 龜浦까지 남진하다가 오늘날의 북구와 동래구의 경계에 있는 만덕산을 거쳐 동래군 관내로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㉞의 위치는 치소성에서 五里 이상의 먼 거리에 있는 곳이지만, 역로선상에 있는 지리적 위치의 관점에서 보면,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신급제진사를 처음 맞이하는 의례를 거행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려시기에 지방관이 국왕의 詔書를 영접할 때, 치소성 밖에 있는 정자에서 이를 거행하는 의례를 기술한 대목에서도,²⁹⁾ 정자가 향촌사회의 공공건물로서 건설되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초기에 군현에 있었던 정자에 대해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樓亭조가 가장 자세한 기록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동래현의 누정으로는 유일하게 靖遠樓가 기재되었는데, 정원루는 당시 客館의 북쪽에 있었다.³⁰⁾ ㉞이 조선시기 동래현의 치소로부터 동쪽에 있었으므로, ㉞에 있는 정자가 정원루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26) 『世宗實錄』 권44, 世宗 11년 4월 庚寅.

27) 『高麗史』 권68, 禮10 嘉禮 外官迎兵馬使及兵馬使外官迎衛命宰樞儀.

28) 鄭杓根, 『高麗·朝鮮初の驛路網과驛制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8, 52쪽.

29) 『高麗史』 권68, 禮10 嘉禮 外官迎本國詔書儀.

3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3, 東萊縣 樓亭.

위의 기록의 ㉔에서 五里亭에서 행한 첫 번째 행사를 마친 후에 이어지는 의례의 거행 과정에서 新及第進士가 正廳에 올라서 나머지 일을 계속한다고 되어 있다. 그 뒤에는 判官도 正廳에 들어가서 동쪽 벽에 선다고 하였다. 여기서 正廳이란 일반적으로 치소성 내부에 있는 수령과 속관의 執務廳을 말한다. 그러므로 일반적 의미에서 말한다면, 정청은 오리정에 있는 건물은 아니다. 그런데, 위의 기록에서는 정청이 오리정에서 시행하는 수령 등과 신급제진사의 첫째 상면에 이어서, 가까운 곳에서 의례가 행해지는 장소로 나온다. 그러므로 ㉔에 나오는 정청이 수령과 속관의 근무처인 집무청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㉔ 기사가 오리정에서 정청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누락된 형태로 기록되어 자료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다.

㉔에서 행해지는 의례를 보면, 新及第進士가 本家로 이동하여 부모에게 祝壽의 예를 올리고, 수령과 부모가 館舍의 南廳에 간다고 하였다. ㉔에 나오는 관사의 남청이란 곧 치소성 내부에 있는 공공의 행정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㉔에 있는 정청과는 다른 공간에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 의미에 있어서 정청은 바로 ㉔ 부분의 관사 등과 가까운 곳에 있는 건물이다.

문맥상으로 보면, ㉔ 부분의 정청은 치소성 내부에 있는 수령과 속관의 집무청이 아니라 오리정과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공공 건물을 지칭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㉔의 정청이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했을 때, 이를 ① 유적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① 유적의 중심 건물인 I 구역의 1호 건물지일 가능성이 있다. 오리정의 정자 건물은 II 구역의 1호, 2호 건물지이다.

이상으로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30번지에 있는 ①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을 보면, 여기서 사용된 기와는 우왕 13년 이전에 동래군 치소성이었던 ③의 유적을 만들 때 사용된 기와와 같은 것이었다. 이 점을 실마리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점을 유추할 수 있다. ① 유적에서는 고려 기와 가마가 1기 발견되었으나, 여기서 만든 기와를 ① 유적에 사용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③ 유적에서는 기와 가마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①과 ③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기와가 어느 가마에서 만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①과 ③ 유적의 규모나 기본 성격을 비교했을 때, 동래군 치소성 유적인 ③이 ①보다는 더 대규모이고 공공성이 큰 건축물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기와의 수요도 ③이 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와의 수급 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③에서 만든 기와가 ① 유적의 건설에도 공급되어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우왕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 즉 ③ 유적을 건설하면서 만든 기와를 ①의 유적에 공급했다고 보았을 때, 이와 관련되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첫째, ①과 ③에서 사용된 기와를 만든 노동력이 어떻게 조달되었는가의 문제이다. 둘째, ③에서 만든 기와를 직선거리 5.8km의 먼 거리에 있는 ①의 유적까지 어떻게 운반하여 공급했는가의 문제이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고려시기 성곽 건설에는 白丁 농민과 지방군의 군인이 동원되었다. 특히 성곽 건설에 사용된 기와 명문을 살펴보면, 백정, 木工, 州縣軍과 사원 신도 등이 성곽 건설에 동원되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동래군 치소성의 건설에도 동래군의 백정 농민과 주현군, 사원 신도 등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우왕 13년 이전에 만들어진 동래군 치소성 유적인 ③에서 사원 신도를 뜻하는 畵를 새긴 명문 기와가 많이 나왔다. 특히 주현군의 동원은 기와의 제작과 성곽의 건설뿐만 아니라 동래군 치소성 건설에 사용한 기와를 먼 거리에 있는 ①의 지점까지 운반하는 노동력으로도 차출되었을 것이다.

주현군의 보승군과 정용군은 官船의 제조, 벌목에도 동원되었으며, 일품군은 開京과 江都 등 수도에서 일어난 성곽, 궁궐, 제방의 건설과 같은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한 토목공사에 동원되었다. 특히 일품군의 경우에는 출신 고을을 벗어나 멀리 수도까지 동원되었던 사실을 참조하면, 비록 먼 거리이지만 동래군이라는 같은 관내의 공공시설인 ③에 사용한 기와를 ① 유적으로 운반하는 일에 동원되었다고 보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동래군의 백정 농민과 주민, 주현군의 동원과 지휘는 ①과 ③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명의 戶長인 鄭子赫과 鄭諧가 담당했을 것이다.

③ 유적의 客舍 건물에 사용된 기와에 癸丑년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것이 8점 발견되었는데, 이는 객사 건물과 ③ 유적이 만들어진 구체적 연도를 추정하는 단서가 된다. 거기에 ③ 유적에 나온 기와 명문에서 두 명의 호장을 표기하면서 武散階가 기록되지 않고 성과 명을 모두 기록한 사실, 그리고 ③에서 ②로 동래군 치소성이 옮겨가게 된 근본적 이유라 할 수 있는 왜구의 침략 양상을 종합하여 유추하면, 이를 추정할 수 있다. ③의 유적에서 두 명의 호장을 표기할 때, 성과 명을 모두 기입하면서 무산계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 기와가 12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임을 말해준다. 그리고 왜구의 침탈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공민왕대 이후이므로 이를 종합하면 객사가 만들어진 계축년은 1373년(공민왕 22)일 가능성이 크다.

객사가 만들어진 것과 같은 해에 ③ 유적이 건설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이 추정된다. ③의 유적은 신라통일기에 동래군의 치소성으로 만들어졌고, 현종 12년에 1차 수축이 이루어졌으며, 1373년(공민왕 22)에 2차로 수축되었다. 그러다가 왜구의 침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4년 후인 1387년(우왕 13)에 더 내륙에 있는 ②의 위치로 동래군 치소성을 옮겼다.

① 유적의 기본 성격은 동래군 치소성에서 五里의 거리에 있는 공공건물인 五里亭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오리정의 존재와 그 기능은 고려시기에 과거에 급제한 進士가 고향으로 되돌아올 때 행한 榮親儀를 통해 알 수 있다. ① 유적은 ② 유적으로부터 5리보다 훨씬 먼 거리에 있으나, 지리적 위치는 개령에서 동래로 올 때 거쳐야 하는 역로선상에서 보면, 밀성과 양주를 거쳐 낙동강 하구를 따라 구포까지 와서 만덕산을 넘어 동래 관내로 오는 길목에 있다. 과거 급제자의 榮親儀에서 오리정의 인근에 있는 正廳이 ① 유적에 있는 I 구역의 1호 건물지이고, 오리정이 ① 유적의 II 구역에 있는 정자 건물로 추정된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최근 발굴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30번지 일원에서 조성된 고려 유적의 성격에 대해서 여기서 출토된 기와 명문의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유적은 출토된 유물이나 유구의 형태로 보아서 전체적으로 건물지가 그 중심이 된다. 발굴단은 유적을 I 구역과 II 구역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I 구역에는 권위성을 갖는 대형 건물지가 중심 건물로서 만들어졌고, II 구역은 중심 건물의 위치에 정자나 그에 준하는 소규모 단칸 건물만 조성된 점을 근거로 I 구역에 연계된 부속 공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I 구역에 있는 1호 건물지가 이 유적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권위를 지닌 공공 건물로 볼 수 있다.

한편 여기서 출토된 유물은 이 유적이 고려시기에 조성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예컨대 총 58점이 출토된 자기류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청자였다. 그리고 기와류는 총 176점이 발견되었는데, 이 중에는 24점의 명문 기와가 나왔다. 대부분의 기와 명문은 우왕 13년 이

전에 만들어진 동래군 치소성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명문을 새긴 것들이라는 점에서, 이 유적은 우왕 13년 이전에 조성된 동래군 치소성의 건설 시점과 동시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유적에서 나온 대부분의 기와 명문은 戶長同正鄭子赫 계열의 명문이다. 기와의 어느 부분이 떨어져나거나 뭉개져서, 戶長同正鄭子赫의 일곱 글자 가운데 몇 글자만 남긴 형태의 기와가 대부분 출토되었다. 戶長同正鄭諧 계열의 명문은 두 곳의 유구에서만 출토되었다. 나머지 기와 명문 기와들도 제한된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본고에서 검토한 유적을 ①, 우왕 13년 이전에 조성된 동래군 치소성 유적을 ③, 그리고 우왕 13년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동래군 치소성을 ②라고 명명했을 때, ①과 ②, ③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과 ③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기와가 어느 가마에서 만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기와의 수급 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③에서 만든 기와가 ① 유적의 건설에도 공급되어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성곽 건설에 사용된 기와 명문을 살펴보면, 백정, 木工, 州縣軍과 사원 신도 등이 성곽 건설에 동원되었다. 동래군 치소성의 건설에도 동래군의 白丁 농민과 州縣軍, 사원 신도 등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우왕 13년 이전에 만들어진 동래군 치소성 유적인 ③에서 사원 신도를 뜻하는 屯을 새긴 명문 기와가 많이 나왔다. 특히 주현군의 동원은 기와의 제작과 성곽의 건설 뿐만 아니라 동래군 치소성 건설에 사용한 기와를 먼 거리에 있는 ①의 지점까지 운반하는 노동력으로도 차출되었을 것이다. 고려시기에 一品軍이 출신 고을을 벗어나 멀리 수도까지 동원되었던 사실을 참조하면, 비록 먼 거리이지만 동래군이라는 같은 관내의 공공시설인 ③에서 사용한 기와를 ① 유적으로 운반하는 일에 동원되었다고 본다.

동래군의 백정 농민과 주민, 주현군의 동원과 지휘는 ①과 ③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명의 戶長인 鄭子赫과 鄭諧가 담당했을 것이다.

③ 유적의 숙소 건물에 사용된 기와에 癸丑년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사실, ③ 유적에 나온 기와 명문에서 두 명의 戶長을 표기하면서 武散階가 기록되지 않고 성과 명을 모두 기록한 사실, 그리고 ③에서 ②로 동래군 치소성이 옮겨가게 된 근본적 이유라 할 수 있는 왜구의 침략 양상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③ 유적에서 객사가 만들어진 계축년은 1373년(공민왕 22)일 가능성이 크다.

객사가 만들어진 것과 같은 해에 ③ 유적이 건설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이 추정된다. ③의 유적은 신라통일기에 동래군의 치소성으로 만들어졌고, 현종 12년에 1차 수축이 이루어졌으며, 1373년(공민왕 22)에 2차로 수축되었다. 그러다가 왜구의 침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4년 후인 1387년(우왕 13)에 더 내륙에 있는 ②의 위치로 동래군 치소성을 옮겼다.

① 유적의 기본 성격은 동래군 치소성에서 五里의 거리에 있는 공공건물인 五里亭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오리정의 존재와 그 기능은 고려시기에 과거에 급제한 進士가 고향으로 되돌아올 때 행한 榮親儀를 통해 알 수 있다. ① 유적은 ② 유적으로부터 5리보다 훨씬 먼 거리에 있으나, 지리적 위치는 개령에서 동래로 올 때 거쳐야 하는 驛路선상에서 보면, 밀성과 양주를 거쳐 낙동강 하구를 따라 구포까지 와서 만덕산을 넘어 동래 관내로 오는 길목에 있다. 과거 급제자의 榮親儀에서 오리정의 인근에 있는 正廳이 ① 유적에 있는 I 구역의 1호 건물지이고, 오리정이 ① 유적의 II 구역에 있는 정자 건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최종혁 외, 『(부산 온천동 소방안전체험관 건립공사부지 내) 釜山 溫泉洞 차밭골 遺蹟』,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재단법인 부경문물연구원, 2016, 총 377쪽.
- 朴東百 외, 『東萊 古邑城址』 2책, 경남문화재연구원, 2007.
- 具山祐, 『高麗前期 鄉村支配體制 研究』, 해안, 2003.
- 鄭杓根, 『高麗·朝鮮初의 驛路網과 驛制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8.
- 구산우, 「고려시기 面에 관한 새로운 자료의 소개와 분석」 『한국중세사연구』 30, 2011.
- 구산우, 「高麗時代 釜山地域의 地方行政構造」 『港都釜山』 20, 2004.
- 구산우, 「고려말 성곽 축조와 향촌사회의 동향」 『역사와 경계』 75, 2010.
- 구산우, 「고려시기의 성곽 건설과 주민 동원-기와 銘文을 통한 새로운 접근」 『한국중세사연구』 60, 2020.
- 구산우, 「고려 一品軍 三品軍에 관한 새로운 자료의 소개와 분석」 『역사와 경계』 78, 2011.
- 구산우, 「고려 치소성 건설에 동원된 지방군에 관한 새로운 기와 명문-固城의 保勝軍 一品軍 二品軍 養戶의 기와 명문 사례」 『木簡과 文字』 21, 2018.
- 구산우, 「고려전기 주현군(州縣軍)의 활동과 지휘」 『한국중세사연구』 63, 2020.
- 이종서, 「고려시대 성씨 확산의 동인과 성씨의 기능」 『역사와 현실』 108, 2018.

「부산 동래에서 출토된 새로운 고려 기와 명문」 토론문

정 은 정 (부경대학교)

이 연구는 최근 부산 온천동 일대에 출토된 발굴 건물의 성격을 기와명문의 분석을 통해 구명하려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고려시대 문헌연구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고고학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방법론 차원에서 귀감이 될 만하다. 이 글에서는 지역 향촌사를 운영이나 제도 사적 입장이 아닌, 경관과 시설의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연구의 핵심 관건은 동래 치소성(고읍성)과 온천동 33번지 건물의 상관관계 분석에 있다. 온천동 33번지 유적지의 건물을 공공시설로 파악하고 동래치소성 관할의 오리정으로 상정하였다. 특히 오리정을 지방관아에서 거행되던 영친의 장소로 주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의례를 검토하는데 초석이 될 듯하다. 향촌사회 운영과 군현제도사 지방촌락과 면리제를 주도해오던 그간 연구에서 지방의 경관시설의 문제까지 외연적 확장을 일군 시도라 하겠다.

개경 경기의 수도권 연구와 지방도시 경주의 경관과 읍치 시설 관련한 몇 편의 논문작성이 연이 되어 토론자에 섭외된 것 같다. 오독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토론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1장의 상당부분을 단 1편의 보고서를 요약하고 보고자의 견해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고려시대 동래의 망미동 고읍성터, 복천동 읍성과 온천동 330번지 유적의 성격을 규명함에 있어서,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고려시대 동래의 권역과 치소성, 읍사와 외관청, 주변의 공공재일 것이다. 발굴자료에 주목하다 보니 군현지도 읍지 고문헌에 등장하는 각종 시설, 주시하는 정자 객관 역원 등 모든 읍치 안팎의 시설이 일괄되지 않아 매우 거친 감이 든다. 1장에서 사실 표 1, 2 외엔 나머지는 사족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대폭 줄이고 관련한 세부사항으로 대체해 주시는 친절함을 주문한다.

2. 동래고읍성터와 온천동 유적지간 동일한 명문기와가 출토된 정황을 바탕으로 유적 조성의 연대를 같은 시기로 비정하고 있다. 이 가설에도 몇 가지 의문이 남는다. 과연 동래호장 정자혁 정해가 각인된 명문기와가 출토된 곳이라면 모두 동시기에 조성될 수 있는가, 또 이들이 향촌사회의 호장인 까닭에, 이 인명이 각인된 명문기와가 출토된 온천동 330번지 유적지 성격을 공공건물로 볼 수 있는가는 숙고를 요한다. 새로운 건물의 조성시 필요한 목자재나 건축기자재는 폐기한 기존의 건축자재를 재활용한 측면도 있다. 기와는 물론이다.

3. 혼돈을 주는 가설과 해석도 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온천동 330번지 유적지와 동래 복천동 유적지가 가깝다. 5.8km나 떨어진 망미동 고읍성터와 온천동 일대를 단지 동일 명문와가 출토되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엮은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문을 불식하려면 분석자료로서 정해 정자혁 각인의 명문와에도 기와문양의 유형화, 동래 일대에 찾아지는 기와 생산처 고려시대 분묘 출토 유물의 전체적 상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4. 아울러 문헌과 고지도에서 확인 가능한 동래의 시설을 소개했으면 한다. 객사 외에도 정자

형 건축양식을 띠게 될 누정 대 역원부속의 정자 등 다양한 시설도 있다. 기록에서 고적조에도 부재한 정자를 단지 치소성 조성에 관여한 정자핵 정해가 각인된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다고 하여 온천동 330번지 유적을 공공건물로 볼 수 있을까. 정자핵과 정해라는 인명 명문와를 거두어내면, 오히려 복천동 일대와 온천동 유적지는 더 가깝게 느껴진다. 이 지적은 발굴조사가 앞으로 진행된다면, 온천동 일대를 오리정으로 규정하고 동래고읍성터와 밀접한 공공시설로 규정한 지금의 논지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에서 제기한다.

5. 온천동 일대 건물지를 과연 공공건물로서 오리정으로 볼 수 있는가 의문이다. 고려사에는 오리정 관련한 기록이 단 두 건뿐, 예지에서이다. 신급제자가 출신지에 내려가거나 외관이 병마사를 맞이할 때 영접장소로서 오리정이 등장한다. 승람과 지리지에는 부산 동래와 관련해서 오리정으로 추정할 만한 정자가 없다. 오리정은 일반명사로서 특정 누정 정자에 이름이 부기된 것일텐데, 치소성에서 5리거리와 온천동 일대에 부합하는 정자건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고적조에 현 남 5리 지점에 검효대 정도이다.

6. 4번과 같은 맥락이다. 결론내리기를, 온천동 일대 추정 오리정은 개경으로의 상하행길에 해당하는 북구 만덕산 부근을 경유함으로, 신급제연이 치러지기에 충분한 요충지로서 입지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온천동 330번지 유적을 무리하게 망미고읍성터의 부속공공시설로 볼 것이 아니라, 첫째 역원 사찰의 누정 시설이나 둘째 향호가 조성한 공적으로 조성한 건물보다는 부호층이 사적으로 조성한 건물로 볼 여지, 셋째 이미 폐기된 건물에서 나온 기자재 명문와를 재활용하여 복천동 일대 치소성터 근처의 시설로 파악할 여러 가능성을 상정해 봄직하다.

7. 온천동 유적지를 오리정으로 결론 내는 것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오리정의 기능을 서술한 대목은 뭔가 소략하다는 느낌이다. 먼저 오리정은 당대에는 역간의 거리를 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역에 부속한 시설과 신급제자와 병마사를 맞이하는 영송장소로서 기능을 분리하기 모호하다. 오리정에서 절일의례 중 하나인 입춘맞이 행사가 치러진다. 오리정의 기능을 좀 더 상세히 다루어주었으면 한다.

게다가 지역의 읍치를 둘러싼 읍치 안팎- 교외- 영속하는 군현과 부곡제지역의 공간구조와 관련시설의 분포실태가 보다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고려사에서 오리정이 예지 가례 규정에만 등장하는 데다, 실제 읍치 가까운 5리정의 방향, 개경과의 상하행길에만 설치된 것인지, 속군현과 주현과의 왕래까지 염두하면 단정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무리한 듯하다. 동래는 고려시대 울주 양주의 속현이며 속현에서 개경 외에도 주현 계수관으로 왕래하기 위한 통로도 상정되어야 한다. 오리정 외 속현 주현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관문시설과 부속시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8. 온천동 330번지 유적의 성격을 해명하여 치소성에 부속하는 공공재 건물을 밝히는데 초점을 둔 논문의 의의는 크다. 전반적으로 문헌자료와 군현지도 여타 발굴성고가 섬세하게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보조적 자료 없이 주요 논거로 제시한 정자핵 정해 명문와의 출토를 들어, 온천동 유적지와 망미동 고읍성터를 무리하게 엮어내는 것이 타당한가는 의문이다.

건물조성의 주체를 호장으로 특정하여 공공건물 조성자라 하더라도, 고려에서 호장을 공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가. 고려사회에서 공공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전제, 고려시대 변방이던 동래의 지역 위상과 그에 상응하는 관아시설(읍사 외관청) 명문기와 외에 기타 유물자료를 바탕한 광범위한 분석자료가 활용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漢代 吏의 자산 검증과 그 의미

- 출토 사료에 보이는 基層 吏의 樣態를 중심으로 -

이 주 현 (동아대학교)

목 차

들어가며

I. 자산[貲]: 吏 임명의 주요 조건

II. 기층 吏의 자산에 대한 검증

III. 吏 자산 검증의 목적

VI. 吏 임명에 수반된 경제적 부담 및 혜택

나가며

들어가며

개인의 능력으로 吏를 선발하는 방식이 부재하던 시기, 吏의 선발과 임명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 韓信의 젊은 시절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秦·漢의 吏 임명은 기본적으로 추천에 근거하였다.¹⁾ 그런데 이러한 吏 임명 방식이 존재하였다면, 吏 임명 시 자연히 개인의 능력보다는 여타 배경이 강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漢代의 경우 가장 중요한 ‘배경’은 바로 집안의 자산[貲]으로 추측되는데, 실제로 당시 ‘貲’를 근거로 吏에 임명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렇다면 吏를 임명할 때 자산을 고려한 관행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는 부유한 이들에 대한 단순한 혜택이었을까, 혹은 다른 목적이 존재하였을까? 본고는 이 점에 주목하여 吏 임명과 자산 사이의 관계 및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 자산[貲]: 吏 임명의 주요 조건

漢代 吏의 임명 조건 및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史書의 吏 임명 기록을 통해 당시 吏를 임명할 때 대체로 어떠한 요소를 중시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누군가를 吏에 제수할 때 그 근거로서 종종 ‘無害(혹은 毋害)’라는 표현이 보인다. 秦末 蕭何가 ‘文無害’하여 沛縣의 主吏掾이 된 것²⁾은 잘 알려져 있는데, 동일 표현은 酷吏로 유명한 咸

1) 『史記』 卷92 「淮陰侯列傳」 p.2609, “淮陰侯韓信者, 淮陰人也. 始爲布衣時, 貧無行, 不得推擇爲吏.”
【集解】李奇曰: 「無善行可推舉選擇.」

2) 『史記』 卷53 「蕭相國世家」 p.2013, “蕭相國何者, 沛豐人也. 以文無害爲沛主吏掾.” 【集解】漢書音義曰: 「文無害, 有文無所枉害也. 律有無害都吏, 如今言公平吏. 一曰, 無害者如言『無比』, 陳留閒語也.」
韋昭云「爲有文理, 無傷害也.」

宣³⁾, 杜周⁴⁾의 승진 과정에도 등장한다. 無害의 의미를 無比, 즉 ‘아주 뛰어난 자질을 갖춘 것’⁵⁾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정작 이 표현이 등장할 때 개인의 학문·실무 역량에 대한 추가적 기술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趙禹가 丞相史로 근무할 때 丞相府의 사람들이 그의 공평, 청렴함을 칭찬하자 승상 周亞夫가 그에 대해 “禹가 無害함은 잘 알고 있으나 法에 치중하여 승상부에 둘 수 없다”⁶⁾고 평가한 것 역시 無害가 곧 吏 임명에 필요한 객관적 능력을 지칭한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無害’란 문자 그대로 ‘해를 끼치지 않는 것’⁷⁾, 즉 커다란 하자가 없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 혹은 그러한 자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無害가 포괄하는 범위는 상당히 넓어지고 그 개념 또한 상당히 모호해진다. 즉, 吏 임명에서의 無害란 일종의 최저 기준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그나마도 다분히 주관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貲’, 즉 집안의 자산은 漢代 吏 임명 시 중요 조건이었는데, 無害와 달리 자산은 임명의 객관적인 근거로서 기능하였다. 吏 임명에 필요한 자산의 하한을 낮춘 景帝 後二年 5월의 詔書는 일정 액수 이상의 보유 자산이 吏 임명에 필수불가결하였음을 보여준다.

지금은 訾算十 이상이어야 관직을 얻을 수 있는데, 廉士의 算이 반드시 많은 것은 아니다. 市籍을 가진 자는 관직을 얻을 수 없고 訾가 없으면 또한 관직을 얻을 수 없으니, 짐은 이를 심히 가엽게 여긴다. 訾算四 이상이면 관직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廉士가 오래도록 職을 잃지 않게 하고 貪夫가 오래도록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라.⁸⁾

즉, 관리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詔書 이전 시점에는 최소 訾十算 이상, 詔書 반포 이후 시점에는 訾四算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하였다. 이에 대해 應劭는 十算은 곧 당시 십만 錢에 해당하며 吏의 탐욕을 경계하였기에 최소한의 재산 기준을 둔 것이라고 하였다.⁹⁾ 단, 漢代 吏 임명의 자산 기준이 지나치게 높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무제 때 中家の 재산을 대략 십만 전으로 상정한다면¹⁰⁾ 당시 中家の 백성 대부분은 吏가 되기 위한 최소 자산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吏 임명에 보유 자산이 직접 영향을 끼치고, 그러한 ‘전통’이 오래도록 계속된 것 역시 분명하다. 秦末 韓信이 가난하여 吏로 추천받지 못한 사실¹¹⁾, 董仲舒가 “대저 長吏는 郎

3) 『史記』卷123 「酷吏列傳·減宣」 p.3152, “減宣者, 楊人也. 以佐史無害給事河東守府.”

4) 『史記』卷123 「酷吏列傳·杜周」 pp.3152~3153, “杜周者, 南陽杜衍人. 義縱爲南陽守, 以爲爪牙, 舉爲廷尉史. 事張湯, 湯數言其無害, 至御史.”

5) 『漢書』卷39 「蕭何傳」 p.2005, “蕭何, 沛人也. 以文母害爲沛主吏掾.” 【蘇林曰: 「母害, 若言無比也. 一曰, 害, 勝也, 無能勝害之者.」】

6) 『漢書』卷90 「酷吏傳·趙禹」 p.3651, “趙禹, 犂人也. 以佐史補中都官, 用廉爲令史, 事太尉周亞夫. 亞夫爲丞相, 禹爲丞相史, 府中皆稱其廉平. 然亞夫弗任, 曰: 「極知禹無害, 然文深, 不可以居大府.」”

7) 『漢書』卷39 「蕭何傳」 p.2005, “蕭何, 沛人也. 以文母害爲沛主吏掾.” 【師古曰: 「害, 傷也, 無人能傷害之者.」】

8) 『漢書』卷5 「景帝紀」 p.152, “五月, 詔曰: 「人不患其不知, 患其爲詐也; 不患其不勇, 患其爲暴也; 不患其不富, 患其亡厭也, 其唯廉士, 寡欲易足, 今訾算十以上乃得宦, 廉士算不必衆, 有市籍不得宦, 無訾又不得宦, 朕甚愍之, 訾算四得宦, 亡令廉士久失職, 貪夫長利.”

9) 『漢書』卷5 「景帝紀」 p.152, “應劭曰: 「古者疾吏之貪, 衣食足知榮辱, 限訾十算乃得爲吏. 十算, 十萬也. 賈人有財不得爲吏, 廉士無訾又不得宦, 故減訾四算得宦矣.」”

10) 이성규, 「秦의 地方行政組織과 그 性格」, 『東洋史學研究』 31, 1989, p.73

11) 『史記』卷92 「淮陰侯列傳」 p.2609, “淮陰侯韓信者, 淮陰人也. 始爲布衣時, 貧無行, 不得推擇爲吏, 又不能治生商賈, 常從人寄食飲, 人多厭之者, 常數從其下鄉南昌亭長寄食, 數月, 亭長妻患之, 乃晨炊蓐食.”

中, 中郎로부터 나오고 二千石官의 子弟가 郎吏로 선발되니, 이는 또한 富貴에 의한 것이지만 반드시 현명해서가 아니”¹²⁾라며 비판한 것은 吏의 임명 시 자산의 다과가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된 것이 일시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문헌 속 관리의 임명 기록에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郎官에 곧바로 임명된 이들 중에는 집안의 자산이나 家格을 배경으로 삼은 이들이 적지 않았다.

(1) 司馬相如者, 蜀郡成都人也, 字長卿. (….) 以貲爲郎, 事孝景帝, 爲武騎常侍, 非其好也.¹³⁾

(2) 張廷尉釋之者, 堵陽人也, 字季. 有兄仲同居. 以訾爲騎郎, 事孝文帝, 十歲不得調, 無所知名.¹⁴⁾

(3) 李將軍廣者, 隴西成紀人也. (….) 孝文帝十四年, 匈奴大入蕭關, 而廣以良家子從軍擊胡, 用善騎射, 殺首虜多, 爲漢中郎.¹⁵⁾

(4) 甘延壽字君況, 北地郁郅人也. 少以良家子善騎射爲羽林, 投石拔距絕於等倫, 嘗超躑羽林亭樓, 由是遷爲郎.¹⁶⁾

(1)의 司馬相如와 (2)의 張釋之는 貲를 근거로 郎과 騎郎이 된 사례이다. 한편, 자산을 이용하여 郎官이 되었다고 직접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3)의 李廣과 (4)의 甘延壽는 집안의 자산과 배경에 의지하여 郎官에 오른 사례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良家子, 즉 ‘良家の 자식’으로 명명되었는데, 良家は 兩漢 시기 七科謫·醫·巫·工·奴婢에 해당하지 않는 동시에 약간의 자산이나 특권을 가진 가문을 가리킨다.¹⁷⁾ 良家の 성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良家子 李廣과 甘延壽가 곧바로 郎官이 되거나 羽林을 거쳐 郎官이 되는 등, 하급의 武吏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적어도 良家が 일반 백성과는 구분되는 집안이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염철 전매 당시 良家は 운송수단을 고용하여 산지로부터 鹽鐵을 나르는 의무를 지니고 있었으며¹⁸⁾ 羽林 등에 속한 良家子들은 기마용의 鞍馬를 자급하였다.¹⁹⁾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일반적인 백성이 부담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漢代의 양가는 위의 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中貲 이상 가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고위 관리의 경우 집안의 배경과 자산을 근거로 관직에 나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그 중 良家子로 불린 부유한 집안의 자손들은 종군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郎官에 제수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漢이 각 戶의 貲를 분명하게 파악하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漢代에는 개인의 능력보다 배경, 특히 자산에 의해 吏를 임명하는 현상이 존재하였다. 그렇다면 漢은 왜 吏 임명 시 자산을 중시하였을까? 집안의 배경이나 자산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한 사례만 본다면, 부유한 이들에 대한 혜택으로서 이러한 현상이 존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吏의 임명이 원활한 통치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자명한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단지

12) 『漢書』卷56 「董仲舒傳」 p.2512, “夫長吏多出於郎中·中郎, 吏二千石子弟選郎吏, 又以富貴, 未必賢也.”

13) 『史記』卷117 「司馬相如列傳」, p.2999.

14) 『史記』卷102 「張釋之列傳」, p.2751.

15) 『史記』卷109 「李將軍列傳」 p.2867.

16) 『漢書』卷70 「甘延壽傳」 p.3007.

17) 堀敏一, 「漢代の良家について」, 『中國古代の身分制—良と賤』, 東京: 汲古書院, 1987, pp.233~234.

18) 『鹽鐵論』 「禁耕第五」, “故鹽治之處, 大傲皆依山川, 近鐵炭, 其勢咸遠而作劇. 郡中卒踐更者多不勸, 責取庸代. 縣邑或以戶口賦鐵, 而賤其平准. 良家以道次發傲運鹽鐵, 煩費, 百姓病苦之.”

19) 『漢舊儀』 “屬羽林取三輔良家子自給” 【按: 宋錢文子補漢兵志引此文, 羽林下有「從官七百人」五字, 自給下有「鞍馬」二字. 蓋舊本脫此七字, 又漢書如淳注引漢儀注亦云「羽林從官七百人」.】 良家자가 자신의 鞍馬를 스스로 조달한 사실은 다음의 출토문헌에서도 확인된다. 『居延漢簡』 40.6 “坐從良家子自給車馬爲私事論, 疑它[不]然. 書到, 相二千石以下從吏毋過品, 刺史禁督且察毋狀, 各如律令”

국가가 부유한 이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 관리 임명 시 자산의 多寡를 고려했다고 간단히 결론 내리기 어렵다. 또한, 韓信의 일화나 후술할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縣의 屬吏를 임명할 때도 보유 자산은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였다. 중앙 정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커다란 권력을 가지지 못한 屬吏의 경우에도 자산을 기준으로 임명 可否를 결정하였다면, 吏 임명과 貲 사이의 관계를 단순히 ‘혜택’의 측면에서만 논하기 어려울 것이다. 위의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출토 사료를 중심으로 기층의 吏 임명과 자산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기층 吏의 자산에 대한 검증

앞서 전래 문헌을 중심으로 吏의 임명에 자산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屬吏, 특히 秩 100~200석 사이의 吏의 임명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荼陵縣으로 보낸 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耐罪에 해당하는 復陽鄉의 男子 李岑·文曹·區廬 등은 자산의 순서[訢次]에 따라 근처의 官署에서 給事하였습니다. 올해 正이 되었는데, 岑은 14년 8월 15일에, 廬는 (14년) 9월 4일에, 曹는 (14년 9월) 20일에 각각 官印을 가지고 (소속) 官署를 떠나 도망쳤으며 여러 죄를 저질렀습니다. (...)’²⁰⁾

위는 後漢 臨湘縣의 법률·행정 문서인 五一廣場出土東漢簡牘의 일부이다. 李岑·文曹·區廬는 관의 인장을 훔치는 등 耐罪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수배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자산의 순서로 인근 관서에서 給事하였다는 것은 곧 이들이 보유 자산에 의해 吏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문서가 정확히 어느 시기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오일광장간 중 ‘14년’의 기년이 대부분 和帝 永元 14년(102)이므로 위 역시 같은 시기의 문서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위의 문서는 중앙의 고위 관리뿐 아니라 기층의 屬吏 역시 자산을 근거로 임명되었고, 이 현상이 後漢 중기까지 이어진 사실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보유 자산의 多寡는 吏의 임명뿐 아니라 직무의 지속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도 영향을 주었다. 漢은 吏의 자산을 주기적으로 검증하였는데, 이 점은 漢 중기 居延 甲渠候官 소속 吏의 ‘貲直’ 조사에서 잘 드러난다. 官府는 정기적으로 吏의 자산을 조사하여 장부를 제작하였고, 빈곤한 吏의 경우에는 吏職을 수행하기 역부족이라 판단하였다. 아래는 옛 甲渠候官 유지에서 출토된 居延漢簡 중 吏의 자산 조사 관련 기록이다.

(5) 始建國天鳳一年六月宜之燧長張惲伐閱官簿彙重訢直²¹⁾

(6) • 第卅三燧長始建國元年五月伐閱、訢直、彙重官簿²²⁾

(7) 第二燧長建平五年二月彙重、訢直官簿²³⁾

20) 『五一廣場東漢簡牘(參)』簡1116 木兩行2010CWJ1③:264-270, “廷移荼陵書, 曰: 耐罪大男復陽鄉李岑·文曹·區廬等, 以訢次近署給. 今年正, 岑十四年八月十五日, 廬九月四日, 曹廿日, 各持官印去署, 亡, 數罪. 書到逐捕岑·曹等, 必得, 有無處言, 欣意純賜珍堪”

21) 『居延新簡集釋(一)』(張德芳 編, 孫占宇 著, 蘭州: 甘肅文化出版社, 2016) E.P.T 6:78

22) 『居延新簡集釋(一)』E.P.T 17:3

23) 『居延新簡集釋(二)』(張德芳 編, 楊眉 著, 蘭州: 甘肅文化出版社, 2016) E.P.T 43:73

위의 세 문서는 특정 봉수대 燧長의 ‘訾直(值)’에 관한 문서 중 일부이다. 이 중 (6)의 첫머리에는 흑점(●)이 찍혀 있으므로, 이 문서는 第卅三燧長의 伐閱·訾直·纍重을 적은 장부의 題目簡에 해당한다. 세 문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訾直’은 자산 가치, 자산의 액수를 의미한다. 伐閱은 吏의 공적 및 경력²⁴⁾을, 纍重은 家屬과 資産²⁵⁾을 지칭한다. 따라서, 위의 세 문서는 始建國 연간에 甲渠候官이 소속 燧長의 경력, 가족, 자산을 조사하여 장부로 작성한 사실을 명시한다. 吏의 공적과 경력은 승진 및 면직을 위해 필요하였음이 분명하나, 그 자산까지 정기적으로 조사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게다가 燧長은 候官의 屬吏 중 가장 질급이 낮은 小吏에 해당하였으므로 후관이 수장의 자산에 대해서까지 꼼꼼히 장부로 작성하였다면 여기에는 무언가 분명한 동기가 있었을 것이다.

위의 문서들은 제목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자산 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도 존재한다. 바로 아래의 ‘禮忠簡’이다.

小奴二人直三萬 用馬五匹直二萬 宅一區萬
候長燧得廣昌里公乘禮忠年卅 大婢一人二萬 牛車二兩直四千 田五頃五萬
輶車二乘直萬 服牛二六千 ●凡訾直十五萬²⁶⁾

이른바 ‘禮忠簡’으로 불리는 居延漢簡 37.35간에 등장하는 禮忠은 燧得縣 廣昌리에 거주하던 候長이었으며, 해당 문서의 내용은 그의 자산(奴婢·牛·馬·輶車·田·宅)의 개별 가치와 그 총합이다. 永田英正은 이 문서가 宣帝 시기에 居延에 거주 중인 吏卒 인사 기록의 일부일 것으로 보았다.²⁷⁾ 여기에 보이는 候長 禮忠의 총자산은 15만 전으로 漢代 中家の 자산을 상회하였으나 甲渠候官의 속리 중에는 빈곤함으로 고통받는 이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漢代의 官府는 어떤 吏의 자산이 적어 빈곤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간주하였다. 가난한 리는 貧吏, 寒吏로 명명되었는데²⁸⁾ 寒吏가 이로 인해 스스로 罷休를 신청하기도 하였으나 官府가 빈곤을 이유로 그를 파직하는 일도 존재하였다.

(8) 貧急軟溺, 不任職, 請斥免. 可補者名, 如牒書. 【唯】²⁹⁾

(9) 阜單衣, 毋鞍馬, 不文. 史詰責駿, 對曰: 前爲縣校弟子, 未嘗爲吏. 貧困毋以具阜單衣·冠·鞍馬. 謹案: 尉史, 給官曹, 治簿書·府官繇使·乘邊·候望, 爲百姓潘幣, 縣不肯除.³⁰⁾

문서의 끝부분이 잘렸지만 (8)의 내용은 매우 명확하다. 어떤 吏가 貧急, 軟溺하여 직을 담당할 수 없으니 斥免을 원하며 그를 대신하여 보충할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은 첨부한 첩서와 같다는 것이다. ‘軟溺’은 吏 면직의 사유로 종종 등장하지만³¹⁾, 여기에는 ‘貧急’이 추가되어

24) 『漢書』 권66 「車千秋傳」 p.2884, “千秋無他材能術學, 又無伐閱功勞.” 【師古曰: 「伐, 積功也. 閱, 經歷也.」】

25) 『漢書』 卷94上 「匈奴傳」 pp.3777~3778, “匈奴聞, 悉遠其累重於余吾水北, 而單于以十萬待水南, 與貳師接戰.” 【師古曰: 「累重謂妻子資産也. 累音力瑞反. 重音直用反.」】

26) 『居延漢簡(壹)』 37.35

27) 永田英正, 「禮忠簡と徐宗簡について」, 『居延漢簡の研究』, 京都: 同朋舍, 1989, pp.519~544.

28) 『居延新簡集釋(七)』 E.P.F 22:615, “□□貧吏常令史張嘉將詣倉□”; E.P.F 22:651, “●甲渠候官建武泰年泰月, 貧燧長及一家二人爲寒吏”

29) 『居延漢簡(參)』 231.29 (이하, 인용한 출토 사료에 표시된 끊어 읽기, 표점은 모두 필자가 표시한 것).

30) 『居延新簡集釋(五)』 (張德芳 編, 肖從禮 著, 蘭州: 甘肅文化出版社) E.P.T.59:58

31) 『居延新簡集釋(六)』 (張德芳 編, 張德芳·韓華 著, 蘭州: 甘肅文化出版社) E.P.T 68:12, “軟弱不任吏職以令斥免”; 『肩水金關漢簡(參)』 73EJT30:139, “軟弱毋辨護不勝任免缺”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이 면직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9)는 자산을 이유로 관직을 除授하지 않은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서의 주인공인 駿은 阜單衣冠, 鞞馬(鞍馬)을 갖추지 못하여[不文] 힐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駿은 “이전에 縣校의 弟子이기는 했으나 일찍이 吏가 된 적이 없는데, 빈곤하여 阜單衣冠·鞞馬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라 대답하였다. 阜單衣는 漢代 하급 관리가 주로 입던 흑색의 홑겹 상의³²⁾를, 鞞馬는 안장을 얹어 騎乘하는 말³³⁾을 지칭한다. 그러자 官府는 “尉史는 官曹에서 給事하니, 簿書를 治하고 府官에서 繇使하며 乘邊 및 候望하여 백성을 위해 방어해야 한다. 縣은 (駿을) 除하는 것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며 吏 임명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였다. 위의 내용으로 보건대 駿은 尉史에 제수될 후보자였으나 가난 때문에 ‘부적격자’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漢이 吏의 자산을 정기적으로 조사한 것은 吏職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였다고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빈곤한 吏는 응당 갖추어야 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인식이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吏가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적 기반을 갖추어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Ⅲ. 吏 자산 검증의 목적

관부의 吏 자산 검증은 몇 가지 원인을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공적 업무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 지출의 절약이라는 측면이다. 먼저 이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자.

漢代 官府는 종종 吏의 職務 수행에 드는 각종 물품이나 비용을 吏에게 지급하는 대신, 이를 ‘自給’하게끔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처음부터 일정한 자산을 보유한 이를 吏로 임명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각종 공적 업무에 필요한 물품, 비용을 官이 지급하는 것이 극히 당연할 테지만, 漢 중기의 행정문서인 居延漢簡이 전하는 사정은 이와 다르다.

먼저 (9)의 내용을 다시 인용하면, 尉史 駿은 阜單衣冠·鞞馬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힐책당하고 尉史가 되지 못하였다. 문서에서 해당 縣은 ‘尉史의 업무는 장부를 관리하고[治簿書] 府官에서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府官繇使], 변경을 방어[乘邊] 및 적을 감시하여[候望] 백성을 막아주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駿이 갖추지 못한 물품들이 위사의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소였음을 의미한다. 물론 尉史는 郡縣의 군사 기구인 尉의 屬吏였고 이 문서가 작성된 居延 甲渠候官은 흉노와 대치한 최전선 지대였으므로 馬, 무기는 직무 수행을 위한 필수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상의 물품을 吏 개인에게 갖추도록 ‘요구’하고 빈곤하여 물품 자급이 어려운 경우 ‘자질 부족’으로 吏가 될 수 없었다는 점에 있다. 만일 관부가 의관이나 물품을 지급하였다면 (9)의 문서는 작성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관부가 吏 혹은 吏 후보군에 馬, 심지어는 무기를 스스로 갖추도록 한 정황은 다른 기록에서도 발견된다.

32) 『居延新簡集釋(五)』, p.257.

33) 『史記』卷66「公孫賀傳」 pp.2877~2878, “初賀引拜爲丞相, 不受印綬, 頓首涕泣, 曰:「臣本邊鄙, 以鞍馬騎射爲官, 材誠不任宰相。」”

(10) 以 迹候 爲職□自給私馬³⁴⁾

(11) □□□年廿八 富及有鞏馬·弓·櫝(櫝), 願復爲候史□³⁵⁾

(10)은 비록 잔결된 부분이 많으나 내용상 吏의 진술 중 일부로 보인다. 문서의 ‘迹候’는 이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居延의 吏·卒이 天田과 변새의 흔적을 매일 순찰하는 행위인 ‘日迹’과 침입자를 정찰·감시하는 ‘斥候’를 이르는 표현이다.³⁶⁾ 여기에서 진술자는 迹候함에 ‘職을 위하여 개인 소유의 馬를 自給하였다’고 하였다. 1년 만기로 근무하는 타지 출신의 戍卒이 馬를 보유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으므로, (10)을 통해 갑거후관의 屬吏가 자신의 직무 수행을 위해 개인적으로 말을 조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은 기층의 吏가 직무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준비한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문서의 주인공은 28세로 추정되며 현재 鞏馬·弓·櫝을 가지고 있으니 ‘다시’ 候史가 되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이로부터 그가 본래 候史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그 직에서 물러났고 현재 다시 候史가 되기를 청하며 그 근거로 鞏馬·弓·櫝의 보유 사실을 보고한 것을 알 수 있다.³⁷⁾ 맥락 상 그는 이전에는 이러한 물품을 갖추지 못하여, 즉 자산의 부족으로 인해 면직된 것으로 보인다. (11)의 주인공은 候史가 되고자 한다는 점에서 (9)의 駿과는 다르지만 鞏馬를 자급해야 하였다는 점에서 양자는 공통성을 지닌다. (10)의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居延 일대의 기층 관리들은 迹候를 위해 鞏馬가 필요하였던 듯한데, 迹候는 명백히 공적 직무의 하나였음에도 甲渠候官은 屬下의 吏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자급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迹候를 위한 鞏馬의 자급은 候史·尉史뿐 아니라 候長에도 적용되었다. 候長은 6~7곳의 봉수대를 주관하는 部의 책임자로 候史의 상급자에 해당하였으나 역시 鞏馬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되었다.³⁸⁾ 게다가 당시 甲渠候官은 곡식을 내어 候長, 候史의 私馬를 먹였는데³⁹⁾, 만일 候長 개인 소유의 말을 관의 직무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굳이 관청이 이러한 지출을 감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官이 관청 소속의 말에 식량을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실제로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도 존재한다.⁴⁰⁾ 그러나 吏가 개인 용도로 소유, 이용한 말에 식량을 주고자 한다면 먼저 관청에서 식량을 빌린 후 추후 갚아야 하였다.⁴¹⁾ 따라서 관청이 吏의 ‘私馬’에 식량을 주었다면 이 말은 실제로는 해당 吏의 직무에 동원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34) 『居延漢簡(參)』 214.115

35) 『居延漢簡(參)』 214.57

36)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簡牘研究班 編, 『漢簡語彙 中國古代木簡辭典』, 東京: 岩波書店, 2015, p.319.

37) 邢義田, 『治國安邦』, 北京: 中華書局, 2011, p.552.

38) 7개의 亭과 燧를 주관한 第17部의 候長이 兵弩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鞏馬를 가지지 않았다고 비판한 문서는 候長 역시 鞏馬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 사실을 전해준다. 『居延新簡集釋(七)』(張德芳 編, 張德芳 著, 蘭州: 甘肅文化出版社) E.P.F 22:399, “署第十七部候長, 主亭燧七所, 兵弩扁戾不繫持, 毋鞏馬.”

39) 『居延漢簡(壹)』 46.7, “出廿一石六斗 食候長候史私馬六匹十一月食”; 『居延新簡集釋(一)』 E.P.T4:78, “出粟二百七十一石二斗 食候長候史私馬廿匹 積千七百六十匹”; 『居延新簡集釋(五)』 E.P.T59:674, “斗給候長候史私馬”

40) 『敦煌懸泉置漢簡釋粹』(胡平生·張德芳 選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II 0214②:556簡, “制曰: 下大司徒·大司空, 臣勤案: 令曰: 未央廐·騎馬·大廐馬日食粟斗一升·叔(菽)一升. 置傳馬粟斗一升·叔一升. 其當空道日益粟, 粟斗一升. 長安·新豐·鄭·華陽·渭成(城)·扶風廐傳馬加食, 匹日粟斗一升. 車騎馬, 匹日用粟·叔各一升. 建始元年, 丞相衡·御史大夫譚.”

41) 『嶽麓秦簡(肆)』 簡111~113, “•田律曰: 吏歸休, 有縣官吏乘乘馬及縣官乘馬過縣, 欲資芻藁·禾·粟·米及買菽者, 縣以朔日平賈(價)受錢, 先爲錢及券, 鈔以令·丞印封, 令·令史·賦主各挾一辨, 月盡發鈔令·丞前, 以中辨券案(讎)錢, 錢輒輸少內, 皆相與磨(磨)除封印, 中辨臧(藏)縣廷.”

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직무를 위해 말, 무기, 의관을 吏가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현존하는 秦·漢律 중에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呂后 2년에 제정된 置吏律은 “吏가 다른 곳으로 遷徙하거나 새로 屬尉·佐 이상이 되었으나 타고 갈 말이 없다면 (관청의) 駕傳을 사용할 수 있다”⁴²⁾고 하여, 당시 吏 중 騎乘 용도의 말을 보유하지 못한 자가 적지 않았고 말의 소유 여부도 吏 임명과 별 관계가 없었음을 암시한다. 漢 중기 말 한 필의 가격은 4,000~5,000전에 육박하였고⁴³⁾ 전술한 것처럼 당시 中家의 자산이 대략 십만 전에 해당하였으므로 말 한 필은 中戶 자산의 약 5%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실제 모든 吏가 개인적으로 말을 소유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변경이라는 특수성 및 迹候 업무로 인해 일부 吏에게만 말의 지급을 강제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9), (11)에서 볼 수 있듯이 吏 개인이 갖추도록 요구된 물품에는 衣冠도 포함되어 있었고 지급이 원칙이었을 弓조차 다시 候吏가 되기 위한 ‘근거’의 하나로 언급되었다. 따라서 吏의 말 지급은 가장 극명히 드러난 예일 뿐, 실제로는 각종 직무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吏 개인이 부담하였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즉, 당시 官府는 吏職 수행에 드는 비용을 吏 개인에 ‘전가’하였다고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吏 임명 당시부터 吏의 자산을 검토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실제로 漢이 吏의 직무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桓譚은 『新論』에서 “漢이 정해진 이후 百姓에게 賦斂함이 한 해에 약 40억 전이었다. 그 중 절반을 吏의 俸祿으로 사용하고 남은 20억 전은 都內에 보관하여 禁錢으로 삼았다.”⁴⁴⁾고 하여 吏俸이 재정 지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강조하였을 뿐, 吏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거연한간의 비용 지출 기록 역시 갑거후관에 속한 吏의 俸祿과 月食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吏가 업무에서 사용하였을 각종 물품을 구입해 주었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관청 물품의 구입은 문서 행정에 필요한 札·檄⁴⁵⁾, 繩⁴⁶⁾, 帛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었고⁴⁷⁾, 기타 약간의 무기, 곡식, 고기와 그 부속류 등을 구입하기도 하였다.⁴⁸⁾ 특히 의아한 점은 吏에 관복을 지급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사실인데, 이는 內郡에서 징발된 수졸들이 ‘縣衣’⁴⁹⁾를 휴대한 것과 대비를 이룬다.

이 점은 거연만의 특징은 아니었던 듯하다. 가령 湖北省 江陵 鳳凰山 10호 漢墓에서 출토된 漢 景帝 시기 里의 세금 징수 기록에는 그 用處가 부기되어 있어, 한초 지방 재정 운용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징수한 세금은 吏俸, 傳送, 轉費, 繕兵의 항목으로 지출되었다.⁵⁰⁾ 吏俸은 관리의 봉록, 傳送과 轉費는 타 지역으로의 물자 운송 비용을 지칭하며 繕兵은

42) 「二年律令」 簡213, “郡守二千石官、縣道官言邊變事急者, 及吏遷徙、新爲官屬尉、佐以上毋乘馬者, 皆得爲駕傳。”

43) 주 26) 참고.

44) 『太平御覽』 卷627 “桓譚新論曰: 漢定以來, 百姓賦斂, 一歲爲四十餘萬萬. 吏俸用其半, 餘二十萬萬, 藏于都內爲禁錢.”

45) 『額濟納旗出土漢簡』 99ES17SH1:2,

三月 錢四百

“出 入兩行二百 居攝二年正月壬戌省卒王書付門卒蔡愴

財用 檄廿三尺札百”

46) 『居延漢簡(肆)』 456.5A, “扁常謹案部見吏二人一人王美休謹輸正月書繩二十丈封傳詔”

47) 郭浩, 『漢代地方財政研究』,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2011, p.197.

48) 李天虹, 『居延漢簡簿籍分類研究』, 北京: 科學出版社, 2003, p.46.

49) 『居延新簡集釋(五)』 E.P.T.53:79, “□黨郡元康三年戌卒襄□賈氏里張□軍縣官衣裏”; 『居延漢簡(肆)』 498.14, “田卒淮陽郡囂堂邑上造趙德 練復□□一 □袴二兩 ●右縣官所給”

병기의 수선 비용으로 추측된다. 즉 여기에서도 吏 업무를 위한 별도의 ‘공무 처리 비용’은 책정, 지출되지 않은 것이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漢代 기층의 屬吏는 공적 업무에 수반되는 여러 물품을 지급하곤 하였고, 자산의 부족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官府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吏에 임명되지 못하였다. 반면 관부의 지출 기록 중 공무 처리 비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위 두 사실은 속리 임명 시 자산 검증의 주된 목적이 縣級 재정 비용의 절약(혹은 전가)과 밀접히 관계되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물론 吏는 봉록과 월식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吏의 업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업무로 인한 추가 지출을 당연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吏가 말, 의관, 기타 물품을 지급하는 일은 일종의 ‘관례’로 유지되었는데, 해당 ‘관례’가 존재하는 한 관부 역시 충분한 자산을 소유한 사람을 吏로 선발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한편, 吏 임명과 자산 사이의 관계는 다른 맥락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누군가가 적어도 中家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였다면 이는 그가 게으르지 않은 ‘良民’이었음을 방증하므로 吏에 임명함에 손색이 없다고 간주되었을 것이다. 빈곤한 吏가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컨대 齊民의 근면과 절검을 장려한 秦이, 본인의 책임으로 빈한한 자를 제외하기 위해 吏 임명 시 재산상의 조건을 설정하였을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지적⁵¹⁾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백성에 대한 吏의 수탈이나 각종 비위 행위의 방지라는 현실적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神爵 3년 8월, 宣帝가 “지금 小吏의 봉록이 매우 적으니 백성을 侵漁하지 않기를 바라는 어렵다”며 100석 이하 吏의 俸錢 인상을 지시한 것⁵²⁾에서 볼 수 있듯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吏가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올리는 것은 종종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백성에게 뇌물을 받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⁵³⁾, 治獄 시 피의자에게 재물을 받거나 고의로 싸게 혹은 비싸게 물품을 교역한 경우⁵⁴⁾ 등은 그 전형적인 사례였을 것이다. 물론 일정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수탈과 비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이는 적어도 최소한의 심리적 방어선으로 기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백성의 불법 행위, 과실에 연좌되는 경우 罰金을 내거나 債務를 상환하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존재하였다. 秦·漢 律令은 관할 구역 내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자에 貲罰을 부과하였다. 일차적 책임은 대개 里典·里老·伍人에 물었으나, 鄉의 吏主者·耆夫까지 貲罰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백성에게 관부 소유의 기물을 대여하였으나 死, 亡 등의 사유로 대여한 기물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관부의 耆夫와 吏主者가 대신 상환하도록 규정한 秦 金布律⁵⁵⁾은, 吏의 잘못과 무관하게 추가적 지출이 발생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吏에 임명된 이후부터 예기치 못한 貲罰과 債務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위험이 존재하였던 만큼, 충분한 자산을 지니지 못한 이를 吏로 임명하는 것은 관부의 입장에서조차 주저되었을 것이다.

50) 裘錫圭, 「湖北江陵鳳凰山10號漢墓出土簡牘考釋」, 『文物』1974(7), 1974.

51) 이성규, 「秦의 地方行政組織과 그 性格」, 1989, p.73.

52) 『漢書』卷8 「宣帝紀」 p.263, “秋八月, 詔曰: 「吏不廉平則治道衰. 今小吏皆勤事, 而奉祿薄, 欲其母侵漁百姓, 難矣. 其益吏百石以下奉十五。」”

53) 『張家山漢簡』 「二年律令」 簡60, “受賕以枉法, 及行賕者, 皆坐其臧爲盜. 罪重于盜者, 以重者論之.”

54) 『嶽麓秦簡(伍)』 簡229~230, “自今以來, 治獄以所治之故, 受人財及有賣買焉而故少及多其賈(價), 雖毋枉毆(也), 以所受財及其賈賤賈(價), 與【盜】同【】灋.”

55)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簡77~79, “百姓段(假)公器及有責(債)未賞(償), 其日【賤】以收責之, 而弗收責, 其人死亡; 及隸臣妾有亡公器、畜生者, 以其日月減其衣食, 毋過三分取一, 其所亡衆, 計之, 終歲衣食不【賤】以稍賞(償), 令居之, 其弗令居之, 其人【死】亡, 令其官耆夫及吏主者代賞(償)之. 金布”

이상 漢代 官府가 吏 임명 시 보유 자산을 검증한 목적을 추적해 보았다. 기층의 吏, 특히 屬吏를 임명할 때도 자산을 중시한 것은, 부유한 이들에 대한 혜택의 차원이 아니라 吏職의 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용과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이를 선별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조차 吏가 자급해야 했고 그것이 가능한 이들을 吏로 선별한 것은, 재정 지출을 절감하고자 하는 관부의 '선택'으로도 여겨진다.

IV. 吏 임명에 수반된 경제적 부담 및 혜택

屬吏 임명에도 자산이 중요한 자격으로 작용하였고, 그 주요 원인이 吏職 수행에 드는 비용 지출이었다면, 당시 사람들은 吏 임명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 吏 임명에 따라오는 혜택이 부담보다 더 컸다면 당연히 吏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존재하여 吏의 수급이 원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以吏爲師'를 표방한 秦代에 비하면 漢代 기층 吏의 대우는 상당히 저하되었으나⁵⁶⁾, 縣 屬吏로 임명되는 일을 기피한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은 당시 吏 임명의 부담을 상쇄할 정도의 실질적 혜택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漢代의 吏와 일반 백성을 비교할 때, 전자가 가지는 '합법적 혜택'은 비교적 한정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吏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혜택은 병역, 요역의 면제였다. 현재까지 발견된 律令 중 吏가 戍邊과 徭에 동원되었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⁵⁷⁾ 吏의 戍邊을 전하는 기록은 모두 吏의 과실로 인한 처벌과 관계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수변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또한, 君子가 부재중인 吏를 대신하여 40일 이상 임시로 업무를 본 경우 1개월의 戍役을 면제해 준다는 秦律의 조항⁵⁸⁾은 吏가 병역의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주지하듯이 漢의 성인 남성은 원칙상 누구라도 병역, 요역의 의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이러한 의무에서 벗어나 있던 것은 상당한 혜택이었을 것이다.

기타 漢代 吏의 혜택으로 봉록과 월식의 지급, 지역 내의 위상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봉록은 업무 수행의 대가인만큼 이를 혜택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드는데다, 吏가 관부의 업무를 보는 동안 집안의 農事를 돌보는 일은 어려웠으므로 자식이나 노비 등 추가적인 노동력이 부재하였다면⁵⁹⁾ 오히려 집안의 경제 사정이 곤란해졌을 가능성도 컸을 것이다. 게다가 앞서 宣帝 神爵 3년의 조서에서 살펴본듯이 漢代 吏의 俸錢은 결코 충분하지 않았던 듯하며 속리가 받은 月食의 양은 1개월 3.33石⁶⁰⁾으로 쭉이 받은 月食의 양과 동일하였다.

반면 吏 임명에 수반된 부담 역시 존재하였다. 첫째,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吏는 정작 가

56) 이성규, 「秦의 地方行政組織과 그 性格」, 1989, p.68.

57) 대신 吏는 출장이나 기타 업무에 동원되는 일이 잦았는데, 秦漢代에는 이를 '繇(徭)使'로 명명함으로써 일반 백성의 徭役과는 구분하였다.

58) 『嶽麓秦簡(肆)』簡184, “• 戍律曰: 戍者月更. 君子守官四旬以上爲除戍一更.”

59) 예컨대 漢 高祖 劉邦이 자신의 발에서 그 가족을 貴人이라 평한 老父를 만난 일화를 살펴볼 수 있다. 당시 呂后와 두 자녀는 모두 발에서 김매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점은 吏인 가장이 부재한 경우 농사를 짓기 위해 적어도 3인 이상의 노동력이 필요하였음을 역으로 말해준다. (『史記』卷8「高祖本紀」p.346, “高祖爲亭長時, 常告歸之田. 呂后與兩子居田中耨(…) 老父已去, 高祖適從旁舍來, 呂后具言客有過, 相我子母皆大貴.”)

60) 吏에 月食 3石 3斗 3升을 지급한 사실은 居延漢簡, 居延新簡을 통해 확인된다. 월식을 지급받은 대상으로 확인되는 吏는 주로 居延都尉府 휘하의 屬吏들(令史, 尉史, 燧長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李天虹, 『居延漢簡簿籍分類研究』, 2003, pp.51~60.

내의 생산 활동을 돌보기 어려웠다. 漢代의 吏는 5일에 한 번 輪番으로 휴가를 얻을 수 있었으나⁶¹⁾, 근무지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생산 활동을 돌보는 데 불리하였을 것이다. 가령 甲渠候官 휘하의 吏들은 주로 額濟納 江岸의 烽燧臺나 候官에 근무하고 있던 반면 거주지는 居延縣, 鱣得縣인 경우가 많아 휴가가 아닌 이상 거주지에 들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둘째, 吏에게 특정 물품을 공출하도록 하는, 이른바 ‘公的 착취’가 존재하였다.

始建國 3년 丙辰日이 삭일인 12월의 丁丑日, 不侵候長인 茂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官에서 보낸 檄에서 이르기를, ‘部吏가 9인이니, 1인당 무게 6斤의 닭을 府에 바쳐라. 候史 혹은 祭酒가 (닭을) 가지고 이번 달 20일까지 官으로 이르라.’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살펴보았더니, 部吏는 貧急한 자가 많
아 ……(할 수?) 없습니다’⁶²⁾

始建國 3년 12월, 都尉府는 같은 달 20일까지 部吏 9인이 각각 6斤 무게의 닭을 바쳐 관부까지 이송해올 것을 요구하였다. 部吏에 닭을 공출하게 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관청이 주관한 祭祀와 관련된 듯하다. 해당 명령이 官의 檄으로 전달된 점도 이것이 관부의 공적 지시였음을 보여주는데, 갑작스러운 공출 요구에 不侵部의 候長 茂는 “貧急한 部吏가 많다”고 답하였는데 맥락 상 뒷부분은 닭의 공출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시건국 3년 12월의 명령은 吏에게 내려진 각종 공출 명령의 한 단면이었을 것이다.

셋째, 吏는 ‘私的 착취’를 당하기도 하였다. 사적 착취는 주로 상급자가 사적으로 使役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때로는 공적인 吏徭과 결합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建武三年甲渠侯粟君所債寇恩事」에 등장하는 候官 소속의 令史 華商과 尉史 周는 상급자이자 候인 粟君이 鱣得에 가서 물고기를 팔아 오는 공적 吏徭을 부과하려 하자 私財를 내면서까지 이를 완곡히 거절하였다.⁶³⁾ 이로 인해 속군은 이들 대신 僦人 寇恩을 고용하여 물고기를 팔아 오도록 하였는데, 이때 寇恩은 속군의 처와 동행하며 그녀를 위해 봉사하고 수레를 꾸미는 것까지 강요당하였다. 이 점은 공적인 吏徭을 담당할 때도 상관으로부터의 사적 부담이 강요될 수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데⁶⁴⁾ 華商과 周가 사재를 내면서까지 吏徭을 거절한 이유는 사적 심부름 내지는 착취가 얼마든지 부가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상급 吏가 하급 吏를 사적으로 사역하는 일은 漢代에 상당히 만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⁶⁵⁾

넷째, 앞 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吏는 백성의 잘못에 연좌되어 벌금과 채무를 부담하기도 하였으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가중 처벌을 받았다.⁶⁶⁾ 이는 吏의 업무 및 위상과 밀접한

61) 李成珪, 「秦末과 前漢末 郡屬吏의 休息과 節日—〈秦始皇 34년 曆譜〉와 〈元延 2년 日記〉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東洋史學研究室 編, 『古代中國의 理解』 5, 서울: 지식산업사, 2001, pp.194~195.

62) 『居延新簡集釋(五)』 E.P.T 59:56, “始建國三年十二月丙辰朔丁丑, 不侵候長茂敢言之. 官檄曰: 部吏九人, 人一鷄重六斤輸府, 遣候史若祭酒持詣官, 會月二十日. ●謹案: 部吏多貧急毋□”

63) 『居延新簡集釋(七)』 E.P.F 22:3, E.P.F 22:4, E.P.F 22:5, E.P.F 22:6, “爰書驗問, 恩辭曰: 潁川昆陽市南里, 年六十六歲, 姓寇氏. 去年十二月中甲渠令史華商·尉史周育當爲候粟君載魚之鱣得賣. 商育不能行, 商即出牛一頭黃特齒八歲, 平賈直六十石, 與爰穀十五石, 爲七十五石. 育出牛一頭黑特齒五歲, 平賈直六十石, 與穀卅石, 凡爲穀百石. 皆予粟君以當載魚就直.”

64) 金秉駿, 「漢代 太守府 屬吏組織의 變化와 그 性格: 江蘇省 連雲港 出土 尹灣漢簡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東洋史學研究室 編, 『古代中國의 理解』 3, 지식산업사, 1997, p.337.

65) 예컨대 蓋寬饒의 일화에서도 이러한 사적 繇使가 보인다. 『漢書』卷77 「蓋寬饒傳」 pp.3243-3244, “先是時, 衛司馬在部, 見衛尉拜謁, 常爲衛官繇使市買. 寬饒視事, 案舊令, 遂揖官屬以下行衛者. 衛尉私使寬饒出, 寬饒以令詣官府門上謁辭. 尚書責問衛尉, 由是衛官不復私使候·司馬. 候·司馬不拜, 出先置衛, 輒上奏辭, 自此正焉.”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단점으로 보기 어렵지만, 吏 임명 이후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였다. 예컨대 耆夫가 貧窶하여 貲罰 및 관부의 債務를 갚지 못하는 경우 그의 秩과 月食을 삭감함으로써 조금씩 상환하도록 하고 관직에서 면직되면 곧바로 관부에서 居作하여 상환하도록 하라는 秦律의 조항을 보자.⁶⁷⁾ 일반 백성이 빈곤하여 貲罰, 債務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관부에서 노역하여 자벌, 채무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吏는 그 위상으로 인해 백성과 똑같이 거작할 수 없었고, 현직에 있는 동안은 秩, 月食을 이용해 상환해야 하였다. 그런데 백성을 단속하는 기층의 屬吏는 일반 백성의 불법 행위에 연좌될 가능성이 훨씬 컸음을 감안한다면, 이들 吏에게 貲罰, 債務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이상 살펴본 吏 임명의 단점은 언뜻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吏에게는 현실적인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居延漢簡 등에 보이는 ‘貧寒吏’는 어쩌면 吏職을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경제적 출혈로 인해 나타난 것인지도 모른다. 吏와는 조금 다른 경우이나, 後漢 里父老들이 職을 수행하는 동안 발생할 자산 감소를 우려하여 僱을 조직하고 경비를 각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⁶⁸⁾ 職 수행에 수반된 이러한 경제적 문제점은 吏에게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술한 것처럼 吏 임명 시 자산이 중요 요건으로 작용하였고, 吏 임명의 혜택에 비해 부담이 컸다면 吏에 임명되고자 하는 이들은 매우 적었을 것이며 吏 수급에도 차질을 빚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漢代에 吏 임명을 기피하는 현상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 이 점은 吏에 임명되어 얻을 수 있는 실제 혜택이 부담보다 컸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吏 임명의 혜택은 어디까지나 합법적 혜택이었다. 그러나 吏가 누릴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漢代 吏들은 자신의 업무 이외에 여러 경제적 활동에 관여하였다. 이는 대체로 적법한 범위 내에 있었으나 위력에 의한 착취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吏가 누리는 공식적, 합법적 혜택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앞서 지적한 상급자의 사적 吏徭, 使役이 바로 여기에 속하였는데, 실제로는 기층의 屬吏조차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戍卒, 刑徒, 관할 구역 내 백성에게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

먼저, 居延의 吏-戍卒 혹은 民-戍卒 사이에서 성행한 貰買를 살펴보자. 貰買(賣)는 물품의 외상 거래를 의미하는데, 주로 居延의 봉수대로 파견된 戍卒이 소지한 의류나 布帛을 거연의 吏, 民에 판매해 대금 일부만을 받고, 이후 券書를 근거로 나머지 대금을 수령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⁶⁹⁾ 이러한 판매 방식은 당장 필요한 물자를 마련하고자 하는 외지 출신 수졸과 의류, 포백을 얻으려는 지역 吏, 民의 수요가 맞아떨어져 성립하였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외상 거래라는 특성 상 물품을 받고 남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특히 戍卒과 함께 근무하는 燧, 部的 屬吏가 세매의 명목으로 사실상 물품을 착취하는 일은 종종 발생하였다. 居延漢簡·居延新簡·敦煌漢簡의 35개 貰買 사례 중에는 民이 세매한 사례가 10개, 吏 세매한 사례가 25개가 발견되는데⁷⁰⁾ 해당 기록 중 吏와 戍卒 사이 貰買를 둘러싼

66) 『漢書』 卷41 「夏侯嬰傳」 p.2076. “高祖戲而傷嬰，人有告高祖。高祖時爲亭長，重坐傷人，告故不傷嬰，嬰證之。”【如淳曰：「爲吏傷人，其罪重。」】

67)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簡82~83, “官嗇夫免，復爲嗇夫，而坐其故官以貲賞(償)及有它責(債)，貧窶毋(無)以賞(償)者，稍減其秩、月食以賞(償)之，弗得居；其免毆(也)，令以律居之。”

68) 金秉駿, 「後漢時代 里父老와 國家權力」, 『東洋史學研究』 35, 1991, p.25.

69) 李周炫, 「漢代 河西四郡의 戍卒과 私物 賣買」, 『東洋史學研究』 128, 2014, p.129.

70) 전계논문, pp.151~152.

爰書가 적지 않게 포함된 사실은 吏가 물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일이 만연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陽朔 원년, 관부가 卒에게 진 吏들의 채무 내역을 문서로 이첩한 후, 俸錢이 지급되면 곧바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촉구한 사실⁷¹⁾은 ‘대여’와 ‘외상 구입’을 빙자한 吏의 경제적 착취를 잘 보여준다.

다음으로, 마치 상급 吏와 하급 吏의 관계처럼 吏가 관할 기관의 卒이나 刑徒에 사적 使役을 강요하는 일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漢 이외의 시기에도 종종 나타났는데, 가령 佐·史 이상의 관리가 자기에게 배속된 卒에 상행위를 시켜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한 秦의 규정⁷²⁾이 보인다. 또한, 아래에 인용한 元壽 2년(BCE 1)의 문서는 거연 일대에 존재한 吏의 卒 착취 양상을 생생히 보여준다.

元壽 2년 庚寅日이 삭일인 12월 戊申日, 張掖郡 居延都尉의 博과 庫 守丞이자 丞事を 兼行하는 賢이 甲渠鄴候에게 이름: ‘候長 楊褒는 卒인 并을 사적으로 부리기를 총 하루 이상 하였으며 部吏인 故에게 羊을 45전 비싸게 판매하였고 하루 이상 日迹하지 않았다. (또한) 燧長 張譚은 능력이 미치지 못하니[毋狀] 면직할 것을 청한다.’ 문서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褒는 卒 并을 사적으로 부리기를 총 하루 이상 하였으며, 燧長인 張은……⁷³⁾

문서에 따르면 甲渠候官 소속의 候長 楊褒는 여러 잘못을 저질러 면직되었다. 그의 잘못은 ①사적으로 卒을 積 1일 이상 사역한 것 ②部吏에게 羊을 판매함에 고의로 35錢 더 비싸게 판매한 것 ③하루 이상 日迹하지 않은 것이었다. 아쉽게도 楊褒가 卒에 어떠한 일을 시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粟君·華商·周 사이의 관계처럼 楊褒가 卒에 자기 집안의 일을 돌보게 하거나 특정 물품을 팔아 오는 등의 심부름을 강요하였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賁賈를 빙자한 착취와 卒의 개인적 사역이 적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이익을 추구한 행위인 반면, 적법의 경계를 넘은 吏들도 존재하였다. 가장 일상적이고 대표적인 이익 추구 행위로 受賂를 꼽을 수 있지만, 일부 吏는 더 나아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가령 建武 6년에 甲渠候官에 전달된 문서를 통해 당시 타인을 고용하거나 위력을 이용하여 盜掘·私鑄⁷⁴⁾에 종사한 ‘姦黠한 吏, 民’이 존재한 사실을 볼 수 있다.

吏의 이러한 행위는 원칙상 금지되었으나, 실제로는 적지 않은 吏가 비법과 적법의 경계를 타며 혜택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吏에 임명되기 위해서 일정한 자산을 갖추어야 했고, 임명 후에는 각종 부담과 경제적 비용 지출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吏가 되기를 희망하였던 이유는 바로 漢代의 吏가 ‘실질적’ 혜택을 통해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得’이 ‘失’보다 컸기 때문이 아닐까.

71) 『地灣漢簡』 86EDT65:1A, “陽朔元年六月丙子朔戊子, 右後候長嘉敢言之. 官檄曰: 具移吏負卒賁多少牒別, 言會月廿日謹移部吏負卒賁, 以六月奉錢償. 如牒. 敢言之”

72) 『睡虎地秦簡』 「法律雜抄」 簡11, “以上負從馬、守書私卒, 令市取錢焉, 皆遷. 不當稟軍中而稟者, 皆貲二甲, 法(廢)”

73) 『居延新簡集釋(五)』 E.P.T 59:548A, “元壽二年十二月庚寅朔戊申, 張掖居延都尉博、庫守丞賢兼行丞事謂甲渠鄴候言: 候長楊褒私使卒并積一日, 賣羊部吏故賁卅五, 不日迹一日以上. 燧長張譚毋狀. 請庠免. 有書, 案: 褒私使卒并積一日, 燧長張”

74) 『居延新簡集釋(七)』 E.P.F 22:38, “建武六年七月戊戌朔乙卯甲渠守候敢言之. 府移大將軍莫府書曰: 姦黠吏民作使賓客私鑄作錢, 薄小不如法度, 及盜發冢公賣衣物于都市, 雖知莫譴苛, 百姓患苦之”(A) “掾譚令史嘉”(B)

나가며

漢代의 吏 임명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 중 하나는 바로 일정 이상의 자산[貲]을 갖추는 것이었다. 漢은 관리 임명 시 자산을 중요 기준으로 삼았고 누군가를 吏에 제수한 이후에도 그의 자산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였다. 일정 이상의 자산 보유를 중시한 이유는 吏職 수행을 위해 드는 각종 비용 및 貲罰, 債務 등 예기치 못한 지출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吏職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漢代人들은 대체로 吏에 임명되기를 희망하였으며 吏 임명을 회피하지 않았다. 그런데 吏가 되어 얻을 수 있는 공식적 혜택은 병역, 요역의 면제에 한정된 한편, 吏에 임명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러나 하급 인력의 착취, 사적 사역, 受賂 등 그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吏의 임명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자산을 가진 이들도 吏가 되고자 하거나 자산을 갖춘 후 吏가 될 것을 청하는 현상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단, 後漢 이후 이러한 상황은 급변하여 집안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縣吏가 되거나 어쩔 수 없이 縣吏가 되어도 얼마 가지 않아 직을 내려놓고 도망하는 현상⁷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점은 후한 초기 전국적 병역 징발제의 소멸, 국가재정의 악화로 인한 俸祿의 감소 및 체불과 밀접히 관계된 것으로 추측되나, 이 문제는 차후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75) 後漢代 縣吏 임명 회피 현상은 다음의 일화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後漢書』 卷35 「周燮列傳」, p.1743, “良字君郎。出於孤微, 少作縣吏。年三十, 爲尉從佐。奉檄迎督郵, 即路慨然, 恥在廨役, 因壞車殺馬, 毀裂衣冠, 乃遁至犍爲, 從杜撫學。妻子求索, 蹤迹斷絕。”; 『後漢書』 卷79下 「儒林列傳·趙曄」, p.2575, “趙曄字長君, 會稽山陰人也。少嘗爲縣吏, 奉檄迎督郵, 曄恥於廨役, 遂弃車馬去。到犍爲資中, 詣杜撫受韓詩, 究竟其術。”; 『後漢書』 卷81 「獨行列傳·范冉」 p.2688, “范冉字史雲, 陳留外黃人也。少爲縣小吏, 年十八, 奉檄迎督郵, 冉恥之, 乃遁去。到南陽, 受業於樊英。又遊三輔, 就馬融通經, 歷年乃還。”

「漢代 吏의 자산 검증과 그 의미」 토론문

김 지 은 (서울대학교)

저는 현재 중국 고대 ‘官制史’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역적으로 동양, 좁게는 중국에서 기원한 대표적인 체제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官僚制’일 정도로 관제사는 중국사 연구의 핵심적 주제이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官制는 지역과 시대를 막론하고 한 국가의 중요한 조직제도 중 하나로 기능했기 때문에, 역대 중국 왕조는 正史를 비롯한 공문서·실록·지방지·문집 등 여러 자료들에서 관제에 관한 방대한 문헌사료를 남겼습니다. 따라서 각 방면에 기록된 관제와 관련한 사료들을 비교 분석하면 중국사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중국 고대 관제에 대한 연구 성과는 고전적인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문헌사료에는 관제와 관련한 사료의 양은 실로 상당하지만, 대부분이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문제들은 최근 다양한 출토자료의 발견으로 어느 정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주현 선생님의 글 역시 관제 연구에 있어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관직을 담당한 官吏 및 그들의 임용 조건을 簡牘자료를 활용하여 검토한 것입니다. 이 글은 최근 중국 고대사의 연구 경향을 잘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의 고위 관리를 중심으로 고찰한 종래의 연구들과는 달리 기층 吏를 다룬 데에서 고대 중국인들의 생활상 또한 엿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가르침과 즐거움을 베풀어주신 이주현 선생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는 간단한 오타나 이주현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얻은 이해가 되지 않았거나, 궁금증이 들었던 점들에 대한 추가 설명을 청하는 것으로 저의 임무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 p.6: Ⅲ 吏 자산 검증의 목적에서 사료 (9)를 설명하면서 “尉史 駿”이라 하셨습니다. 앞장에서 이미 언급하셨듯이[“이전에 縣校의 弟子이기는 했으나 일찍이 吏가 된 적이 없습니다”], 駿은 尉史가 아닌데,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또한 p.13: 居延新簡의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羊을 45錢 비싸게 팔았다”는 것을 35錢으로 잘못 적으셨습니다.

○ 각주 8)을 비롯해 여러 사료를 통해 알 수 있기는 하지만, 각주나 본문에 간단히 “貲”와 “贅”가 통용되는 것을 언급해주시면, 독자의 이해가 한결 수월할 듯 싶습니다.

○ 저는 평소 민의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전근대 권력, 즉 전제지배체제의 특성으로서 國家와 君主의 등치 성향 및 ‘公共性’과 ‘私的 이해’가 불가분하게 결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당시 民이 吏가 되고자 한 까닭은 결국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得’이 ‘失’보다 컸기 때문이라는 이주현 선생님의 견해에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료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일 테지만, IV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급 吏·상급의 吏가 아닐 경우, 일견 吏가 되었을 때 失이 더 많아 보입니다. 또한 35개의 賞賈 사례와 ‘姦黠한 吏, 民’이 盜掘·私鑄에 종사한 기록 등을 근거로 “기층의 屬吏도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戍卒, 刑徒, 관할 구역 내 백성에게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라고 서술하셨습니다. 이 부분 역시 35개의 賞賈 사례 중 民이 세매한

사례도 존재(10개)한다는 점, 盜掘과 私鑄에도 吏 뿐만 아니라 民도 함께 존재했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사례들을 통한 私的 이익의 전제조건이 꼭 爲吏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부연 설명이 기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끝으로 이 글의 대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나마 토론에 가까운 말씀을 두 가지 정도 덧붙이고자 합니다.

- p.13 『居延新簡集釋(五)』 E.P.T 59:548A, “元壽二年十二月庚寅朔戊申, 張掖居延都尉博、庫守丞賢兼行丞事謂甲渠鄯侯言: 候長楊褒私使卒并積一日, 賣羊部吏故貴卅五, 不日迹一日以上. 燧長張譚毋狀, 請斥免. 有書, 案: 褒私使卒并積一日, 燧長張”

본문에서는 밑줄 친 부분을 “燧長 張譚은 능력이 미치지 못하니[毋狀]”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그런데 ‘無狀’은 『漢書』 「東方朔傳」을 비롯해, 五一廣場에서는 출토된 後漢시대 簡牘에서도 ‘職事無狀’, ‘留遲無狀’ 등의 표현으로 산견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공문서에서 관리가 사용하는 일종의 謙語(‘無狀’=‘無善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居延新簡의 사례도 여타 사료들처럼 “燧長 張譚이 (직사를 담당함에) 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겸어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여쭙습니다.

- 累重과 관련한 부분: p.5에서는 累重을 『漢書』 「匈奴傳」의 顏師古 注(『漢書』卷94上「匈奴傳」, “師古曰: 累重謂妻子資產也. 累音力瑞反. 重音直用反.”)를 근거로 “처자와 資產을 지칭한다(or 처자의 자산)”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①顏師古의 注는 匈奴에서 사용되던 단어를 漢語로는 ‘累重’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다는 것으로, 과연 漢의 사료에도 累重의 의미가 그대로 적용될지 의문입니다. ②累重을 妻子(家屬)와 資產이라 본다면, 본문에서 예로 든 아래의 (5)·(6)·(7)는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5)는 始建國 天鳳 1년 6월 宜之燧長 張惲의 伐閱(공로와 경력)官簿、累重(처자와 자산)、訾直(자산), (6)은 • 第卅三燧長 始建國 元年 5월 伐閱(공로와 경력)、訾直(자산)、累重(처자와 자산)官簿, (7)은 第二燧長 建平 5년 2월 累重(처자와 자산)、訾直(자산)官簿.] 즉, 資產에 관한 기록이 2차례로 중복되게 됩니다. 가령 累重과 관련한 顏師古 注를 “妻子의 資產”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漢代에는 부부별산제가 이루어졌다는 결론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본문에서 언급하신 禮忠簡에도 家屬의 재산을 언급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결국 累重은 다른 의미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비록 秦代의 사료지만, 저는 『嶽麓秦簡(3)』의 暨過誤失坐官案 중 “可(何)故曰羸(累)重? 可(何)解? 暨曰: 「不幸過誤失, 坐官弗得, 非敢端犯¹⁰²灋(法)令, 赴隧以成私毆(也). 此以曰羸(累)重. 毋(無)它解.”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暨過誤失坐官案의 대략적인 내용은 江陵丞인 暨가 관리로 재임 중 모두 8건의 탄핵에 연좌되었는데, 이를 누적죄로 처리할지의 여부에 관한 안건입니다. 즉, 이주현 선생님의 글에서 吏로 임명된 이후에도 종종 면직된 사례들 및 면직된 이후 다시 吏로 재임용된 사례들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관리로 재임 중인 상황에서 향후 관리로서 계속 재임할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는 당연히 해당 관리의 신분·명적·범죄 경력·재산 여부 등이 考課의 항목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의 累重도 처자와 자산 혹은 처자의 재산이라고 보기보다는 그의 범죄 경력 정도로 보는 것이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로의 이행’ 문제

-세계체제시각과 월러스틴의 '자본주의적 근대'-

우 인 희 (부산대학교)

목 차

들어가며

- I. 월러스틴의 세계체제 시각과 자본주의의 발생에 관한 스케치
 - II. 아부-루고드의 질문, 월러스틴의 세계체제 개념화와 해석의 한계
 - III. “끊임없는” 자본 축적의 체제로서 자본주의의 성립
 - IV. 프랑크에 대한 비판, ‘자본주의적 근대’의 역사적 경계
- 나오며

들어가며

세계체제론은 1970년대에 등장했다. 본래 이매뉴얼 월러스틴(1930-2019)이 수립한 이 시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강력한 부상을 특징으로 한 시대의 정점에서, 그리고 1968년 전후 세계 도처에서 벌어진 일련의 폭발적인 사회운동들의 향의 속에서 출현했다. 월러스틴은 근대화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 이 시각을 “지식 운동”이라 표현하면서,¹⁾ 반평생 역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지배적인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기획들을 실천해왔다. 월러스틴 역시 시대의 산물이다.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와 뉴욕주립대의 많은 혜택을 받으며 성장한 한편 탈식민화 시기 아프리카 독립운동은 물론 당대 좌파의 이론적 담론과 개념적 도구의 여러 한계를 노정할 수 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기에,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분석’ 역시 20세기 후반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와 지적 담론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비판들을 자양분으로 진화했다고 할 수 있다.

초기 월러스틴에 대한 비판은 주저인 『근대세계체제』 1권에서 제시된, 주로 16세기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등장을 다룬 방식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논증의 방식 면에서 환원주의(지나친 단순화 경향),²⁾ 계급의 문제를 포함하여 어떻게 잉여가 전유되고 축적되는가에 대한 이론적 문제(경제적 주기와 핵심-주변 관계의 우선성),³⁾ 그리고 자본주의/근대의 “문화”

-
- 1) Immanuel Wallerstein, “World-Systems Analysis,” in *World System History*, George Modelski ed., *Encyclopedia of Life Support Systems (EOLSS)*, Developed under the Auspices of the UNESCO (Oxford, UK: Eolss Publishers, 2004), <http://www.eolss.net>, 1; Richard E. Lee, “Critiques and Developments in World-Systems Analysis: 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Collection,” *The Journal of Philosophical Economics* 4.1 (2010), 5.
 - 2) Theda Skocpol, “Wallerstein’s World Capitalist System: A Theoretical and historical Critiqu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5 (1977), 1075-1090.
 - 3) Robert Brenner, “The Origins of Capitalist Development: A Critique of Neo-Smithian Marxism,” *New Left Review* 104 (1977), 25-92; Aristide R. Zolberg, “Origins of the Mordern World System: A Missing Link,” *World Politics* 33.2 (1981), 253-281.

적 측면을 경시한다는 것이었다.⁴⁾ 다른 한편 1980년대로 들어서 세계체제시각이 제도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하나의 유파로 성장하는 가운데, 월러스틴과 달리 근대 이전의 세계체제들에 대한 연구들이 시도되면서 월러스틴이 이론화한 세계체제 개념과 전제에 대해 문제제기가 나왔고,⁵⁾ 나아가 월러스틴의 ‘자본주의적 근대’라는 문제들은 유럽중심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일 뿐이라며 ‘인류중심적인’ 세계사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프랑크와 길스 같은 부류까지 등장했다.⁶⁾

그럼에도, 월러스틴의 전반적 특징은 그 방대한 저술들과 다양한 영역의 주제들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초기의 기본적인 이해를 고수해온 그 일관성이라 이야기된다. 그렇다 해도 1980년대를 지나며 크게는 자본주의의 문화와 근대 지식의 구조로 연구 주제를 넓히는 한편,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세세하게는 초기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와 그 발생 문제에 대해 조금씩 변화된 입장을 드러내 오다가 1990년에 와서 자신의 견해를 수정보완하여 한층 분명하게 제시한 바 있다.⁷⁾ 필자는 1990년 전후 시기를 월러스틴의 이론적 진전에서 주요한 하나의 (어쩌면 단한번의) 계기로 보고자 한다. 특히 자본주의의 성립 문제와 관련해, 한편으로 전통적 맑스주의자들의 비판과,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를 16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구명해야 한다는 수정적 입장, 아예 자본주의나 같은 개념으로 근대를 구분하는 시도 자체를 부정하는 비판 같은 한층 더 복잡해진 구도 속에서, 월러스틴은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하고 방향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시기에 월러스틴이 자신의 이전 연구에서 이론적 문제 또는 한계로 인식된 부분에 대해 어떠한 해법으로 보완해 나갔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역사 사유방식을 고찰해 볼 것이다. 먼저 대표적으로 아부-루고드의 문제제기를 통해서 초기 월러스틴의 세계체제 개념과 자본주의의 출현에 대한 설명의 한계로 인식된 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1990년 전후 월러스틴의 대응 면에서 그의 이론화와 역사적 사유방식을 살펴본다. 그리고 프랑크의 비판에 비추어 월러스틴의 ‘자본주의적 근대’라는 거시사적 역사인식들의 한계와 의미를 짚어 볼 것이다.

4) Stanley Aronowitz, “A Metatheoretical Critique of Immanuel Wallerstein’s ‘The Modern World System’,” *Theory and Society* 10.4 (1981), 503-520.

5) Jane Schneider, “Was there a Precapitalist World-System?”(1977) in Christopher Chase-Dunn & Thoma D. Hall. eds. *Core/Periphery Relations in Precapitalist Worlds* (Boulder: Westview Press, 1991); Kajsa Ekholm & Jonathan Friedman, “‘Capital’ Imperialism and Exploitation in the Ancient World-Systems,” *Review* 6.1 (1982), 87-119; Janet Abu-Lughod, *Before European Hegemony: The World System A.D. 1250-1350* (New York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Kirti N. Chaudhuri, *Asia Before Europe: Economy and Civilisation of the Indian Ocean from the Rise of Islam to 17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6) Andre Gunder Frank and Barry K. Gills ed. *The World System: Five Hundred Years or Five Thousan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3); Andre Gunder Frank, *ReOrient: Global Economy in the Asian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이희재 옮김, 『리오리엔트』 (서울: 이산, 2003).

7) Immanuel Wallerstein, *Historical Capitalism* (London & New York: Verso, 1983). 나종일, 백영경 옮김, 『역사적 자본주의/자본주의 문명』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3); Immanuel Wallerstein, “The West, Capitalism, and the Modern World-System,” *Review* 15.4 (Fall 1992), 561-619.

I. 월러스틴의 세계체제시각과 자본주의의 발생에 관한 스케치

월러스틴은 과거에 대한 연구는 구조적이고 보편적인(체제적) 특징과 개별적이며 특수한(역사적) 특징 양자 모두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우리의 현재로부터 비추어지는 역사의 분석단위를 하나의 '전체'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다음의 경구를 전제한다. "전체성을 완전성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전체는 부분들의 집합 이상이다. 그러나 또한 분명히 그 이하이기도 하다."⁸⁾ 즉 '전체'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인류 역사 전체를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월러스틴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사회역사적 전체를 개념화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사회과학의 첫 번째 질문으로 삼았다.

그는 19세기 이래 민족사회나 국민국가와 같은 일국적 공간에 인식론적 지평을 한정시켜온 민족적 서사가 발전주의적 근대주의와 유럽중심주의를 강화해왔다고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인간사의 '경험적 현실'의 장이라 할만한 참다운 분석단위를 '역사적 체제'라고 제시했다.⁹⁾

내가 역사적 체제라고 부르는 이 실체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한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그것들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다. 즉 주로 그것들 자체 내부과정의 결과들에 의거하여 작동한다. 둘째, 시간경계를 갖는다. 그것들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셋째, 공간경계를 갖되, 이 경계는 그것들 자체의 생활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¹⁰⁾

월러스틴은 인류사에 존재해온 역사적 체제들을 크게 -비교적 작고 고도로 자급자족인 원시적 인류 생활의 단위에 해당되는- 소체제(mini-systems)와 세계체제(world-systems)로, 후자를 다시 단일한 정치적 중심이 있는 세계제국(world-empires)과 그렇지 않은 세계경제(world-economies)로 유형화했다. 여기서 '세계체제'의 '세계'라는 단어는 소체제에 비해 한층 더 큰 공간과 한층 더 긴 시간에 걸친 역사적 체제를 의미하는 동시에, 여러 문화적 집단들이 공존하며 교류하는 하나의 무대 즉 사회적 노동분업의 존재를 가리킨다.¹¹⁾ 즉, 월러스틴이 보기에, 하나의 전체로서 세계체제라는 것의 통합성을 규정하는 결정적 속성은 "물질세계를 조직화하는" 유효한 사회적 분업 체계에 있다는 말이다.¹²⁾ 요컨대 세계체제란 사회역사 연

8) 이매뉴얼 월러스틴. 나종일 외 옮김. 『근대세계체제 I: 자본주의적 농업과 16세기 유럽 세계경제의 기원』 (서울: 까치, 1999), 24.

9) 월러스틴은 사회과학에서 널리 쓰인 '사회체제'보다는, 자신의 문제의식을 담아 조어한 '역사적 사회체제' 또는 '역사적 체제'라는 용어를 쓴다. 월러스틴이 1976년 빙엄턴 뉴욕주립대학교 사회학과로 온 후 '경제들, 역사적 체제들, 문명들의 연구를 위한 페르낭브로델센터(Fernand Braudel Center for the Study of Economies, Historical Systems, and Civilizations)'를 설립하는데, 이 연구소의 명칭을 보면 월러스틴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 이 명칭은 페르낭 브로델의 장기지속, 즉 장기간에 걸친 거대 규모의 사회 변화 연구에 매진하자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특히 '경제들, 역사적 체제들, 문명들의 연구'는 당시 아날학과 저널인 『연보: 경제들, 사회들, 문명들(Annales: Economies, Societes, Civilisations)』의 부제를 변형한 것인데, 여기서 '사회들'을 '역사적 체제들'로 바꾼 것은 분석단위에 대한 이론상의 태도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10) 이매뉴얼 월러스틴, 「복합적 체제로서의 역사적 체제」(1987), 성백용 옮김,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289.

11) Wallerstein, "A World-System Perspective on the Social Science(1976),"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156.

12) Wallerstein, "A World-System Perspective on the Social Science(1976),"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155. 월러스틴은 노동분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노동분업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상호의존적인 하나의 망이라 생각한다. 경제적 행위자들은 자신에게 불가결한 것들 전체가 -생계, 보호, 기쁨- 적절한 기간에 걸쳐서 그들

구를 위한 하나의 공간적/시간적 전체이며, 그 세계체제의 공간적 범위는 그것을 이루는 지역들 사이의 노동분업의 공간과 같고 그 시간적 범위는 이 노동분업이 그 세계를 하나의 사회적 전체로서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한 지속된다는 것이다.¹³⁾

이처럼 월러스틴은 ‘세계체제분석’이란 이름으로 사회연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정향하려는 가운데, 자신은 주로 ‘근대 세계체제’의 발생과 구조, 그리고 위기에 대한 이론적이고도 역사적인 설명에 집중해왔다.¹⁴⁾ 초기 월러스틴의 시도에서 핵심은 16세기에 형성된 ‘유럽 세계경제(European world-economy)’를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개념화함으로써, 근대 자본주의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월러스틴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존재한 세계경제들은 결국 내부적으로 해체되거나 외부 집단에 정복되어 세계제국으로 전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유럽 세계경제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경향을 비켜갔다. 오히려 다른 세계체제들과 달리 사회적으로 생산에 대한 한계를 돌파해 나가면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부 경계를 계속 확장하여 20세기에 이르면 전 세계를 포괄”했고, 그리하여 전 세계의 체제로 변화한 “유일한 세계체제”라는 것이다.¹⁵⁾ 월러스틴은 이점이 바로 근대 세계체제의 역사적 독특성이라고 본다.

월러스틴은 유럽 세계경제의 이 전례없고 비견될 바 없는 팽창력(expansionary thrust)을 해명할 수 있는 열쇠를 바로 그 ‘자본주의적’ 성격에서 찾는다. 월러스틴은 세계체제로서 자본주의란 “끊임없는 자본 축적”이 경제활동 전반의 지배적 원리로 작동하는 체제이며, 이 원리의 우선성이야말로 자본주의 체제를 다른 세계체제들과 구별해주는 결정적인 종차라고 주장한다. 역사의 어느 한 순간 ‘끊임없는 자본축적’이란 세계관이 어느 한 체제의 지배계급들의 통치 사상과 권력의 족쇄를 뚫고 지배적 원리로 확립된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그 이전 세계사로부터의 파열이자 단절이라 이해하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자본주의의 성립이 세계사적으로 볼 때 근대로의 분기라는 것이 월러스틴의 ‘근대 세계체제’ 분석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근대세계체제』 1권은 ‘자본주의적 농업과 16세기 유럽 세계경제의 기원’이란 부제가 말해 주듯이, 16세기에 유럽 세계경제란 형태로 등장한 자본주의의 성립의 역사를 논한다. 그는 자본주의의 성립에는 세 가지 역사적 조건이 수반되어야 했다고 설명하는데, 바로 유럽 세계경

자신의 생산 활동들과 교환의 결합에 의해서 충족이 될 것이라는 가정 위에서(물론 어떤 개별 행위자에게는 명확하지 않더라도) 움직인다. 그런 최소의 망이, 즉 그 경계들 내에 있는 행위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바라는 기대들이 실질적으로 충족이 되는 최소의 망이 하나의 단일한 노동분업이라 할 수 있다.” Immanuel Wallerstein, “The Rise and Future Demise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Concepts for Comparative Analysis”(1974), in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14. 월러스틴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노동분업을 가리킬 때 ‘기축적 노동분업(axial division of labor)’이란 용어는 이 체제 자체가 유지되는 데는 핵심부적 과정과 주변부적 과정을 결합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기축이 있기 때문이라는 논지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Immanuel Wallerstein, *World-Systems Analysis: An Introduction*, 91.

13) 후에 월러스틴은 역사적 체제들의 지속기간(수명)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성격의 주기와 관련지어 유형화했다. 소체제의 경우에 생태학적 주기에 따라(일반적으로 정복되거나 또는 새로운 환경적 조건에 의해 재편되든 해체되든 여섯 세대 정도 지속하는 경향), 세계경제는 경제적 주기에 따라(1500년 이전에는, 수축이 시작되면서 한 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해체되거나 세계제국들로 전화되는 경향), 그리고 세계제국들의 경우에는 제국적 주기에 따라(전형적으로 400년에서 500년 정도 지속되는 경향). Wallerstein, 1979, 155-159; 1992, 588-589.

14) 이매뉴얼 월러스틴, 『근대세계체제 I: 자본주의적 농업과 16세기 유럽 세계경제의 기원』; 유재건 외 옮김. 『근대세계체제 II: 중상주의와 유럽 세계경제의 공고화 1600-1750』 (서울: 까치, 1999). 김인중, 이동기 옮김. 『근대세계체제 III: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거대한 팽창의 두 번째 시대, 1730-1840년대』 (서울: 까치, 1999); 박구병 옮김. 『근대세계체제 IV: 중도적 자유주의의 승리, 1789-1914년』 (서울: 까치, 2017); 백영경 옮김. 『역사적 자본주의/자본주의의 문명』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3) 등.

15) Imman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System and Evolution,”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1.19 (1995), 2.

제 자체의 지리적 확대와 그 경계 내 여러 지역들 및 산물들에 적합한 상이한 노동통제 방식들의 발전, 그리고 핵심부에서 비교적 강한 국가기구의 부상이 그것이다. 그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럽의 지리적 팽창으로서, 이는 중세말 ‘봉건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는 것이다. 16세기에 유럽 대부분 지역과 라틴아메리카 지역까지 광범위한 지리적 공간에 걸쳐 생산과 교역 네트워크가 새롭게 형성되는 가운데, 북서유럽에서는 국가기구의 발전과 더불어 핵심부적 생산과정이 특화된 반면 스페인과 북이탈리아 도시국가들에는 반주변부적 과정이, 북동유럽과 아메리카에는 주변부적 과정이 자리잡게 되면서, 구조적으로 새로운 잉여이전의 체제가 즉 주로 농업에 토대한 자본주의적 -시장에서의 이윤 지향의- 생산활동의 노동분업 체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이다.¹⁶⁾

1권에서 월러스틴의 핵심 주장은 근대 세계사에서 자본주의는 여러 착취양식이 결합된 세계적 생산관계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세계시장기구와 국가기구의 도움으로 자국 노동자로부터의 잉여착취뿐만 아니라 핵심부 지역에 의한 세계경제의 잉여착취를 통해 진전되어 왔다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한 잉여분배의 양극화가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월러스틴의 이러한 이해는 자본주의를 세계경제의 단일성 안에서 진행되는 계급적, 지리적 위계화의 중첩적 과정으로 파악함으로써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와 종속이론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틀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런데, 유럽 세계경제를 자본주의 체제로 설명해내는 월러스틴의 접근은 근대 자본주의 역사의 성립과 발전을 설명하는 데 큰 강점을 보여준 동시에 약점도 드러냈다. 한편으로, 이론적으로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한 구조와 다양한 갈등 양상과 같은 한층 더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본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특히 역사적으로 근대 유럽이 보여준 유례없는 팽창과 지배에 대해 매우 그럴듯한 큰 그림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초기 월러스틴의 설명은 자본주의로의 전화, 즉 그 기원의 문제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월러스틴 자신도 “1500년경의 이행을 설명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 나 자신의 설명도 그러하거니와 이제껏 제시된 설명들은 설득력이 모자라며, 때문에 당장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생각이다”라며 자신의 지적 궁지를 인정한 바 있었다.¹⁷⁾

특히 1980년대에 세계체제 연구의 영역이 다양화되기 시작한 가운데, 근대 이전의 역사에 대한 세계체제적 접근이 시도되면서 월러스틴이 정초한 세계체제 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이 제출되는데, 이는 월러스틴 또한 자신의 이론화와 역사에 관한 사고방식을 재검토할 필요를 제기했다.

II. 아부-루고드의 질문, 초기 월러스틴의 세계체제 개념화와 해석의 한계

재닛 아부-루고드의 『유럽 헤게모니 이전: 13세기 세계체제』(1989)는 16세기 이후 유럽의 부상을 이해하려면 그 이전의 세계 즉 세계적 수준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16) 한편 이 시기에 결정적으로 16세기 중반 합스부르크제국, 발루아제국의 팽창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1559년 카토-캄브레지조약) 유럽 내 나라들 간에 일종의 세력균형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하나의 체제로 모양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 세계경제가 오스만제국과 러시아의 세계제국들, 인도양의 세계경제와 모종의 균형점에 이르게 되었다고 본다. (1권 283, 305)

17) 이매뉴얼 월러스틴, 「복합적 체제로서의 역사적 체제」(1987),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300.

해, 13-14세기 유럽, 중동, 아시아의 주요 지역을 상호연결한 세계적 교역 네트워크를 하나의 세계체제로 분석함으로써 16세기 이전의 세계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기념비적 저작이다. 이 연구는 그간 세계체제시각 내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던 월러스틴의 이론과 그가 다른 『근대세계체제』의 영향력을 상대화함으로써, 월러스틴이 자신의 견해를 다시 검토하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세 유럽 지역이 세계 다른 지역과 맺은 관계에 대해 역사적으로 새로운 상을 제시한 것은 물론, 월러스틴이 『근대세계체제』에서 보여준 세계 경제와는 전혀 다른 세계경제의 상을 그려냄으로써 세계체제 개념에 대한 한층 열린 접근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아부-루고드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초기 월러스틴의 이론적 방법과 역사적 해석의 모호성 또는 약점을 비추어 볼 것이다.

아부-루고드는 1250년부터 1350년의 시기를 “세계사에서 하나의 지렛목(fulcrum) 또는 중대한 “전환점”이라 상정한다.¹⁸⁾ 그는 이 시기 ‘구세계’의 모든 주요 지역들이 대개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성취가 번창했다는 세계사적 면모에 주목해, 이것이 그 지역들 사이에 경제적 통합의 증대와 관련이 있다는 발상을 발전시켰다.¹⁹⁾ 즉 서유럽, 중동, 동아시아에 위치한 ‘하위 체제(subsystem)’들이 -유럽, 지중해, 흑해/ 걸프만, 홍해/ 아랍해, 인도양, 중국- 그 각각의 중핵 역할을 하는 “도시들의 군도”를 따라 하나의 세계적 교역 네트워크에 통합됨으로써 세계 경제를 이루었는데,²⁰⁾ 이 체제는 그 이전에 알려진 어느 체제보다도 더 크고 조직적으로 복잡했으며, 한층 더 정교하게 -운송 항해 기술, 생산과 판매의 사회조직화, 상거래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공업 제도, 자본의 공동출자 장치, 화폐 주조 및 교환 기술 등에서- 작동했다는 것이다. 아부-루고드는 이 13세기 세계체제에 유럽 역시 통합되어 있었으며, 도시들의 다양한 경제적 활동과 제도 수준에서 비교적 뒤처져 있던 주변으로 파악했다.

요컨대 이 논의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 주장은 14세기 후반 세계경제의 여러 중핵들이 위치 하던 “동양의 쇠퇴”가 “서양의 융성”보다 앞서 일어났으며, 이후 유럽이 손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촉진했던 토대는 그보다 앞서 존재했던 체제의 쇠퇴에 있었다는 것이다.²¹⁾ 이는 16세기를 지나며 부상하기 시작한 유럽 세계경제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고유의 문화나 제도 보다는 그 이전 세계 즉 유럽이 통합되어 있던 세계적 수준의 지리적, 정치적, 인구통계학적 맥락의 변화, 특히 14세기 후반 몽골족의 붕괴와 흑사병의 창궐로 인한 세계경제의 쇠퇴 내지 해체에 대한 이해가 더 결정적일 수 있다는 문제제기였다. 즉 유럽의 부상, 자본주의와 근대성의 진전을 설명하기 위해 유럽 사회 또는 특정 국가의 특수한 기술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특징에 집중하는 역사적 해석을 비판하면서, 세계체제로부터의 변화라는 관계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부-루고드의 13세기 세계체제 연구는 월러스틴을 비판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월러스틴의 세계체제 논의와 『근대세계체제』 1권에서 제시된 자본주의 성립 배경에 대한 설명에 내포되어 있던 약점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 주었기 때문이다.

첫째, 아부-루고드는 그간 월러스틴이 정립해온 세계체제 개념을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체제 연구의 역사적 무대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한층 더 확대하려면, 세계체제의 그 통합성을 조직하는 원리를 달리 파악할 수 있고 또한 그 조직화 원리도 주기적으로 재구조화될 수 있다는 점에 한층 더 개방적으로 접근해야

18) 아부-루고드, 『유럽 헤게모니 이전』, 32.

19) 아부-루고드, 『유럽 헤게모니 이전』, 24.

20) 아부-루고드, 『유럽 헤게모니 이전』, 34.

21) 아부-루고드, 『유럽 헤게모니 이전』, 392-393.

한다는 것이다.

아부-루고드는 13세기 세계체제도 월러스틴이 정의했듯이 “사법적으로 규정되는 어떠한 정치적 단위보다” 한층 더 광범위하고,²²⁾ 자유노동, 준자유노동, 노예노동 등 다양한 노동통제 방식이 혼재한 체제였다는 점에서는 유럽 세계경제와 유사하지만, 그것과는 매우 상이한 원리를 토대로 조직된 것으로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이 세계체제는 언어, 종교, 그리고 제국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8개의 하위체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각각의 하위체제들 내부에 중심들과 그 배후지 격의 주변들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으며 특히 중심 역할을 하는 주요 도시를 매개로 하나의 통합적인 세계경제가 작동한다. 월러스틴이 근대 세계체제의 통합성의 기준으로 제시한 핵심, 주변, 반주변의 기축적 노동분업의 위계적 조직과는 달리, 아부-루고드의 세계체제는 어느 단일한 중심부나 헤게모니가 생산과 교역에 유리한 조건들을 타자에게 강제하는 양상을 띠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위계적이며, 오히려 다수의 중핵 지역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의미에서 다중심적이라는 것이다.²³⁾

물론 아부-루고드는 월러스틴과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른 세계체제를 다루고 있기에 그 체제의 구성원리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자체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달리 접근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아부-루고드가 월러스틴이 특정한 지리적 구분과 대개 경계가 겹쳐 있는 핵심-주변 관계에 준하여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애초부터 끊임없는 위계화를 내포한 체제로 파악한 점을 정면으로 문제로 삼는 것은 아니다. 그가 의도한 바는, 1) 초기 월러스틴이 자본주의와 세계경제가 동전을 양면을 이루는 것이라 기술함으로써, “근대 세계체제가 마치 최초의 세계경제이었던 양” 취급하는 데서 발생하는 이론적 모호성을 드러내고,²⁴⁾ 2) 그로 인해 세계제국과 세계경제 개념을 마치 봉건적 양식과 자본주의적 양식이라는 생산양식의 이분법적 대비로 등치함으로써 오인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중요한 문제제기였다.

요컨대 아부-루고드는 월러스틴 식의 하나의 단일한 기축적 노동분업과 같은 체계가 세계경제가 택할 수 있는, 달리 말해 세계경제로 간주될 수 있을 만한 것의 유일한 조직 원리는 아니기 때문에, 세계체제를 월러스틴이 이해하듯이 ‘특정하게 위계적으로 구조화된 조직’으로 파악하는 것은 세계사의 분석단위에 대한 논쟁을 비생산적으로 만들기 쉽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부-루고드는 자신의 13세기 세계체제 구성 논리에 기대어 오늘날의 세계체제에 대해서도 다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다음과 같이 시사했다.

어떠한 세계체제도, 각 부분들의 역할이 중심적이든 주변적이든 모든 부분들이 균등하게 서로 결합된다는 의미로 보면, 전지구적이지 않다. 이전보다 더욱 전지구적으로 통합된 오늘날에도 세계는 북대서양 체제(서유럽과 북미), 환태평양권(일본, 대만,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사회주의 “블록”인 중국(여전히 그 자체로서 하나의 체제인), 그리고 북아프리카-서아시아 아랍 세계 등 주요 권역 또는 하위체제로 나뉘어 있다. 이들은 각각 그 자체의 중핵을 가지고 있다.²⁵⁾[원문 강조]

이처럼 아부-루고드는 세계체제를 조직하는 원리가 상당한 정도로 가변성을 가질 수 있으

22) 월러스틴, 『근대세계체제』 1권, 33. (MWS I, 15)

23) 아부-루고드, 『유럽 헤게모니 이전』, 397.

24) “월러스틴(1974)은 복수의 통상적인 “세계경제들” 및 제국들과 “근대 세계체제”를 구별한다. 그는 16세기 이전 세계제국들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여전히 근대 세계체제를 마치 최초의 것이었던 양 취급한다. 그러나 그도 최근 논쟁에 뛰어들어 학자들 중에 한명일 따름이다.” 아부-루고드, 『유럽 헤게모니 이전』, 29.

25) 아부-루고드, 『유럽 헤게모니 이전』, 56-57.

며, 자명하게도 생명력이 있는 체제들은 역동적이기 때문에 그 체제의 추세와 역사적 우연의 결합이 직조해내는 조직 원리들의 변화에 따라 재편성될 수 있다는, 한층 더 열린 접근을 강조한 것이다.²⁶⁾

둘째, 아부-루고드의 이러한 시도는 동시에 ‘이행’의 문제를 사고하는 방식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그에 따르면, “만일 한 세계체제가 다른 세계체제로 계승될 때 일어난 일을 ‘대체’라기 보다는 ‘재구성(restructuring)’으로 본다면, 해체적 조정기가 경과한 후일지라도 붕괴의 원인을 그 부분들 자체에서 찾기보다는 이전에 연결되어 있던 통로들의 효용과 기능이 어떻게 쇠퇴했는가에서” 전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²⁷⁾ 아부-루고드가 보기에, 13세기 세계체제가 쇠퇴했다는 것은 그 체제 자체가 어떤 무언가(들)로 이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같은 이전 원인은 동반된 다수의 연쇄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성한 부분들의 ‘쇠퇴’ 조짐에 있다는 것이다. 즉 “역사 이래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통합하던 ‘중핵 지역들’은 중앙아시아와 인도양이었으며, 나중에 거기에 지중해가 추가되었고 이와 같은 중핵들은 고대부터 13세기 세계체제를 통해 존속했다.”²⁸⁾ 이런 형태의 결정적인 재편이 북서유럽이 대서양으로 진출하던 16세기에 이루어졌다면 13-16세기 세계 무대의 역사적 변모에 주목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는 세계체제시각이 자본주의의 성립을 16세기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화와 막스가 말한 ‘본원적 축적’을 통한 세계시장 창출을 필수적인 역사적 조건으로 설명하는 그 구도에서 더 나아가 그 이전 세계체제의 잔재 또는 유산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부-루고드의 제언은 월러스틴의 역사적 체제의 ‘교체’라는 사고, 즉 역사적 생산양식의 이행이라는 전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인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부-루고드는 오늘날의 세계체제가 이전의 어떤 생산양식으로부터 또 다른 생산양식으로의 이행을 통해 유럽에서 출현하였다는 사고를 의심쩍게 보려 하는데, 16세기에 유럽에 어떤 생산양식이 존재하였다면 그것은 이미 13세기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과 인도, 중국에도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이행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인 관념, 즉 생산양식/생산관계에 근거해 사고하는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이라는 유럽사적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고 여기서 월러스틴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다.

세계체제시각 4인방의 하나인 지오반니 아리기도 유럽 세계경제의 자본주의로의 변모에 관한 문제는 세계체제시각 전체에서 여전히 “잃어버린 고리”로 남아 있다며, 어떠한 경쟁적 압력들이 그러한 전화를 촉진하고 지속시켰는지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²⁹⁾ 그는 그간 세계체제 연구자들이 비판자들에게 대응하면서 핵심-주변 관계의 우선성을 교조적으로 고집하고 콘트라디에프주기 같은 경제적 순환의 A-B 국면에 비추어 이행을 설명하려 해온 것이 “세계체제시각의 저발전에 가장 불안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꼽았다.³⁰⁾ 아리기는 아부-루고드의 시도를 높이 평가한 데서 그치지 않고, 그가 이론적 원천으로 삼은 브로델의 관점으로 눈을 돌린다. 그는 13세기 세계체제처럼 대규모 영토 조직들을 서로 연결하고 그 체제 전체를 또 다른 체제들과 연결하는 주요 도시들의 틈새(interstices)에 주목해 자본주의의 기원을 13세기 이탈리아 도시들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

26) 아부-루고드, 『유럽 헤게모니 이전』, 396, 397.

27) 아부-루고드, 『유럽 헤게모니 이전』, 399.

28) 아부-루고드, 『유럽 헤게모니 이전』, 400.

29) Giovanni Arrighi, “Capitalism and the Modern World-System: Rethinking the Non-Debates of the 1970s,” *Review* 21.1 (1998), 113-129.

30) Arrighi, “Capitalism and the Modern World-System,” 120-121.

이 언급한다.

월러스틴은 자본주의의 기원을 유럽의 대규모 영토국가들의 농업에서 찾는데, 정작 세계 자본주의는 이 국가들 내부가 아니라 이 국가들의 사이사이에서 기원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자신이 비판자들에게 대응하기에 큰 어려움에 빠져있음을 깨달았다. ‘봉건제의 위기’와 소위 유럽 농업의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이란 문제는 의심할 바 없이 영국, 프랑스, 폴란드, 독일, 그리고 다른 많은 유럽 세계의 ‘민족적’ 서사를 이해하는 데는 아주 적합하다. 그러나 어떻게 유럽 세계경제가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변모했는가 하는 과정을 파악하는 데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³¹⁾

이처럼 아리기는 월러스틴도 여전히 지배적인 사회과학의 국가중심적, 계급중심적 분석의 덫에 걸려 자본주의 성립에 대한 설명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1980년대 후반까지 세계체제시각 내부에서 월러스틴의 이론화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제기된, 또는 그것을 갱신하려는 접근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6세기 이전의 세계체제로 연구 범위가 확대되고, 이와 관련하여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시간적, 공간적 경계와 그 조직 원리에 대한 다른 역사적 해석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1970년대에 월러스틴이 주창한 세계체제시각 전반의 방법론과 역사적 해석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필요와 동시에 월러스틴 자신의 근대 세계체제에 대한 견해를 다시 검토함으로써 논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청을 제기했다.

Ⅲ. “끊임없는” 자본 축적의 체제로서 자본주의의 성립

1990년 월러스틴은 「서구, 자본주의, 그리고 근대세계체제」란 논문에서 자본주의와 그것의 발생에 관하여 자신의 견해를 다시금 명확히 밝히고자 시도했다. 동시에 그간 역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전반에서 중심적인 문제였던 ‘유럽의 부상’이라는 주제, 즉 ‘유럽의 팽창’, ‘자본주의로의 이행’, ‘근대성의 성취’에 관한 주요 역사가들의 설명을 “문명적 설명”이라 비판하는 한편 “콩중크튀르적 설명(conjunctural explanations)”을 제시하는 새로운 대응 구도로, 역사에 관한 사유방식과 연계된 이론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 글이 시기상으로도 세계체제시각 안팎에서 제기되어 온 비판들에 -한편으로 브레너와 같은 맑스주의 경제사학자들의 비판과 다른 한편으로 세계체제시각 내부의 새로운 질문들- 대한 침묵을 깨고 나온 비판인 만큼, 이 장에서는 이 시기에 월러스틴이 근대 자본주의로의 역사적 전화 문제에 대해 한층 진전된 설명과 사유방식을 제시한 것이라 보고 그 의미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월러스틴은 ‘서구’, ‘자본주의’ 그리고 ‘근대’라는 세 개념이 지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불가분하게 결부되어 온 것이 우리 현실이라 운을 떼며, 특히 자본주의/근대성의 발전을 유럽이 선취하고 주도해온 역사적 ‘진보’라고 사고하는 경향을 비판한다. 근대를 이야기할 때 “1) 유럽에서 근대 초기 어느 시점에 근본적으로 새롭고 독특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2) 그것은 세계사적 수준에서 매우 긍정적 또는 ‘진보적’인 일이었다”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믿는 것이 대다수의 지배적 인식이라는 것이다.³²⁾ 물론 월러스틴도 16세기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형성을 역사적 단절이라 보는 점에서 첫 번째 인식을 함께 하지만, 그가 명시적으로 자본주의의 성립을

31) Arrighi, “Capitalism and the Modern World-System,” 126.

32) Wallerstein, “World System versus World-Systems: A Critique,” *Critique of Anthology* 11.2 (1991), 189.

‘내리막길’, ‘재앙’으로 그려내고 있는 점에서는 매우 다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 글에서 월러스틴은 막스 베버, 페리 앤더슨, 마이클 만, 그리고 자신이 “영국만세 학파”의 전형으로 꼽은 앨런 맥팔레인과 로버트 브레너까지 모두 ‘문명적 설명들(civilizational explanations)’이라는 범주로 묶어, 그 설명방식의 공통적 한계를 지적한다.³³⁾ 그에 따르면, 이 입장은 마르크스주의든 자유주의든 가로질러 그 이념적 지향에 상관없이, 유럽 역사 자체에 자본주의적/근대적 경향이 원래부터 잠재하고 있었다는 식의 설명 논리를 구사한다. 즉 이들은 자본주의 또는 근대성의 기원을, 단선적인 문명사를 거슬러 올라가, 유럽 또는 영국/이탈리아 문명의 특수한 경험에서 찾음으로써 그 역사적 결과를 필연화시킨다는 것이다. 월러스틴은 이러한 설명들이 “시간적 선후 관계와 논리적 인과관계를 혼동하는 오류(post hoc ergo propter hoc)”의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³⁴⁾

특히 브레너를 ‘문명적 설명’의 예로 거론한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 면이다. 바로 마르크스주의 경제사가 브레너는 『근대 세계체제』 1권에 대한 주요 비판자인 데다가 그간 월러스틴이 직접적으로 응답을 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브레너는 월러스틴이 중세 봉건제 내의 동학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기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또한 초기 월러스틴이 자본주의의 근본적 특징을 “최대한의 이윤 실현을 목적으로 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해 생산하는 체제”로 정의했던 바,³⁵⁾ 이는 생산관계/계급관계를 도외시하는 신스미스적 마르크스주의니 유통주의니 하는 비판을 사는 데 결정적인 꼬투리가 되기도 했다.³⁶⁾ 되돌아보면, 이는 마르크스 이래 어떠한 사회체제를 규정하는 하나의 생산양식으로서 자본주의와 월러스틴이 새롭게 개념화하고자 한 역사적 체제 즉 전체로서의 자본주의를 구별하는 데서, 월러스틴 자신이 다소 모호해 보이는 진술을 종종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를 지나며 월러스틴의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적 규정에 변화가 보인다. “역사적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자본 축적이 그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지배 또는 통제하는 경제적 목적 또는 규칙으로 작동하는, 구체적이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한정된 그리고 통합되어 있는 생산활동들의 장”이라고 한층 분명하게 기술하면서,³⁷⁾ 근대 자본주의 체제를 다른 세계체제들과 분별해주는 “종차는 자본의 축적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본 축적에 부여된 그리고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우선성”이라고 강조점이 달라진 것이다.³⁸⁾

하나의 생산양식으로서 자본주의와 재분배적/공납적 생산양식의 다양한 형태들 사이에 차이는, 흔히 주장되는 것과 같이, 모든 잉여의 이전이 시장을 통해 매개되는 양식과 잉여의 이전이 “경제외적 강제”를 통해 달성되는 양식의 차이가 확실히 아니다. 이는 우리의 자본주의/근

33) 물론 월러스틴이 여기서 거명된 학자들의 전 저작을 두고 비판한 것은 아니다. 그의 요점은 “서구에서 최초로 발생한 자본주의의 진전을 그 이전의 ‘문명적’ 체제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로 그려내는 문화-발생적 설명”의 논리이다. Immanuel Wallerstein, “The West, Capitalism, and the Modern World-System,” *Review* 15.4 (Fall 1992), 590.

34) Wallerstein, “The West, Capitalism, and the Modern World-System,” 599-600.

35) Immanuel Wallerstein, “The Rise and Future Demise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Concepts for Comparative Analysis,” (1974), in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9, 15.

36) Brenner, “The Origins of Capitalist Development: A Critique of Neo-Smithian Marxism,” 25-92; Ira Gerstein, “Theories of the World Economy and Imperialism,” *Insurgent Sociologist* 7 (1977), 9-22.

37) Immanuel Wallerstein, *Historical Capitalism*, London & New York: Verso, 1983. 이매뉴얼 월러스틴, 나종일, 백영경 옮김, 『역사적 자본주의/자본주의 문명』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3, 19.

38) Wallerstein, “World System versus World-Systems,” 190.

대 역사적 체제에서도 경제외적 강제가 상당히 존재하며 또한 어떤 종류의 시장이든 다른 역사적 체제들에서도 거의 항상 존재해왔기 때문이다.³⁹⁾

월러스틴이 보기에, 이제까지 자본주의를 구별해온 전통적인 방식들에서 다른 원인 내지 동인은 -광범위한 상품 생산, 시장에서의 이윤을 추구하는 생산자와 교역자, 자본의 투자, 임금노동자, 고도의 기술 수준, 그리고 자본주의적으로 보이는 세계관(weltanschauungen)까지- 경험적 사실들의 측면에서 볼 때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월러스틴이 “원(原)자본주의적(proto-capitalist)”이라 칭한 이러한 요소들의 진전은 분명 자본주의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맞지만, 그러한 요소를 준거로 어떤 역사적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라고 부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⁴⁰⁾

그렇다면 월러스틴에게 자본주의의 기원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된다. 이 문제는 과거의 특정 경험적 사실들을 조사하여 이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역사학적’ 탐구의 주제이기 이전에, 역사에 관한 사유방식과 연계되는 이론적 시각의 문제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우리가 이미 돕-스위지 논쟁, 브레너 논쟁에서도 충분히 확인한 바 있다. 돕은 자본주의의 기원을 봉건적 생산양식의 내적 모순에서 출현한 소생산양식에서, 스위지는 봉건적 생산양식 외부에서 진전된 전자본주의적 상품생산에서 찾았고, 브레너는 영국, 프랑스와 동유럽에서 상이하게 나타난 봉건 영주계급과 농민계급 간의 계급적 힘의 역학관계의 차이에서 영국 자본주의의 농업적 기원을 설명했다. 이들 모두 공히 자본주의의 역사적 기원 찾기, 즉 그것의 원인이나 동인이 무엇인가를 역사적으로 규명해야 할 문제로 삼았다. 그런데 이들의 설명 방식을 보면, 자본주의의 성립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그 기원에서 출발해 결과로 귀결되는 인과관계의 연속으로 논증된다. 이러한 인과성의 구성에서는, 모든 “역사적 사실들이 이미 처음부터 자본주의를 낳게 하는 원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출현하며 역사 발전이라는 시간의 흐름과 순서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질서 속에 놓이게 된다.⁴¹⁾ 즉 15-16세기 기원에서 18세기 결과까지의 ‘이행’이라는 즉 점진적 발전 혹은 진보의 시간 위에서, 역사적 요소들이 선형적 인과성의 논리를 따라 구성되는 것이다.

월러스틴의 말처럼, 많은 역사적 체제들이 ‘원자본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던 동시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왔기 때문에 그 어떤 체제도 끊임없는 자본 축적의 문턱을 넘지 않았는데 역사의 어느 한 계기에 그러한 예외적 일이 발생했다고 본다면, 그것은 분명 세계사적으로 ‘파열’ 또는 ‘단절’의 의미를 갖는 것일진대 이에 대한 월러스틴의 논리를 살펴보자.⁴²⁾ 그는

39) Wallerstein, “The West, Capitalism, and the Modern World-System,” 571.

40) Wallerstein, “World System versus World-Systems,” 190; “The West, Capitalism, and the Modern World-System,” 589.

41) 김택현, 「자본주의 이행을 다시 생각함: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마르크스의 이행론」 『영국연구』 32 (2014. 12), 301.

42) 월러스틴은 1500년 이전 적어도 2000여년 간 세계의 다양한 역사적 체제들 도처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로 고려될 만한 흔적들이 쉽게 볼 수 있지만, ‘끊임없는 자본 축적’을 제한하는 결쇠가 풀린 적이 없었던 이유를 그 체제에서 권력을 가진 지배집단의 재생산 및 통치 방식 면에서 찾는 것 같다. “자본의 끊임없는 축적은 필연적으로 기성 권력에 도전하여 그 권력을 약화시키고 그 권력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용납하기 때문이다. 재분배적 체제에서 권력은 지대에 기반해 왔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부과되고 정당화되는 수입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체제에서 이윤이란 정치적으로 획득되고 지원받으며 확대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 자본주의적 기술 및 방식들이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아님을 유념하자. 그들은 단지 그러한 기술과 방법의 사용이 불러올 그 장기적 결과들에 대한 공포 때문에 거부해왔던 것일 뿐이다.” Wallerstein, “The West, Capitalism, and the Modern World-System,” 613

16세기 유럽 세계경제에서 최초로 이 반자본주의적 결쇠가 풀려버린 그 연유를 ‘봉건제의 위기’라는 콩종크튀르 속에서 해명하고자 한다. 이 시기 예외적인 조건들 즉 중장기적인 여러 역사적 과정들의 우연적 결합에 의해 그 억제 장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결과한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성립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중세 말 ‘영주의 붕괴’, ‘국가의 붕괴’, 그리고 ‘교회의 붕괴’라는 유럽 상층부의 삼중의 쇠퇴와, 여기에 ‘몽골족의 붕괴’에 따른 여파까지, 이 네 가지 역사적 상황의 동시성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빚어냈다.

전반적으로, 1250-1450년은 서유럽 통치계급들에게 총체적으로 재앙의 시기였다. 그들의 수입은 줄어들 대로 줄었다.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내분들에 휘말려 들었으며, 부와 권위, 생활에 부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농민 반란과 이단 운동과 같은 민중 반란에 직면했다. 공공의 무질서에 지적 소란까지 활개를 쳤다. 굳건했던 것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역사적 체제의 “위기”였다. ... 영주들을 가장 위협했던 것은 바로 “콕스(cocks)”라 불리기 시작했던 자들의 부상이었을 것이다. 즉 요먼과 라부르르 같은 부유한 농민들, 이들이 소유한 생산단위들의 규모와 수는 증대했고, 경제적 악천후에도 (실수익을 내며) 한층 더 잘 견뎌냈기 때문이다. 귀족-지주들이 보기에, 서유럽은 쿨라크들(kulaks)의 파라다이스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이 추세를 늦출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었다.⁴³⁾

요컨대 월러스틴은 이 시기 서유럽 상층부가 직면한 절망과 이전 사회조직의 한계 내에서는 어떠한 돌파구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귀족-지주들 대다수가 ‘지대’든 ‘이윤’이든 수익을 얻기 위해 자본가적 태도로 선회함으로써 스스로 자본주의적 기업가들로 전화한 이유를 설명한다. 이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조건들의 진전을 상층부의 필사적인 반격이 승리한 결과로 파악하는 셈이다. 즉 인구감소, 농민반란, 새로운 계층의 도전 가운데 사회가 한층 평등한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추세를(“보수의 평등화”) 역전시키면서, 16세기가 지날 무렵에는 하층계급과 세계 다른 지역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지속할 수 있는 방식들을 새롭게 진전시키고, 상부계층이 정치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나 다시 한번 통제력을 확고히 장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⁴⁴⁾

한편 월러스틴은 이 콩종크튀르에 ‘몽골족의 붕괴’라는 유럽 외부의 설명 요소를 새로이 도입하는데, 이는 아부-루고드의 연구를 얼마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월러스틴은 ‘서구의 부상에 앞선 동방의 쇠퇴’라는 아부-루고드의 전제와 관련해, 유럽에 대한 한가지 “직접적인 정치적, 군사적인 함의”를 짧게 시사한다.⁴⁵⁾ 몽골족의 붕괴를 기점으로 하는 동양의 쇠퇴는 “그 ‘하위지역들(subregions)’이 멈춰 서게 했으며,” “그 순간에는 누구도 제국적 팽창에 나설 힘이 없었다”는 것이다. 고로 “1350-1450년 사이 서유럽이 삼중의 붕괴로 인해 전에 없이 가장 취약했을 이 결정적 시기에” 그 지역 영주/통치계층들은 어떤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정복이나 재편의 위협을 받지 않았으며, 부상하는 부농들만을 상대했다는 것이다.⁴⁶⁾

사실 위와 같은 월러스틴의 설명은 개략적인 그림을 제시하는 정도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보면 월러스틴이 아부-루고드의 16세기 이전 세계체제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16세기 전후에 유럽과 면해 있다고 볼 수 있을 모종의 세계체제와의 관계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분명해 보이는 점은, 아부-루고드와 같은 새로운 시도들과 더불어 세계체제시각

43) Wallerstein, “The West, Capitalism, and the Modern World-System,” 609.

44) 월러스틴, 『역사적 자본주의/자본주의 문명』, 47.

45) Wallerstein, “The West, Capitalism, and the Modern World-System,” 612.

46) Wallerstein, “The West, Capitalism, and the Modern World-System,” 612.

내의 진전이 월러스틴의 서술 체계와 사유방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월러스틴은 『근대세계체제』 1권에서 유럽 자본주의의 기원을 ‘봉건제의 위기’ 속에서만 찾았을 뿐, 그 위기의 어떠한 힘이 전화를 가능하게 하였는가에 대해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자본주의 성립의 역사적 조건으로 지리적 팽창, 상이한 노동통제 방식의 차이, ‘비교적 강한’ 국가의 부상을 설명하는 식의 우회적인 방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월러스틴의 ‘콩종크튀르적 설명’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봉건제의 위기라는 역사적 콩종크튀르에 사중의 붕괴라는 예기치 못한 역사적 상황들의 우연적 결합과 유럽 영주/통치계급의 살아남기 위한 자본가적 변신이 빚어낸 하나의 과정이자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월러스틴에게 자본주의의 성립은 역사적 사실들의 단선적 인과관계를 통해 진화론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요컨대 16세기 유럽 세계경제라는 무대는 자본주의 구조의 구성 요소들이 형성되는 시기인 동시에 그 요소들과 계기들의 마주침과 응고에 따라 자본주의의 역사가 전개되는, 그런 복합적면서도 새로운 역사적 시공간으로 사유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시기에 월러스틴은 역사적 체제로서 세계체제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론적으로 한층 더 분명하면서도 열린 견해를 보여준다. “나로서는 사회 존속의 필수조건인 사회적 분업으로부터 이 경계들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노력해왔다. 하나의 역사적 체제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과정들 전체에 의해 결합되는 바, 체제는 이들 과정의 통합된 네트워크를 의미할 뿐”이다.⁴⁷⁾ 이에 비추어 보면, 복합적인 전체로서 자본주의는 “복잡하고 구조화된 존재들과 과정들의 구체성의 현존”이기에,⁴⁸⁾ 그 존재의 출현 또한 “단일한 본질적인 기원으로부터 혹은 근원적 실체로부터의 단순한 발전이라는 원리로 설명될 수는 없을” 것이다.⁴⁹⁾

IV. 프랑크에 대한 비판, ‘자본주의적 근대’의 역사적 경계

다른 한편 이 시기 월러스틴은 자신의 역사적 체제에 대한 관념에 한층 더 문화적/문명적 내용을 부여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작동하는 문화적 틀과 같은 것으로 ‘지리문화(geoculture)’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우리 시야에서 가려져 있기에 평가하기가 한층 더 어려운 부분이지만 근대 세계체제의 근거를 이루는 것으로서 - 즉 “세계체제 전체에서 널리 수용되어 사회적 행위를 통제하는 일련의 사상, 가치, 규범”- 지리문화와 지식의 구조로 관심을 확장한다.⁵⁰⁾ 이는 경제주의나 노동분업으로의 환원이라는 비판을 견제하고 한층 더 복합적인 자본주의의 역사상을 그려내려는 방향의 시도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심은 안드레 군더 프랑크와의 비교 속에서 살펴볼 때 한층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47) 이매뉴얼 월러스틴, 「복합적 체제로서의 역사적 체제」(1987),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298.

48) Louis Althusser, *For Marx*, trans. Ben Brewster (London: NLB, 1977), 196-197. 김택현 재인용, 「자본주의 이행을 다시 생각함」, 313.

49) 김택현, 「자본주의 이행을 다시 생각함」, 313.

50) 이매뉴얼 월러스틴, 「80년대의 교훈」 『창작과비평』 76 (1992), 300.

「 ‘자본주의로의 이행’ 문제」 토론문

현 재 열 (한국해양대학교)

2019년 8월 31일 20세기 말을 풍미한 대학자인 이매뉴얼 월러스틴이 생을 마감했다. 그의 마지막 500번째 코멘터리(7월 1일 발표)의 제목은 “이건 끝이며, 시작이다(This is the end; this is the beginning)”였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을 표상하는 건지, 새로운 시작을 표상하는 건지 만감이 교차한다.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폭넓은 스펙트럼을 지니고 세계에 대한 총체적 상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던 이 대학자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 발표자의 주된 목적인 것 같다. 월러스틴의 학문적 성취에 대한 연구는 이미 사회과학 쪽에서는 (국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일정한 성과와 비평들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역사학에서 이 대학자에 대한, 그것도 그의 인식론적 사고의 핵심(‘자본주의적 근대’)에 대한 발본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잘은 모르지만) 게다가 발생론적 시각과 총체론적 시각을 교차하여 접근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그 성과에 대해 큰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함에도 본 발표는, 토론자가 보기에, 완성된 논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논문 구성을 위한 출발점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토론자는 이 발표문의 세밀한 내용에 대한 의문 제기보다는 (사실, 그런 능력도 없다) 이 발표가 하나의 완결된 논문으로 진화해 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1. **제목의 문제** : 발표자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원(혹은 이행)과 “자본주의적 근대”라는 거시사적 역사인식 틀”인 것 같다. 그런데 ‘세계체제론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본주의’를 염두에 두지 않는 이들도 많다. 즉 ‘유사 이래의 인간 역사를 세계체제들의 교체’로만 보고자 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사실, ‘세계체제론자’에 속하는 이들 중에는 이런 경향이 더 우세한 것 같다). 월러스틴에게는 ‘역사적 세계체제’는 근본적으로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제’일 수밖에 없지만, 이는 다른 세계체제론자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제목에서 “세계체제론자들”을 빼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 **논문의 대상 문제** : 발표자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월러스틴의 자본주의 기원(혹은 이행)론과 ‘자본주의적 근대’라는 거시사적 역사 인식 틀인데, 이 둘은 각각이 그 자체로 결코 만만치 않은 주제들이다. 물론 기원과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분리될 수는 없겠지만, 이 둘 각각에 대한 엄청나게 교차하는 수많은 논의들 속에서 어떻게 월러스틴의 기원에 대한 해석과 자본주의적 근대관을 자리매김할 것인가는 이 둘을 과연 한편의 짧은 논문 속에서 다 다루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게 한다.

3. **논문의 구성 문제 1** : 2장에서 다루는 아부-루고드의 문제제기는 월러스틴의 ‘세계체제’ 개념에 대한 것이지, 그의 ‘자본주의적 근대관’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는 자본주의의 기원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라, 월러스틴이 ‘역사적 세계체제’를 근대로 한정하여 적용함으로써, 특히 13세기 몽고 제국의 전개와 함께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걸쳐 유사 이래 처음으로 확고하게 등장한 거대 네트워크의 존재를 간과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아부-루고드 이후

세계체제론자들은 세계체제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하여 적용하며, 사실상 ‘세계체제’를 네트워크의 문제로 치환하게 되었다. 여기서 월러스틴의 위계적인 전(全)지구적 분업 구조를 중심에 놓은 ‘역사적 세계체제’와 다른 이들의 네트워크 중심 ‘세계체제’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2장에서 논하는 아부-루고드의 문제제기는 월러스틴의 ‘자본주의적 근대’관을 목적에 두는 발표자의 문제 의식에 얼마간 부차적이라는 느낌이다. 물론, 재차 말하지만, 월러스틴에게는 ‘역사적 자본주의’와 ‘근대 세계체제’는 분리할 수 없기에, 자신의 세계체제론에 대한 문제제기의 대응과정이 ‘역사적 자본주의’관과 무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월러스틴의 ‘자본주의’를 목적에 두는 발표자의 문제의식에서는, 아부-루고드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커 보이고 초점에 혼란을 일으키는 느낌이다.

2장이 월러스틴의 초기 세계체제론 제시에 대한 여러 비판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아부-루고드는 세계체제 개념과 관련해서 축소해서 다루고, 좀 더 ‘자본주의 이행’과 자본주의 개념과 관련된 비판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여, 3장의 1990년대 월러스틴의 자본주의 ‘완숙?’과 대비시키는 것이 좋을 듯하다.

4. 논문의 구성문제 2 : 발표자의 전체적인 문제의식을 보면 3장이 중심이 되고 4장은 그에 대한 뒷받침과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3장의 내용이 충분치 않다. 앞서 얘기했듯이, 기원 문제와 성격 문제를 명확히 분리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어느 한쪽만 다룬다면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

5. 추가 : 발표자는 이 논문이 ‘월러스틴의 자본주의적 근대관’이라는 주제로 전개될 자신의 박사 논문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혀왔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여기서도 초점을 분명히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것이 ‘자본주의적 근대’인지, ‘자본주의 (세계체제)’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현재 수준에서 판단하건데, 후자에 더 가까운 것 같다.